

#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누가 코소보 전쟁이 문명사회의 건강성을 지킨 인도주의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코소보 전쟁을 악마가 패배하고 선이 승리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조정남

(고려대 교수 · 한국민족연구원장)

**작열하던** 유고연방에서의 포성이 멎었다. 폐허의 고향 코소보로 돌아가는 세르비아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유고령 코소보에서의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의 해묵은 민족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NATO와 유고연방간에 벌어졌던 두 달 반 동안의 가공할 전쟁은, NATO의 「코소보 평화안」을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항복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쟁’, 그러나 이 전쟁은 어느 다른 국제적 분쟁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아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함의 또한 독특하다. ‘공폭’이 일단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태의 전반적인 경과를 추적하면 ‘코소보’가 갖는 특이점은 한 둘이 아니다.

먼저, ‘비전쟁성’이다.

흔히 ‘공중폭격’ ‘전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코소보 사태는 한마디로 일방적인 ‘응징’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전쟁의 승리를 둘러싸고 벌이는 일반적인 쌍방간의 쟁패도 없었고, 일방의 공격에 대한 타방의 응전 또한 찾아볼 수 없는, 타격과 파괴의 상대는 있으면서도 응전하는 상대는 없는 이상한 전쟁이었고, 이상한 전투였다. 이는 한마디로 일방에 의한 타방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발가벗은 응징이었을 뿐이었다.

전쟁치고는 너무 일방적이었다. 전쟁이란 원래 싸우는 쌍방이 대등한 힘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며, 또 그러한 대등한 힘의 쟁패이기 때문에 승패에 관계없이 전쟁 당사자간에

상당한 피해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코소보에서는 달랐다.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것이다. 유고는 손 한 번 까딱해 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다. 3만 6천여 회의 나토기의 출격으로 인한 수천 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공항·군사시설·학교 등 유고의 주요 기간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굳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유고의 피해액은 약 1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그러나 NATO측의 피해는 어떤가. 자의적인 전투경비를 뺀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인명피해라고 해야 알바니아에서 훈련 중 사고사한 2명 이외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으며, 전폭기 1대의 추락이 고작이었다. 믿어지지 않는 '피해 전무'의 전투 아닌 일방적인 응징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런 실질적인 대응 없이 무작정 날아오는 포탄을 맞기만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경이 코소보의 이상한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비전쟁성'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비인도성'이다.

NATO와 미국은 그들이 시작한 코소보 개입과 폭격을, 밀로세비치에 의한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를 막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인도'와 '정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

**NATO는 유고연방 공습을 통하여 만들어내려는 결과를 위해 정당하지 못한 과정과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사람의 과격한 인종차별론자를 응징하고 그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를 저지시키기 위한 행동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비인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정의의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너무나 '부정의'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채워졌다. NATO는 유고연방 공습을 통하여 만들어내려는 결과를 위해 정당치 못한 과정과 방법을 택했다. 그들은 매우 정의롭지 못하고 비인도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의 인도적이고 정의로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과정상의 정당성이 결여된 목적의 정당화란 기대할 수 없으며, 바로 이 같은 논리가 NATO의 유고연방 공습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결국 코소보 전쟁은 명분면에서도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인도'와 '문명' '정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가진 '비인도성' '비문명성' '부정의성'을 만천하에 분명히 한 일방적인 응징 이상의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셋째, '승리'의 공허성이다.

NATO와 미국측은 유고공습의 목적을 코소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갈등을 중단시키는 데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의 개입목적은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코소보 개입의 한계가 있다. 유고에 투하한 많은 미사일과 그 많은 파괴의 댓가가 불분명하다. 그렇게 값비싼 댓가를 치르고 코소보에서 서로 다른 인종간의 진정한 평화적 공존의 질서가 마련된 것도, 그 동안에 키워오던 인종갈등과 인종청소의 소지를 없앤 것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 전보다 훨씬 더 격렬한 민족집단간의 반목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 인종집단간의 갈등의 골은 과거보다 훨씬 그 깊이를 더하게 된 것이다. 코소보에서의 인종갈등에 NATO의 폭력 개입을 통하여 만들어놓은 것은 그들이 당초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목적과 정반대의 상황일 뿐이다. 또 NATO의 공습이 시작되면서 코소보를 비롯한 유

**코소보 전쟁을 통하여 인종간의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제거되고 코소보를 비롯한 유고연방에서의 새로운 다민족 공존의 새로운 민족질서가 만들어졌어야 했음에도, 유고에서의 다민족 공존 질서는 더욱 황폐화되었고,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너와 나 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서의 적대적인 이민족집단의 존재가 더욱 뚜렷해졌을 뿐이다.**

고 전 지역에서 발생한 인종타압과 인종청소의 희생자의 수는 그 이전보다 훨씬 그 수가 많았다. 인종청소를 없애고, 인종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전쟁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부추기거나 가열시킨 것이 바로 코소보전쟁이었다고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전쟁을 통하여 인종간의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제거되고 코소보를 비롯한 유고연방에서의 새로운 다민족 공존의 새로운 민족질서가 만들어졌어야 했음에도 유고에서의 다민족 공존의 질서는 더욱 황폐화되었고,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너와 나 가 아닌, 타도의 대상으로서의 적대적인 이민족집단의 존재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말았다.

누가 코소보 전쟁이 유고의 민족평화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코소보 전쟁이 문명사회의 건강성을 지킨 인도주의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코소보 전쟁을 악마가 패배하고 선이 승리한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더욱 구체적으로 누가 코소보 전쟁을 그곳의 알바니아계의 항구적인 민족평화와 민족번영을 위한 '필요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 코소보 전쟁 일지

정리 · 고 병 국  
(고대 대학원)

연차	연월일	주요사건	주요내용	주요논의
3.24		·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대한 공습 개시(관련자료 #1)	· 엘친,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2), 안보리 특별회의 요청. · 프리마코프 방미 일정 취소	· 〈중국〉 어떠한 구실의 내정 간섭에도 반대. · 〈독일〉 2차대전 이후 첫 참전
3.25		· 유엔안보리 긴급 공개회의 라브로프 러시아대사, "나토의 「세계경찰」 구상에 반대.", 피터 벨레이 미국대사, "공습은 지난 5주 동안 난민 6만 명이 발생한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밀로세비치, 전 국민에게 저항 촉구, "서방의 평화안은 유고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	· 〈알바니아〉 나토전진사령부 설치허용. ·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2천여 명 참전자원
3.26		· 클린턴, "미국은 코소보 유혈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 엘친, "공습은 유럽 내 불안과 전쟁을 초래. 러시아는 군사적 성격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 세르비아군, 알바니아계에 대한 보복행위 자행. · 〈중국〉 장쩌딘 주석, "군사 공격은 코소보의 오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
3.27		· 코소보 주둔 유고군을 대상으로 공습 확대.	· 모스크바 주재 나토 대표부 추방. · 보스니아 평화유지군의 지휘권 회수.	· 몬테네그로공화국 정부 중립 선언. · 〈마케도니아〉 코소보난민의 유입으로 민족간 불균형 초래
3.30			· 엘친, "러시아가 무력 개입을 하지는 않을 것"	· 밀로세비치, 공습 중단 시 철군 가능 주장(#3) · 〈마케도니아〉 나토 가입 촉구
3.31		· 미 국무부 대변인, "밀로세비치가 코소보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공습은 계속될 것"	· 프리마코프 러시아 총리 · 밀로세비치 회담. · 러시아의 '先 공습중단, 後 협상재개안', 나토에 의해서 거부.	· 민간인 1천명 사망.(주장)
4.1		· 러시아의 중재 실패 이후 공격목표 확대, 공습 강화.	· 흑해 함대(작전함 7척) 지중해에 파견. 추가 파견도 검토.	· 마케도니아 국경 근처에서 미군 병사 3명 생포. · 러시아에 군사원조 요청.
4.6		· 유고의 휴전 선언에 대해 '정치적 술수'라며 무시, 공습 계속.		· 일방적 휴전 선언.
4.10		· 알바니아에 병력 8천 명 배치 계획 승인.	·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은 밀로세비치가 러시아 · 벨로루시 연방에 합병을 요청했다고 공표. 또한 엘친과 벨로루시 대통령이 '3국 통합안'을 지지했다고 표명. 크레믈린은 이를 공식 부인. · 엘친, 세계대전 경고	

연차	사건	관심사	유고, 알바니아	기타
4.13 ~14	·〈미·러 외무회담〉 코소보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 마련, 코소보 주둔 병력의 성격에 대해 견해차 좁히지 못함.		·알바니아 북부지역에서 유고군과 알바니아 군의 소규모 충돌 발생, 코소보 전쟁의 확산 우려.	
4.19	·공습 이후 3200여 명의 알바니아계 주민이 세르비아계에 의해 살해.(주장)	·전쟁의 해결을 위해 유고가 평화유지군 주둔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	·공습으로 민간인 4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주장)	
4.20 ~22	·집권 사회당 당사 및 밀로 세비치 관저 폭격. ·대유고석유수출금지 결정.	·러시아 흑해 함대 기동훈련 실시.	·체르노미르던과의 회담에서 비무장 유엔감시단 수용의사 표명.	
4.24 ~26	·미국, 코소보난민 2만명 수용 의사 표명. ·나토 50주년 정상회의, '신전략 개념' 채택(#4)	·엘친·클린턴 전화회담, 유고사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논의.	·코소보 평화유지군의 조건부 주둔 허용.(공습 가담국 제외)	·〈영국〉 최대 4만 명의 지상군 파병 계획 마련.
4.29 ~30	·미국, 對유고 오일 판매 금지, 미국 내 베오그라드 자산 동결.	·엘친, 「전술 핵 무기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신 계획」 승인.	·공습에 가담한 나토 회원국(10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5.2 ~3	·클린턴, 체르노미르던과의 회담 뒤 유고 공습 중단 가능성 시사.	·체르노미르던 평화안. - 러시아가 참여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감시단 배치. - 유고군의 코소보 철수. - 나토의 공습 중지	·미군 포로 석방. ·평화안 제시.(양측의 폭력 행위 종식 및 정치협상)	
5.4 ~5	·알바니아에서 훈련 중 조종사 2명 사망.			·〈벨로루시〉 벨로루시 하원, 신유고연방 합병안 승인.
5.6	·G-8, 코소보 평화를 위한 일반원칙 합의(#5) - 전투행위 중지, 코소보 내 유고군 철수. - 유엔평화유지군 주둔, 코소보 잠정통치기구 설립. - 난민귀환 보장. 유고의 안정을 위한 포괄적 노력. - 코소보 자치를 위한 정치적 협의기구 추진.		·국제감시단 배치에 관한 유고 측 조건 제시 - 유엔 주도, 유고 정부와의 배치 협정.	·〈마케도니아〉 유고 국경 봉쇄
5.7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6), 3명 사망.	·유고가 G-8코소보평화원칙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촉구.	·G-8코소보평화원칙 수용 불가 입장 표명.	·〈중국〉 반미 분위기 고조
5.10	·유고군의 부분 철수에 대해 공습 중단 여론 확산을 위한 외교 공세로 판단. 공습 계속.	·체르노미르던 중국 방문, 무조건적 공습 중단을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조.	·유고군, 코소보에서 부분 철수.	·〈이탈리아〉 공습 중단 주장

연월	주요 내용	유고군사방위	주요 사실
5.11 ~12	· 공습 7주만에 최대규모 공습 감행.	· 엘친, 코소보 중재 포기 경고. · 프리마코프 총리 해임.	
5.13 ~15	· 난민에 대한 폭격으로 최소 79명 사망.	· 엘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 회담. -나토 공습 중단 강조	· 세르비아공화국 · 몬테네 그로공화국 갈등 격화. <중·독회담> 장쩌민, 나토의 즉각적인 공습 중단 강조.
5.18	· 클린턴, 지상군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표명. · 지상군투입에 관해 나토 회원국 내 의견 대립.		· 나토의 공습 중단시 협상 용의 있다고 표명. <독일> 일시적인 공습 중단 희망.
5.19	·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특사와 텔보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아티사리 핀란드 대통령의 중재로 코소보 전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5.20	· 올브라이트, 코소보에 유고군 제한 주둔 허용 시사.	· <탄유그 통신>, 밀로세비치와 체르노미르딘은 유엔 테두리 안에서 사태를 해결하고 G-8 평화안 이행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5.25 ~27	· 코소보 평화유지군을 5만 명으로 늘리는 증강안 승인.	· 체르노미르딘은 '밀로세비치의 전범 기소'를 '정치적 쇼'라고 비난.	· G-8 평화계획의 원칙에 동의 발표. <국제사법재판소> 유고의 나토 제소 기각.
5.31 ~6.1	· 코소보 전쟁의 외교적 해결 조건에 대한 최종 회담(아티사리 핀란드 대통령, 체르노미르딘, 텔보트 미 국무부 부장관)		
6.3	· 세르비아 의회, G-8 코소보 평화계획 승인(#7) - 코소보 내 폭력행위의 즉각 중단, 유고군 · 경 · 준군사조직의 전면철수. - 유엔이 감시하는 국제 민간치안군(나토 · 러시아의 공동 참여) 배치. - 유엔안보리 결정에 따른 유고연방 내 코소보 임시정부 수립. - 코소보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 협상. - 차후 일부 유고병력 귀환 허용, 난민의 안전 귀환.		<코소보해방군=KLA> 코소보 평화계획 수용 의사 표명.
6.5~ 7	· 나토의 공습 중지 및 유고군의 코소보 철수 일정표 작성을 위한 나토 · 유고 군사회담.		
6.8	· G-8 외무, 유엔에 상정할 결의안 합의. · 평화유지군의 지휘권 문제와 관련하여 나토와 러시아의 의견 조율은 실패.		
6.9		· 나토 · 유고 군사 협정 체결.	

일자	나토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가타
6.10	·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 공습 중지 명령. · 코소보 공습 중단에 관한 클린턴, 밀로세비치 성명 발표(#9, #10)		· 세르비아군 철수 시작.	〈유엔안보리〉 코소보 결의안 가결(#8)
6.11	· 미국과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의 지휘권, 관할 구역 문제에 대해서 합의 실패.		· KLA, 무장 해제 의사 표명.	
6.12		· 코소보 주도 프리슈티나에 기습 진입.		
6.13	· 이바노프·텔보트 회담. · 러시아가 추가 파병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의 별도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코소보 중·동부지역, 세르비아군 철군 완료.	
6.18	· 미·러 코소보 지휘 협정 체결. ·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세르게예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 군에 책임 구역을 할당하되 나토 사령부의 지휘권에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유지군의 단일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절충.			
6.20	· 알바니아계 게릴라의 무장 해제 준비.		· 알바니아계 난민 5만 5백명 귀환.	〈KLA〉 30일 내 무장해제 약속.
6.21	· 유고 공습 작전 공식 종료.			
6.23	· 클린턴, 공습 개시 이후 처음으로 발칸 방문.		· 알바니아계의 보복성 테러 증가.	
6.25		· 연방회의(상원), 코소보 파병안 승인. 2000년 7월까지 3천 6백여 명.	· 알바니아계 포로 166명 석방. · 밀로세비치 퇴진 요구 확산.	〈몬테네그로〉 베오그라드로 부터의 완전한 독립 논의.

# 코소보 전쟁 관련 자료

정리 · 고 병 국  
(고대 대학원)

## 코소보 문제에 대한 나토의 입장

나토는 코소보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로 규정하여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정당한 개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유고 공습은 인권과 자유의 수호를 위한 도덕적인 전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토는 공습이 유엔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행해진 주권국에 대한 무력 행사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다음은 코소보에 대한 나토의 성명 요약.

1. 코소보 사태는 나토가 창립 이후 고수해 온 가치 즉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법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 밀로세비치의 베오그라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종청소와 폭력은 계획적인 억압정책의 극치다. 우리는 이러한 테러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2.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대한 나토의 군사행동은 최근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에 의해 채택된 국제사회의 정치적 목적을 지원한다. 즉,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다민족이 공존하는 코소보의 건설이다. 여기에서 모든 구성원은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향유하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3. 나토의 군사행동은 세르비아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베오그라드 정부의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베오그라드 정부는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듭 거부해 왔으며, 따라서 밀로세비치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과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군·경·준군사조직의 코소보 철수

—국제군의 코소보 배치에 대한 동의

—모든 난민의 무조건적이고 안전한 귀환. 인권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

—「량부에 협정」에 기반한 정치적 합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믿을 만한 보장 제공

4. 이 조건에 대해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베오그라드가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거부하는 한, 나토의 공습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코소보 시민의 안전이 밀로세비치 대통령과 베오그라드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코소보 시민의 귀환과 평화롭고 안전한 삶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5. 베오그라드가 이상의 조건에 대해 명백하게 수용하고 코소보에서의 철군을 시작할 경우 나토는 공습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6. 러시아는 유엔에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코소보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



나토는 그러나 공습이 유엔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행해진 주권국에 대한 무력 행사라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

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한 해결책은 이상에서 제시한 국제사회의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 나토는 「기본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러시아와의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기대한다.

7. 나토는 인도주의적인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구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의 원조를 계속할 것이다. 나토군은 이러한 임무에 있어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8. 코소보 주민에 대한 유고슬라비아 군·경의 산학행위는 국제법의 명백한 파기다. 나토는 유고전범재판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인사의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정의없이 평화가 지속될 수 없다.

9. 나토는 베오그라드 정부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토는 베오그라드 주변국에 대한 도전을 나토군의 투입과 활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10. 나토는 발칸지역의 모든 국가에 대해 주권

과 영토보전을 지원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11. 나토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몬테네그로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다시 확인한다. 듀카노비치 대통령의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베오그라드의 어떤 움직임도 그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고연방군은 프레블라카(Prevlaka) 비무장지역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12. 자유롭고 부유한 그리고 개방되고 경제적으로 통합된 남·동유럽 건설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완전히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나토는 유고연방공화국의 민주화에 대한 지원을 표명한다.

13. 나토의 목적은 남·동유럽의 안정에 있다. 회원국 정부는 NATO뿐만 아니라 OSCE,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통해 남·동유럽 지역 국가가 민주주의와 정의, 경제적 통합 그리고 안보협력에 기반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전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나토의 유고 공습에 대한 옐친 러시아 대통령 공식 성명

러시아는 이미 유고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한 나토의 공습에 대해 노골적인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공습 중단을 촉구한다. 러시아는 유고가 같은 세르비아계라는 점, 유사한 민족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나토의 역할 확대가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누구보다도 강도 높은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다음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성명 全文.

러시아는 노골적인 침략행위 이상이 아닌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군사공격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을 위한 모든 행위(무력사용 포함)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동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을 한 바 없다. 유엔현장과 러시아·나토간 기본협약은 파기되었다. 무력을 통해서 독재정치를 재건하려는 위협한 선례가 만들어졌으며 국제적인 법·질서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행위를 21세기 국제경찰로 군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또한 그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긴급사태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나토의 즉각적인 공격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 및 최고사령관의 권한으로 나는 이미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프리마코프 총리의 미국 방문 취소, 유엔안보리 특별회의의 요

구, 나토에 파견된 러시아 군사대표부 본국 소환, 평화를 위한 동반자(PFP)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역할 수행 중지 등이다.

나는 또 클린턴 대통령과 나토의 지도자들에게,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발칸을 폭발시킬 위험이 있는 군사공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소보 문제 해결은 오로지 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들이 협상을 빨리 재개할수록 국제사회가 정치적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크다. 러시아는 그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접촉 그룹 회원국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적 분쟁이 확산될 경우 러시아는 러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것도 포함된다.

### 밀로세비치의 제안

밀로세비치는 우선 코소보 문제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토의 공격 중지와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원조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편, 나토의 입장은 달리 유고는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밀로세비치는 나토의 유고 공습이 발칸에 새로운 위기를 조성한다고 하며, 유고는 나토의 침략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의 원조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표명한다. 다음은 밀로세비치의 텔레비전 연설문 쏴문.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나토군의 범죄적인 침략행위에 단호히 대항하고 있다. 우리의 영웅적인 국민

은 우리가 무력에 굴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조국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끝까지

**밀로세비치는 코소보 문제가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고는 나토의 침략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고 여기에 러시아의 원조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표명한다.**

조국을 수호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자유와 권리, 주권과 영토를 지켜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성공할 것임을 확신한다.

코소보·메토이아(Metohija)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직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코소보 문제는 수천 톤의 폭탄을 사용하는 무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소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코소보 문제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유고슬라비아 지도부는 러시아의 제안, 즉 나토의 공습 중단과 코소보에 배치된 유고군의 감축안을 수용할 것이다. 코소보 문제의 정치적 해결 여부는 코소보 분리주의자들에게 대한 나토의 완전한 지원 중단에 달려 있다.

공습의 중단은 코소보에 다시 평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이는 민족과 종교에 관계없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들 모두는 우리 국가의 시민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들은 난민으로서 피난시설에 수용되거나 다른 나라를 떠돌기보다는 자유롭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평화이행에 대한 약속은 독립·주권국인 유고슬라비아 내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평등과 평화로운 삶의 예외 없는 보장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코소보 내의 모든 민족적 종교적 공동체도 포함된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그리고 여타 많은 나라들의 단호한 태도에 고무되었다. 이들 국가는 이번처럼 어려운 때에 유고슬라비아를 지원하였다. 나토의 공습 중단과 평화정착은 발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며 발칸은 지금 새로운 위기 확대의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유고에 대한 침략이 계속 진행중인 상황에서 프리마코프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본국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발칸과 유럽의 미래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 안내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절대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고의 유일한 선택은 침략자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러시아의 원조와 지지가 있을 것이다.

### 나토의 신전략개념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은 창설 50돌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전략 개념을 도입, 나토 권역 이외의 갈등이나 테러, 대량파괴 무기 위협 등에 대해서도 군사 행동이 가능하도록 나토의 역할확대에 합의하였다. 다음은 '나토 전략개념'의 도입부분.

1. 1999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토 회원국 국가 정상들은 새로운 동맹 전략 개념을 승인하였다.

2. 나토는 40여 년의 냉전 기간 회원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럽에서의 전쟁 방지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다. 나토는 군사적 수단과 더불어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동서간의 대립을 평화적으로 종결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냉전종식이 가져온 유럽과 대서양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1991년 수립된 새로운 동맹 전략 개념에 반영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적·안보적 측면에 있어 보다 심오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3. 냉전종식 이후의 세계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며, 낙관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유럽통합이 진행되면서,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서 나토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토는 유럽과 대서양 지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형성하는 데 노력해 왔고 보다 폭넓은 안정성 유지 활동에 주력해 왔다. 발칸에서의 갈등이 빚은 막대한 희생을 막기 위한 나토의 노력은 이러한 활동의 대표적 예이다. 또한 나토는 탈냉전 이후 무기통제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탈냉전 이후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안보에 대한 시각과 더불어

어 과정·구조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유럽과 대서양 지역에서는 인종갈등, 경제침체, 정치질서의 붕괴,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같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들 역시 공존해 왔다.

4. 나토는 탈냉전 이후 현재와 미래의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 긍정적인 변화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나토는 다음과 같은 의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공공안보적 이익의 보장이 필요하다. 큰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방어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럽의 동맹국들간의 균형유지와 대륙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 회원국간의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나토의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새로운 전략 개념은 이러한 의제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전략개념은 변하지 않는 나토의 목적과 본질, 근본적인 안보 임무를 표현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의 주요한 특징을 밝히며 안보에 대한 폭넓은 접근 요소를 분류하고 군사행동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소보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대한 G-8 외무장관 공동 성명은 나토와 러시아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G-8 외무장관 공동 성명**

코소보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에 대한 G-8 외무장관 공동 성명은 나토와 러시아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 성명이 말 그대로 기본원칙일 뿐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코소보 주둔군의 구성 및 지휘체계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G-8 기본원칙은 코소보 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  |
|--|--|
| <p>1.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 행위의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중지</p> <p>2. 군사·경찰·준군사조직의 코소보 철수</p> <p>3. 유엔에 의해서 승인된 국제민간차안군의 코소보 배치</p> <p>4.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코소보 잠정 통치기구 설치. 이는 코소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해 평화롭고 정상적인 삶의 환경을 보장</p> | <p>5. 모든 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귀환 및 인도적 지원 기구의 자유로운 코소보 접근</p> <p>6. 코소보의 본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는 잠정적 정치합의 달성을 위해서, 랑부에 협정 및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코소보해방군의 무장 해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p> <p>7. 위기 지역의 경제발전 및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p> |
|--|--|

**중국 대사관 폭격에 대한 중국의 입장**

러시아와 함께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해 왔던 중국은 자국의 대사관이 폭격당하자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강도 높은 비판으로 선화한다. 유고와 비슷한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나토의 공습을 주권국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공습 중단을 촉구한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공습은 강화되었지만 중국 대사관의 폭격이 코소보 전쟁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후진타오 부주석의 텔레비전 연설 全文.

5월 8일 아침(베이징 시각), 미국 주도의 나토는 미사일을 사용하여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주재 중국 대사관을 공격하였다. 이 공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사관 건물이 심하게 파괴되었다. 국제적인 법과 규범을 파기한 이런 범죄행위는 중국인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느끼게 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아침 나토의 야만적인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엄숙한 성명을 제시했으며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토에 요구하였다. 중국공산당(CPC)의 결정하에, 중국 외무부는 미국 대사를 소환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나토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상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우리는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으며, 베오그라드에 특별기를 보내 직원들을 귀국하도록 조치하였다.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자제했음도 밝혔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가주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며 침략에 대항하고자 하는 전 중국 인민의 열망을 표시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나는 CPC 중앙위원회와 중국정부, 그리고 전 인민을 대표하여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의 모든 직원에게 경의를 표하고싶다. 특히

희생자들 애도하며 부상자와 그들의 가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국 정부는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국가주권과 국가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따라서 패권과 힘의 정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적인 법률과 규범에 따라서 외국의 대사관 및 무역·경제·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정의를 지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 우리는 기꺼이 전 세계의 인민과 함께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제후할 것이다. 장쩌민 동지의 중국공산당을 중심으로 21세기의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정진하자.

### 코소보 평화계획

코소보 평화계획은 실질적으로 코소보 전쟁의 최종적인 합의사항이다. 세르비아 의회가 동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유고군 철수, 공습 중단, 국제민간치안군의 주둔 등 평화적인 국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1. 코소보 내 폭력 및 억압 행위의 즉각적이고 검증 가능한 중지.
2. 타임테이블에 따른 코소보의 군사·경찰·준군사조직 철수.
3. 유엔헌장 제7장에 입각하여 UN이 승인한 국제민간치안군(International civilian and security presences)의 코소보 배치.
4. 나토군을 주력으로 하는 국제 치안군은 통합

러시아와 함께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해 왔던 중국은 자국의 대사관이 폭격당하자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감도 높은 비판으로 선화한다.

된 명령·지휘 체계하에서 전개되어야 하며 난민의 안전한 귀환 및 코소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한다.

5. 코소보 내에 잠정 통치기구를 설치한다. 동 기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할 것이며 코소보의 주민은 동 기구하에서 유고슬라비아연방 공화국 내에서의 실질적인 자치를 누릴 것이다.

6. (유고군의) 철수 후 다음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일정 수의 합의된 세르비아 요원 복귀가 허용될 것이다 : 국제민간치안부대와와의 제휴 활동, 지뢰 설치 지점의 명시, 세르비아의 유산 보존.

7.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감독하에 모든 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귀환.

8. 정치과정은 「량부에 협정」, 유고슬라비아연방 공화국의 주권 및 영토보전 원칙,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 KLA)의 무장 해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코소보에 본질적인 자치를 부여하는 잠정적 정치합의에 도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9. 위기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한 일반적 접근. 이는 남·동유럽의 안정 협약 이행과 민주적

경제적 발전 및 지역협력을 위한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를 포함한다.

10. 군사행위의 종식은 리스트에 제시된 제 원칙과 각주에 제시된 합의사항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나서 코소보 내의 유고군, 세르비아 치안부대의 역할·기능을 포함하는 군사·기술면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11. (유고군의) 철군과정은 단계적이고 상세한 타임테이블과 유고군이 철수할 세르비아 내의 안전지대 명시를 포함한다.

12. 철수 후 복귀하는 유고군 병사에 관해서는 장비, 직무상의 책임범위, 활동예정, 활동범위, 국제민간치안부대와와의 관계에 대한 규칙을 정한다.

〈각주〉 신속하고 정확한 철군 계획, 예를 들면 7일 이내의 철군 완료, 48시간 이내에 중립지대에서의 대공 병기 철수, 일부 유고군의 코소보 복귀는 국제민간치안군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규모도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소규모 단위로 제한될 것임.

### 유엔 코소보 결의안

유엔의 코소보 결의안은 G-8 기본원칙과 코소보 평화계획에 기초하여 작성·채택되었다. 동 결의안의 채택을 통해 코소보 전쟁 종결을 위한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소보의 자치/독립 문제나 유엔에 의한 잠정 통치의 기간문제 등 다소 불명확한 사안이 차후의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유엔의 코소보 결의안 요약.

1. 나토는 유고가 안보리 결의안을 수용하고, 코소보 철수 일정을 통해 검증 가능한 철군이 시작되면 공습을 중지한다. 유고군의 철수에 맞춰 다국적군이 코소보에 진주한다.

2. 지뢰 제거와 국제 연락, 세르비아 유적지 경비, 국경통과 업무 등을 담당할 일부 인력을 제외한 경찰과 공수부대 등 모든 유고군은 코소보에서 철수한다.

3. 민간인과 군으로 구성된 국제 치안군에는 나토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일단 12개월 시한으로 설치하되 안보리 결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치안군은 난민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된 지휘,관리 체계에 따라 배치된다.

4. 알바니아계 난민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과 구호단체의 보호 아래 코소보로 귀환한다.

5. 코소보에 주둔하는 다국적 인력은 유엔헌장 제 7장에 따라 행동한다.

6. 코소보 해방군 등 알바니아계 무장 단체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장을 해제한다.

7. 안보리는 코소보 과도 정부를 구성, 코소보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를 향유하고 독자적인 민주적 자치정부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코소보 알바니아계와 유고는 사태의 최종 해결을 위한 협상을 연다.

8. 유고 연방과 연방 내 각 주의 영토보전을 인정한다.

9. 모든 당사국은 전범을 다룰 국제범죄재판소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 공습 중단에 대한 클린턴 성명

클린턴은 나토의 공습 중단에 대한 성명에서 나토의 공습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수행되었고 또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표명한다. 한편 나토 회원국의 단결과 러시아와의 관계 유지도 코소보 전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의 부분 발췌.

나는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과 함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나토는 세르비아에 대한 공습을 중단했으며, 미군을 포함한 국제평화유지군이 코소보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나토는, 알바니아계(ethnic Albanians)를 그들

의 땅에서 몰아내려는 세르비아의 야만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직면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처음부터 우리는 세가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세르비아군의 철수, 나토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보안군 배치, 그리고 코소보 주민의 귀환과 그들의 자치다. 세르비아는 이러한 조건을



콜린턴은 나토의 공습 중단에 대한 성명에서 나토의 공습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수행되었고 또 그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음을 표명한다.

수락하였으며, 현재는 이행 과정이 진행중이다.

코소보의 주민은 무시무시한 잔악행위의 희생자였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가 인종 청소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는 78일 동안 그렇게 했으며, 또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소보 주민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정책은 코소보에서의 일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었으나 몇가지 다른 이익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폭력행위가 남·동 유럽의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과 그들이 진전시켜 온 민주주의 심화, 인종적·종교적 관용, 그리고 광범위한 번영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으나 절대로 동요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둘째, 동맹국으로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19개 나토 회원국은 나토의 역사상 처음으로 수행된 군사 작전에 동참하였다. 나토 동맹국은 함께 견뎌냈으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단결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이 보여준 충성과 불굴에 대해서 동맹국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셋째, 러시아와의 중대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고 더욱 튼튼하게 했다는 점이다. 코소보에서의 평화달성에 있어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러시아가 보스니아에서처럼 평화보존을 위해서 우리와 동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이제 우리는 선진 8개국이 채택한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기대한다. 비록 우리가 지금 폭력을 평화로, 인종적 종교적 증오를 민주적 미래로, 피로 얼룩진 유럽 1백 년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합된 유럽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세르비아가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세르비아가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코소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토의 공습이 중단되긴 했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며, 세르비아가 협정을 파기할 경우 솔라나 나토 사무총장은 공습 재개의 권한을 갖는다.

둘째, 우리는 난민의 귀환과 안정의 재건에 대해 도전과 위협에 직면해 있다. 미군 7천 명을 포함한 대략 5만 명의 국제치안군은 코소보 주민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민주주의 진작과 번영을 통해 앞으로의 위기를 방지해야 하는 광범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동맹국과 동반자는 이런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성명

밀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은 나토의 공습 중단에 대한 대 국민 담화를 통해 유고가 코소보 전쟁의 승리자임을 강조한다. 즉, 코소보 문제를 '자치'의 수준으로 유엔의 감독 하에 두었다는 점에서 나토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밀로세비치는 나토의 유고 공습 과정에서 무력화된 유엔의 기능을 다시 정상화시켰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다음은 밀로세비치의 텔레비전 연설문 부분 발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조국의 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의 영웅들에게 가 있다. 그들 모두의 이름이 알려지겠지만, 바로 이 순간 나는 지난 11주 동안의 전쟁 속에서 유고슬라비아 군인 462명과 경찰 114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다.

우리는 그들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 나라의 존엄성과 자유를 영원히 지킴으로써 그들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

우리는 결코 코소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 유고슬라비아의 영토보전과 주권은 선진 8개 국가와 유엔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는 결의안 초안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영토보전은 다시 문제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국가를 지켜냈으며 모든 문제를 국제권위의 정점인 유엔에 올려놓았다. 코소보의 문제는 유엔헌장에 입각해서 유엔의 보호하

에 해결되었다. 코소보에 배치될 군대는 유엔의 보호 아래 놓여질 것이다. 이 부대는 모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유엔의 지도하에 유고의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정치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코소보의 자치만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공습 이전의 80일 동안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유엔을 국제무대로 복귀시켰다. 단국체제의 창출을 제지하고, 중앙으로부터의 독재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거부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헌이다 ... 우리는 우리의 군대가 정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 우리 국민이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제 조국의 재건해야 할 시점에 있다. 우리는 공장과 도로와 다리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시민의 생명력을 반영하는 대발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의 국민이라 함은 모든 시민과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코소보 문제는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국내문제라 외부의 간섭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구유고슬라비아연방 해체 이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다민족사회를 지켜냈다. 이것은 우리의 또 다른 업적이다.

유고슬라비아의 모든 시민이 조국의 재건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나토의 유고 공습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대해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코소보 문제는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국내문제로서 외부의 간섭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칸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과 전횡이 근본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 <http://www.kcna.co.jp/>>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 3월 2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무력행사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 행위이며 발칸지역과 유럽,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한 주권국가가 자기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요구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아간다고 하여 외부세력이 힘으로 그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를 마구 유린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무도한 행위이다. 코소보 문제는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 내부분제로서 외부의 간섭과 압력, 군사적 힘의 사용으로는 결코 이 분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립과 충돌,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4월 7일 백남순 외상이 유고 외상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코소보 문제가 전적으로 유고슬라비아의 내부분제인 것만큼 귀국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며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을 반대하는 나토의 비법적인 군사행동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 5월 8일 『로동신문』 사설

나토의 반유고슬라비아 공격작전의 주모자는 미국이며, 나토의 반유고슬라비아 공격은 본질상 미국의 전쟁행위이다. 만일 미국의 횡포무도한 군사적 전횡을 묵인·허용한다면 반유고슬라비아 전쟁행위가 전례가 되어 제2, 제3의 유고슬라비아

아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 유고슬라비아 사태는 매개 나라가 자주권과 국가적 안전을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수단과 공격수단을 겸비한 강위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선로동당의 군중시정치, 자위적혁명무력건설 로선과 원칙, 우리 식 군사적 대응방식은 천백 번 정당하다.

6월 17일 외무성 대변인 대담

꼬소보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관 각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상결과 지난 10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공습이 중지되고 유엔

안보리사회에서는 꼬소보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것은 힘으로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이 나라의 령토완정을 해치려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기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발전은 아직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이 꼬소보문제를 '조정' 한다는 구실밑에 이 지역을 분할하여 영원히 타고 앉으려고 시도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칸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발전이 이룩되자면 이 지역에 대한 외부세력의 강권과 전횡이 근원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  
신간안내

격동의 소련, 러시아 정치의 변함없는 실체인 '러시아민족주의'의 철저한 규명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조정남 저 /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값 8,500원

- 주요 목차**
- 러시아민족주의의 의미
  - 러시아민족주의의 성장
  - 러시아민족주의의 내용과 유형
  - 소비에트 체제와 러시아민족주의
  - 고르바초프 정치 개혁과 러시아민족주의
  - 소연방 해체와 러시아민족주의
  - 러시아연방의 민족갈등

# 코소보 전쟁이 남긴 과제

고 병 국  
(고대 대학원)

1999년 3월 24일, 나토의 공습으로 시작된 코소보 전쟁은 89일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나토와 유고의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유고 군은 코소보 철수를 완료했고 나토는 유고에 대한 공습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코소보에서 추방된 알바니아계 난민이 귀환하고 있으며, 위태위태해 보이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발칸반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코소보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나아가 발칸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때, 유고에 대한 나토의 공습 중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코소보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이후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보다도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공존문제가 될 것이고, 다음으로 코소보의 지위 문제 나아가 코소보를 둘러싼 국제세력의 발전적인 관계 수립이 될 것이다.

먼저,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 사이에 자행되고 있는 보복성 테러 행위는 두 민족간의 적대감을 증폭시켜 코소보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두 민족간의 반목과 갈등은 정치·군사적인 해결책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평화체제라 할지라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어 알바니아계 난민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시에 알바니아계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세르비아계의 도피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이들 세르비아인의 보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코소보해방군(KLA)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소보해방군은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세르비아계에 대한 보복행위를 빈번히 자행하고 있어 두 민족간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코소보의 평화정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아가 두 민족간의 돌이킬 수 없는 적대감은 코소보의 지위 문제 즉, 코소보의 자치 또는 독립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밀로세비치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수락하면서 '코소보의 자치'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선진 8개 국 역시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의 주권과 영토보전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코소보 평화계획의 세부 항목을 보면 유고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동협정은 랑부에 평화협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적으로 코소보의 독립 가능성을

나토의 공습 중단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코소보 나아가 발칸 지역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열어주고 있는 셈이 된다. 실제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코소보의 독립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6월 20일)

코소보의 독립은 알바니아계 주민의 염원이 되어왔으며, 현실적으로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계와 알바니아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경우 '독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 공화국의 독립은 발칸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세르비아인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결국 대세르비아주의의 몰락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유고 국민의 반나토 정서와 결합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무장 분리주의 운동이 독립으로 귀결될 경우, 코소보와 유사한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묵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나토는 유고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

면서 유엔의 결의나 선전포고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무력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를 표명해 왔던 러시아의 입장을 무시한 채 주권국에 대한 무력개입이라는 선례를 만들어놓았다. 또한 나토는 전쟁기간 중 정상회담을 통해 '신전략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나토의 역할 확대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를 증폭시킨 바 있다.

비록 코소보전쟁이 미국과 러시아의 우호적 관계 복원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전쟁의 과정에서 야기된 러시아와 서방간의 불화는 향후 국제질서 구축에 있어 러시아가 언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코소보 평화안의 이행과정을 포함하여 코소보에 대한 국제 세력의 발전적인 이해관계 형성이 발칸반도의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발칸지역의 미래는 강대국의 세력관계, 즉 나토나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거대세력에 의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코소보에 대한 유고의 입장

지난 3월 25일 나토군의 일방적인 공습으로 시작된 발칸 분쟁이 종결되었다. 11주간의 전쟁을 통해, 유고슬라비아 연방군 462명과 세르비아공화국 치안유지군 114명이 희생되었고, 전쟁은 나토군의 요구를 수용한 채 종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코소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 것이다. 향후, 코소보 문제의 매듭 방식은 여타의 민족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에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쟁 과정 속에서 코소보를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외눈박이'에 불과하였다. 서방의 일방적인 견해만이 매체를 점하고 있었던 아쉬움 속에서, 여기서는 코소보와 코소보 거주 알바니아계에 대한 유고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완의 해결로 끝난 코소보 문제의 향후 해결과정을 예측하는 데 있어 유고연방공화국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의 사태전개를 전망하는 데 있어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오창유  
(고대 대학원)

## 코소보(Kosovo)의 의미

코소보는 "세르비아인의 추억이며, 심장이요 핵심"이다. 그렇기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인의 예루살렘"으로 불린다. 코소보의 역사는 1389년 코소보 플레(검은새의 평원) 전투로 거슬러올라간다. 세르비아 정교회의 중심이었던 이 평원의 전투에서 북진하는 이슬람 세력에 맞섰던 세르비아의 라자르(Lazar)왕과 10만여 명의 세르비아인 병사가 몰살당하였다. 그 뒤 발칸반도는 5백여 년간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로써 동·서 로마 교회의 경계에 위치해 동방교회(정교회)와 서방교회(가톨릭)의 각축장이었던 발칸반도는 이슬람이라는 또 다른 세력의 유입으로 더욱 복잡한 민족과 종교 구성을 갖게 됐다. 코소보 플레의 장렬한 전투는 세르비아인들에게 '영웅적인' 민족신화로 각색됐다. 그

러나, 현실의 코소보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알바니아계가 90%를 차지할 정도로 바뀌었고, 그럴수록 코소보는 세르비아인에게 '세르비아 자유의 무덤' 내지 '민족의 성지'로 자리잡았다.

현재, 코소보는 신유고연방 내의 자치주다. 현재의 신유고연방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등 2개 공화국과 코소보자치주와 보이보디나자치주 등 2개의 자치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자치주는 모두 세르비아공화국에 속해 있다.

##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인권과 인구문제

세르비아공화국과 몬테네그로공화국은 유고연방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으며, 헌법상 모든 시민은 동등하다. 유고연방공화국에서 소수민족의 권리는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이 비준하

고 존중하는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회의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여타의 국제규약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실제, 코소보에서는 50~60개의 주간지와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이 알바니아어로 출판되고 있다. 무엇을 보도하고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판단컨대, 그것들은 분명히 사적으로 소유된 것이다. 연간 부수는 2백만 부를 넘는다. 다른 국가에서는 흔치 않은 소수민족 언어로 된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소수민족의 민족문화적·종교적·관습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극장·도서관·출판 등도 이미 50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알바니아계 소수파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이 권리를 향유하고 있을 때조차도, 세르비아공화국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가 박탈되어 있거나 위협받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했다. 알바니아계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에서의 선거권)조차 누리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거부함으로써, 알바니아계는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정치적 참여의 가능성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종족간 긴장과 분쟁을 유발하였으며, 지역의 발전을 저해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소수민족의 거주국의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유럽 회의 기본협약」 20조와 21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유럽회의의 「협약」 제 20조는 “기본협약의 기본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 각각의 소수민족 구성원은 국내법과 타인의 권리 특히 다수민족과 다른 소수민족의 조화 속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알바니아계는 분리주의자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코소보지역의 희생자 가운데 반 이상이 알바니아계라는 사실로 실증되고 있다. 희생자의 유일한 죄목은 그들이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에 충성하였다는 것이다.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의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본권 행사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없다.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은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법률체계와 소수민족의 인권과 시민적 권리, 민족적 권리의 실제적인 행사에 있어서의 문제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인이 그들의 인구수를 근거로 주장하는 자결의 권리는, 국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는 상관없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다.

코소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유고연방공화국의 헌법이 일관되게 적



유고연방공화국은 소수민족의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민족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알바니아계 소수파는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마저도 거부하고 분리주의 테러활동에 집착하고 있다.

용되고, 테러리즘에 대한 명확한 응징이 수반되는 가운데 인권의 성취와 시민과 민족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다.

### 알바니아계 분리주의 운동 문제

알바니아계의 분리주의 테러활동은 1998년 초 엄청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근원은 오랜 과거 즉 오스만투르크 지배시대로 거슬러올라간다. 그러나, 활동의 전략적 목표(민족구성상 순수한 알바니아 국가인 대알바니아(Great Albania)의 건설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다. 실제로, 대알바니아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도움으로 1941년 건설되었고, 알바니아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의 꿈은 그때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왜 코소보를 핵심근거지로 하는가?

코소보는 대알바니아라는 허구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의 핵심이고, 모든 테러활동의 출발점이다. 대알바니아 건설에 있어 코소보의 장악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코소보지역은 통합의 중심이다. 코소보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마케도니아에 거주하는 알바니아계는 단절될 것이다.

둘째,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알바니아계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알바니아 분리주의자들이 세르비아와 유고연방공화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셋째, 코소보지역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근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나토가 발칸지역에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에도 부합한다. 코소보는 항상 나토 신전략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이 나토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코소보에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이유이다. 나토는 또한 코소보를 이슬람 국가로 개조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확고한 이슬람 세력 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넷째, 외국세력의 지원이다. 알바니아는 자국민의 관심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 항상 코소보문제를 이용하고 있다.

분리주의 운동의 수단=테러

왜 테러를 수단으로 하는가?

알바니아계의 분리주의 테러 활동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테러 수	11	12	8	6	11	31	31	1885

출처 : 유고연방공화국 외무부

분리주의자가 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테러를 선택한 이유는 두가지다. 먼저, 비폭력적인 정치행위를 통해 유고연방공화국과 세르비아공화국을 전복하는 시도는 실패했다. 정치적 압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은 1989년 세르비아공화국과 코소보자치주의 헌법개정으로 인해 좌절된 것이다. 둘째, 테러활동이 코소보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유발, 코소보문제를 국제문제화시키고, 국제여론을 조작하며, 국제공동체의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코소보해방군의 정체

일반적으로 코소보해방군의 활동은 '위협받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무장인민의 저항' '세르비아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항거'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을 정의함에 있어 원용하고 있는 미연방수사국(FBI)의 규정을 참조하면, 테러리즘은 '정부와 시민을 위협하거나, 정치·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신체 혹은 재산에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제네바협약'의 규정에도 의해서도 코소보해방군은 테러리스트로 규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코소보해방군은 '매복을 통해, 무고한 시민과 치안 유지군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비록

「제네바협약」이 '게릴라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 하는 것이며, 따라서 코소보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상의 국제적 기준을 종합한다면, 분리주의 조직인 코소보해방군의 활동은 명백히 테러리즘으로 정의될 수 있다.

### 테러활동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지원

이들 범죄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항상 '알바니아계 시민의 학살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었고, 비난의 화살은 오히려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을 향하는 것이었다.

1998년 자행된 범죄활동의 대부분이 코소보해방군에 의한 것이지만, 이들 테러리스트는 테러조직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코소보해방군이 코소보문제에 대한 논의의 법적·정치적 파트너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은 위협적인 테러리스트에 단호히 대응하고, 외국 주권국가에 존재하는 테러리스트를 공격함에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으나, 국내의 테러활동에 대응하고 있는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토를 통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160, 1199, 1203호는 테러조직인 코소보해방군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조직은 코소보

코소보 해방군의 활동은 테러리즘으로 규정될 수 있으나, 이 범죄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오히려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에 대한 비난으로 향한다.

의 테러활동과 테러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알바니아로부터의 병참지원을 포함한 여타의 원조활동은 그대로 용인되고 있다.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테러리스트가 알바니아에 거점을 두고, 알바니아군 장교, 유럽 국가의 정보기관 혹은 '지하드' 전사에 의해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알바니아계 마피아 조직(마약의 밀수와 판매 등의 활동)과 일부 이슬람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테러활동에 단호한 국가에서 조차 용인되고 있다.

### 세르비아 · 유고의 코소보 평화전략

#### 코소보 분쟁 이전

“유고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각 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과 종교, 정당의 성원이 되어야 한다. 종족 · 민족 · 종교 · 이데올로기 · 정치적 차이는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공동의 명분 앞에서는 포기되어야만 한다. 각 국가의 유지 · 개혁 · 발전을 위해 유고연방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공동의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민족적 종교적 유대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신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언어와 이익은 국가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서만 발견되고, 인식될 수 있다.”(1997년 밀로세비치 취임 연설).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은 코소보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모든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민주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 나토의 군사적 개입의 위협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고연방공화국과 세르비아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는 이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유고연방 대통령과 리차드 홀브룩 특사간에 맺어진 협정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증명되었다. 정당한 경찰병력을 코소보 지역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철수하였고, 금지된 지역에서는 군사기지를 폐쇄하였다.

세르비아공화국과 각 민족 대표는 코소보지역의 자치를 위한 정치적 기본틀에 관한 선언에서 명하였다. 오직, 알바니아계만 불참하였을 뿐이다. 대화를 위한 수 차례의 요청도 허사였다. 그러므로, 세르비아공화국과 유고연방공화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과 협정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 아니라, 협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유고연방공화국과 세르비아공화국의 주권과 영토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소수민족의 권리보호, 세르비아와 유고연방공화국의 기본틀을 넘어서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자치권 허용, 코소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 코소보 분쟁 이후

나토와의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도, 유고 정부의 코소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었다. 유고연방 대통령 밀로세비치의 지난 6월 10일의 대국민 연설은 유고연방공화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초, 전국적으로 수많은 집회가 벌어졌다. 이들의 공통된 메시지는 ‘코소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코소보를 포기하지 않았다.”

또, 밀로세비치는 이번 전쟁이 갖는 의미를 세가지의 긍정적인 측면과 유고연방공화국에 주어진 세가지 위기적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부의 언급은 소수민족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코소보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유고연방공화국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의 전개 과정을 짐작케 한다.

“G8과 유엔은 우리나라의 영토적 통일성과 주권을 보장하였다. 「베오그라드협정」은 침략 이전

의 코소보 독립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국의 영토 보전은 결코 위협받을 수 없다. 우리는 조국을 방위하는 데 성공하였고, 모든 시민의 안전을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코소보에 배치된 외국군대의 활동도 우리나라의 영토 보전과 주권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 이는 자치권 이외에 어떤 것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 “우리는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다민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이 또한 우리가 지켜낸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밀로세비치 대통령과 유고연방공화국은 자국을 다민족 공동체의 조화로운 국가로 규정하고, 이의 유지·보존을 이번 전쟁의 주요한 효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가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는 한에서 개별 민족의 자치가 허용되는 것이며, 영토 보전과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독립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밀로세비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코소보의 독립의 요구가 코소보 알바니아계에 의해 다시 제기되고 서방측이 이를 지지한다면, 발칸지역에서의 분쟁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 지역별

## 유럽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운동  
키프로스

조화성  
(고대 대학원)

냉전의 붕괴 이후 유럽 정치의 주요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민족갈등과 분쟁이다. 구소련이나 유고처럼 내전으로 비화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영국처럼 자치권이 부여돼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쿠르드족처럼 유랑민족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강렬한 경우도 있다.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민족국가의 분열과 통합은 21세기를 앞둔 유럽정치의 중요한 양상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다민족국가의 분리독립 운동이다. 대표적으로 분리독립 운동이 강렬하나 자치권을 실현하면서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영국, 테러활동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실현하려는 스페인의 바스크족, 그리고 그리스와 터키의 국가적 대립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면서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키프로스의 갈등을 중심으로 유럽의 민족갈등과 분쟁의 양상을 살펴본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웨일스 ·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이

루어진 영국에서 북아일랜드의 신·구교간의 종교갈등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정치적 독립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켈트족으로 불리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인의 정체성의 기반은 종교이다. 언어에 있어 웨일스어·게일어가 남아 있지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분열적 요소는 잉글랜드를 포함하여 세 지역을 총괄하는 영국교회가 없다는 것이다. 즉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웨일스는 비국교도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종교적 요인과 더불어 1945년 이후 경제적 요인과 결합되어, 양 지역에서 민족당이 크게 신장하면서 분열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독립의 열기가 높아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을 중심으로 독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1997년 9월 11일 독립의회 부활에 관한 투표(1979년에는 부결)에서 스코틀랜드에서는 74%가 찬성했고, 의회의 징세권에 대한 찬성도 63.5%에 이르렀다. 그에 의해 스코틀랜드는 290년만에 입법 및 조세권을 이양받게 되어, 의회는 세율을 3%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한편, 웨일스는 9월 18일의 주민투표에서 50.3%의 찬성표를 확보함으로써 6백여 년만에 독립적인 자치 의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의회와는 달리 입법권과 조세권이 없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매년 교부받는 70억 파운드(117억 달러)의 재원으로 보건·교육·교통·문화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1999년 5월에는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를 통해 각각 129명과 60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독립적인 의회가 개원되고 자치의 시기가 열리게 되었다.

영국의 민족갈등은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노동당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맞게 중앙정부의 권력이 양 작업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독립국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외교·국방·국경통제·경제 등의 문제는 영국 중앙정부 총괄에 맡겨지고 보건·교육·경제개발·관광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입법을 허용하는 연방제적 성격이었다.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민족국가의 분열과 통합은 21세기를 앞둔 유럽정치的重要한 양상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다민족국가의 분리독립 운동이다. 민족갈등의 전개는 자치를 통한 평화공존, 테러와 내전의 발발, 국가간의 대립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스코틀랜드에서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강하다. 스코틀랜드인들은 자치회의의 부활을 독립국가 건설의 전 단계로 받아들이면서 향후 15년 이내에 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가의 여부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과 대립은 현재 잠복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스페인의 바스크 분리운동

바스크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가로지르는 피레네 산맥에 연이어 있는 지역이며, 스페인 지역 네 지구(비스카야·기프스코아·아라바·나바라)와 프랑스 지역 세 지구(라브르·바스나바르·스루)로 이루어졌다. 스페인 지역에 약 265만 명, 프랑스 지역에 약 35만 명이 살고 있다. 바스크인은 바스크어를 에우스카라, 바스크인을 에우스카르두나크(에우스카라를 사용하는 사람들), 바스크인의 거주지역을 에우스카디라고 부른다. 바스크인은 기원전 3세기에는 로마군, 서기 8세기에는 이슬람군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간직해 왔으나, 19세기 마드리드의 중앙집권 세력에 정복당했다. 이후 1936년에는 바스크 자치정부가 건립된 역사를 지닌다.

그러나 스페인 내전으로 바스크 자치정부는 붕괴되어 바스크어가 금지되고 스페인으로 통합되었다. 1959년에는 프랑코 독재체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민족주의 운동도 무장투쟁을 부르짖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가 결성되어 테러가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프랑코의 죽음과 민주화에 따라 바스크는 1979년 자치가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자치를 주장했던 바스크인의 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함을 지녀 지속적인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스크 조국과 자유, 그리고 이의 정치조직인 바스크독립당(HB)은 자치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온건 단체인 바스크

민족주의자당(PNV)은 현재의 자치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 통합의 움직임 속에 스페인에서 분리하여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력이 약화된 ETA의 테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스크의 독립과 통합의 역동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키프로스

고대 그리스의 정신적 고향인 올림푸스산이 위치한 키프로스섬은 그리스와 터키의 오랜 분쟁지역이 되어왔다. 1571년 오스만투르크에 정복되었던 키프로스는 1878년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그리스계 키프로스인은 약 77%로 1950년대부터 영국의 통치에 맞서 그리스·키프로스병합운동(ENOSIS)을 전개해 오다 지난 1960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리고 1963년에는 터키계 주민(18%)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개헌이 단행함으로써 내전이 촉발되었다. 당시 터키는 터키계 주민 보호의 명목으로 키프로스 영토의 37%에 달하는 북부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그리스계 주민 20만 명이 북부에서 쫓겨나고 터키 본토의 주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키프로스는 사실상 남북으로 양분되어 2개의 정권이 들어섰다.

1983년 터키계 지역은 '북키프로스공화국'으로 분리독립을 선언하였지만, 국제적으로 이를 승인한 것은 터키뿐이었다. 키프로스에서 그리스계는 그리스어를 말하며 그리스정교를 믿고, 터키계는 이슬람교를 믿고 터키어를 쓰는 등 서로 풍속이나 습관까지도 다르다.

상호 경계지역에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존재하고 1992년 이후 유엔의 평화협상 중재가 있어왔지만, 그리스계 대통령 아래 연방국을 주장하는 남부와, 남북 두 개의 독립국가에 의한 느슨한 연합, 또는 그리스계와 터키계에 의한 대통령 교대제를 요구하는 북부 사이에는 쉽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1997년 7월 그리스와 터키가 폭력이나 폭력사용 위협이 아닌 상호동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불가침조약

스페인 내전으로 바스크 자치 정부는 붕괴되어 바스크어가 금지되고 스페인으로 통합되었다. 1959년에는 프랑코 독재체제의 가혹한 탄압에 맞서 민족주의 운동도 무장투쟁을 부르짖는 '바스크 조국과 자유(ETA)'가 결성되어 테러가 자행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프랑코의 죽음과 민주화에 따라 바스크는 1979년 자치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 체결됨으로써 재통일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평화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불안한 평화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사용권(58%)인 플라망인과 프랑스어권인 남부 왈롱인(41%) 사이의 분리독립 주장,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헝가리계 주민의 자치확대 요구, 스페인의 카탈로냐 지방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모색 등도 중요한 유럽 민족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공화국 선포, 프랑스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은 유럽 분리독립 운동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종족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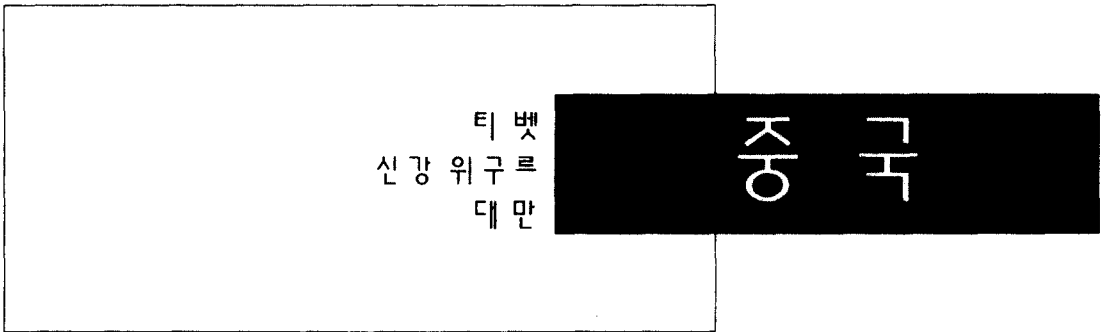
조화성  
(고대 대학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인종차별과 르완다 사태로 대표되는 종족 말살, 그리고 각 국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쿠데티는 암울한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과거였다. 여기에 난민과 기아 그리고 도처에 창궐하는 각종 질병 등은 아프리카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남아프리카의 평화적인 정권이양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화합 통치 그리고 시에라리온·콩고의 휴전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등 아프리카인의 자주적인 평화정착 노력은 21세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역을 둘러싸고 얽혀 있다는 사실이 민족분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미국·이란·터키 등이 이 지역의 유전 및 송유관 건설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바쿠-노보로시스크를 잇는 송유관이 체첸·그루지아·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등의 국가는 이 지역의 분쟁해결에 앞서 국가이익을 위해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구소련 지역에서의 민족갈등은 민족간 갈등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갈등의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영토는 크기가 중국 본토의 절반에 육박하며, 군사적 요충지이고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그러나 티벳과 위구르 등 몇몇 소수민족은 독립국가의 경험과 종교탄압에 대한 대중적 반감, 인접국의 지원 등의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분리독립 운동을 전개해 왔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소수민족간의 갈등은 예년에 비해 1999년 상반기에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기존 소수민족 정책의 확고한 고수이다. 개혁

김용찬  
(고대 대학원)

개방의 확대 속에서도 중국정부는 1998년 말 소수민족정책의 지속을 천명했으며, 이에 따라 분리독립 운동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정부는 1999년 들어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한 사전 차단과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 등 강온정책을 구사했다.

둘째, 소수민족 문제를 야기시켰던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 세력이 대화를 선택하거나 분리독립운동의 대중적인 확산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격렬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티벳의 경우 1998년 말부터 중국정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며, 달라이라미는 사실상 티벳의 완전독립을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무력충돌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신강 위구르·내몽고 지역도 무력행사는 1998년부터 현저하게 줄었다.

그러나 1999년 중국은 소수민족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줄어들어 대신 대만과의 갈등으로 다른 차원의 민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 티 벳

중국정부는 티벳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 분리독립 운동을 막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6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티벳 자치정부를 통해 철도부설 계획을 발표했다. 티벳은 중국에서 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따라서 철도부설은 중국정부가 오랜 티벳 봉쇄정책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정부는 티벳 지역에 맞는 에너지와 1차상품 가공업을 선정해서 새로운 농업단지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1차적으로 6만 명의 가난한 한족 농민을 티벳 접경지역에 이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티벳 지원 계획은 사실상 2020년까지 티벳 지역에 한족 6천만 명을 이주시킬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6백만 명인 티벳인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이런 중국의 조처에 대해 티벳 청년당원은 단식투쟁을 전개했으며, 티벳 망명정부와 외곽 단체들은 중국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서

명을 벌이고 있다. 티베인들은 중국당국의 조치는 티벳족의 인구 구성비를 줄여 분리독립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중국당국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8년 중국당국과의 대화를 모색했던 달라이라마는 올해 초 티벳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국은 진정한 안정과 단결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티벳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티벳지역에서의 대중적인 분규는 없었지만 외국에 망명해 있는 티벳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지도부의 외국방문시 적극적인 티벳문제의 여론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3월 25일 장쩌민 국가주석의 스위스 방문에 맞추어 벌어진 티벳 망명인사의 독립요구 시위는 중국당국을 당황케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티벳 독립운동가들은 1959년 '반중국 국민항거' 40주년을 맞아 인도에서 거리행진을 벌이고 중국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를 채택했다.

## 신강 위구르

신강지역에서는 1999년 상반기 동안 대규모적인 저항운동이나 갈등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리독립 단체의 행위로 추정되는 테러는 1998년에 이어 간헐적으로 벌어졌다. 올해 초 신강 지역의 류부포 핵미사일 기지가 분리독립 단체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의해 습격을 받아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사일기지가 습격당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로 신강지역 분리독립 세력의 과격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존 테러가 건물과 댐 등에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군사기지로 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은 분리독립 운동 세력이 위구르족을 대중적으로 동원하기 어려워지자 그들의 건재를 과시하기 위해 더욱 과격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안문사태 10주기를 전후해 신강지역에서는 폭탄테러가 작은 규모로 발생했다.

## 대만

중국의 중앙정부와 소수민족 간의 갈등은 예년에 비해 1999년 상반기에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유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기존 소수민족 정책의 확고한 고수이다. 둘째, 소수민족 문제를 야기시켰던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 세력이 대화를 선택하거나 분리독립운동의 대중적인 확산에 실패하면서 중앙정부와의 격렬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1999년 7월 9일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대만과 중국은 별개 국가”라는 발언은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리덩후이 총통의 발언에 의해 야기된 중국과 대만간 문제의 본질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대만독립을 지지하려는 중국과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대만은 이 원칙을 놓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1980년대 1국가 2체제를 무시하고 독립을 추구하면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덩샤오핑의 경고 이래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대만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은 1998년 “통일만 된다면 대만과 주권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에 비해 리덩후이 대만총통은 1997년 “대만은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라고 주장하고, 1999년 5월에는 중국 대륙 전체를 대만과 내몽고·신장·티벳·동북·화북·화남 등 7개의 국가로 쪼개자는 칠피론을 제시해 중국 당국을 자극했다.

리덩후이 대만총통의 ‘국가 대 국가’의 발언에 대해 중국당국의 태도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무력사용의 가능성을 공공연히 암시했다. 실제로 중국은 리덩후이의 미국방문에 반대하며 대만 근해에서 1996년 3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었다. 그러나 중국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만이 개별국가임을 강조해 중국을 자극한 것은 안보문제를 이용해 2000년 봄 총통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교류 통로인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 사이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중국 해협회 회장이 1999년 가을 대만을 방문하게 되어있어 관계 정상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 만약 리덩후이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중국 해협회 회장의 대만 방문이 취소된다면 양안간의 관계는 결정적 단절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체결됨으로써 재통일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평화협상이 진척되지 못한 불안한 평화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벨기에의 네덜란드어 사용권(58%)인 플라망인과 프랑스어권인 남부 왈롱인(41%) 사이의 분리독립 주장,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양국의 헝가리계 주민의 자치확대 요구, 스페인의 카탈로냐 지방의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모색 등도 중요한 유럽 민족갈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이탈리아 북부의 파다니아 공화국 선포, 프랑스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은 유럽 분리독립 운동의 또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종족 분쟁

조화성  
(고대 대학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인종차별과 르완다 사태로 대표되는 종족 말살, 그리고 각 국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쿠데티는 암울한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과거였다. 여기에 난민과 기아 그리고 도처에 창궐하는 각종 질병 등은 아프리카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남아프리카의 평화적인 정권이양과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화합 통치 그리고 시에라리온·콩고의 휴전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 등 아프리카인의 자주적인 평화정착 노력은 21세기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뿌리깊은 인종간 대립과 국가간 갈등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분할 통치와 지배로부터 비롯되었다. 종족간 분리 지배 정책이 독립 이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종족과 새로운 진출을 모색하는 종족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량의 살상과 난민으로 결과된 것이다. 여기에 냉전체제 해체 이후 분쟁지역에서 무기를 팔아 이득을 챙기려는 이집트·남아공·프랑스·러시아·동유럽 등이 한 몫 하고 있는 셈이다.

아프리카의 민족적 갈등의 해결양상은 상호공존과 권력의 분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호공멸의 위험을 인식하고 공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분점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민족 공존국가의 모형을 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비록 종족갈등의 씨앗과 경제적 빈곤이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 있지만 암울한 역사를 극복하고 공존하려는 노력 역시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민족적 갈등의 해결양상은 상호공존과 권력의 분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상호공멸의 위험을 인식하고 공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분점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민족 공존국가의 모형을 추구하고 있는 양상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난 1994년 소수 백인에 의한 다수 흑인 통치의 역사에 막을 내리고 새롭게 등장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9년 6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에서 타보 음베키(Thabo Mbeki)로의 평화로운 권력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갈등 해결의 중요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즉 대립과 갈등의 아프리카의 역사에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 아프리카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었다.

1990년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언과 만델라의 석방, 과도헌법 제정을 위한 흑백정치협상과 과도행정평의회(TEC) 그리고 1994년 만델라에 이은 1999년 음베키의 평화적인 대통령 취임은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흑백갈등과 흑흑갈등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다인종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었다.

1994년 총선 이후 1999년까지의 과정은 이전의 인종차별 정책(인종간 혼인금지법·부도덕법·주민등록법·집단지역법 등) 철폐와 보복의 역사 만큼이나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백인 극우정당

인 보수당과 줄루족 중심의 잉카타자유당의 자치권과 영토 요구는 만만치 않았으며, 기나긴 흑백 차별정책의 결과에 따른 상호불신 역시 깊게 자리잡아 있었다. 그러나 세 명(투투 주교·데 클레르크·넬슨 만델라 전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의 역사가 보여주듯 지속적인 공존과 화해정책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켜 왔다.

남아공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특징은 무엇보다 다인종공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남아공의 흑백정당 및 정치단체는 모두 총선에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제1당에서 대통령을, 제2당에서 부통령을 선출하며, 나아가 득표율 5% 이상의 모든 정당으로 거국내각을 구성했다. 즉 과도헌법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권력독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인종이 권력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 것이었다.

또 '진실규명 및 화해위원회'를 통한 과거청산의 과정에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만델라의 말처럼 철저한 진상조사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죄상을 고백하고 참회한 백인경찰이나 우익단체 관련자를 사면조치하는 화해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더욱이 과거청산의 과정은 백인의 과오에 대해서만 한정짓지 않고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을 벌인 흑인단체의 가혹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함으로써 흑인정권하에서 불안에 떨던 백인을 안심시켰다. 이에 따라 자본을 가진 백인의 해외탈출이 일어나지 않아 극심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남아공의 과정은 인종주의와 보복의 역사를 청산하는 데 있어 강한 정당과 책임있는 지도자 그리고 합법적인 정치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었으며, 아프리카의 민족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르완다 종족분쟁

1994년 전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르완다 사태는 50만 명의 사망자와 2백만 명의 난민을 낳았던 인종대결과 살상의 전형이자,



부족간 살육과 내전, 쿠데타, 난민 등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과거 모습이었다.

르완다의 종족대결은 다수 부족인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대결인데, 이 부족간의 대결은 르완다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부룬디와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대립의 역사에는 식민통치 시절 제국주의 세력의 부족분리 정책이 놓여 있다. 즉 벨기에가 1919년 독일로부터 르완다 식민통치권을 넘겨받은 뒤 식민통치를 원활히하기 위해 소수 투치족으로 하여금 다수 후투족을 대리 통치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었다. 1962년 독립한 뒤부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투치족과 이에 맞서는 후투족의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1973년 후투족이 무장봉기로 정권을 잡은 뒤에도 내전은 계속되었다. 제국주의 세력의 분열정책과 부족 엘리트간의 정권다툼으로 양민이 희생되고 있는 역사의 전형을 보여 준 것이다.

1994년 재현된 인종살상은 1993년 8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중재로 휴전이 합의된 상태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후 투치족이 중심이 된 르완다애국전선(RPF)과 후투족으로 구성된 정부군과의 치열한 내전 끝에 르완다애국전선측이 승리하였다. 지속적인 종족갈등에도 불구하고 르완다는 이후 두 종족간의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고자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화해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3년 이디오피아로부터 독립한 에리트레아와 이디오피아의 국경분쟁은 1999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수단은 1956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북부의 아랍계 정부와 남부지역 흑인 세력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비화되어 왔다. 수단의 내전은 인종차별과 종교갈등이 중첩되어, 북부의 회교도와 남부의 기독교 반군인 수단인민해방군(SPLA)의 대립을 축으로 하면서 테러문제로 미국과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기근까지 포함하여 내전 과정에서 약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라이베리아·앙골라·콩고·콩고민주공화국·시에라리온

**르완다의 종족대결은 다수 부족인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대결인데, 이 부족간의 대결은 르완다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부룬디와 콩고민주공화국(구자이르)에 걸쳐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 대립의 역사에는 식민통치 시절 제국주의 세력의 부족분리 정책이 놓여 있다.**

등 아프리카 곳곳에서는 내전과 종족대립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특히, 이런 대립은 이웃한 나라들 사이의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아프리카의 민족갈등은 과거 식민지 제국주의의 분할지배의 역사, 그리고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그리고 수많은 종족과 종교적 갈등의 역사가 중첩되면서 내전과 인종청소라는 극단적 모습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은 그리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 들어서 아프리카인 스스로의 단합과 대화를 통해 갈등과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와 공존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 구 소련

나고르노·카라바흐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체첸

김인성  
(고대 대학원)

1980년대 말, 페레스트로이카가 절정에 달한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한 구소련 지역의 민족갈등은 1999년 상반기에 들어서도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카스피해와 흑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 등 코카서스 산악지역 국가들과 러시아연방의 체첸공화국은 폭력을 수반한 민족 분쟁의 양태를 지속적으로 노정해 오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그루지아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아의 독립 요구로 인해 러시아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체첸 지역에서는 납치와 암살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체첸 테러

보장하고 자치권을 확대하는 평화협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인디언 자치기구의 건설과 멕시코 지방 대의기구에 인디언이 참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 북한

김용찬  
(고대 대학원)

북한 민족문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력민족과 소수민족간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내부에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문제를 민족주의를 통한 체제결속과 민족의 재통합문제, 해외동포와의 관계 문제를 설정하고 각 영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전개해 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 민족문제의 양상은 변화해 왔다. 변화의 주된 원인은 경제난과 사회주의권 국가의 붕괴이다. 북한의 경제는 1990년 이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식량난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98년 식량생산량은 수요량에 비해 160만 톤이 부족했다. 또한 독일의 통합과 1991년 소연방의 해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북한을 고립화시켰으며 국제 지지세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이러한 내외외환을 겪고 있는 북한은 기존 민족문제 설정과 정책에 대해 변화를 모색했다.

1986년에 발표된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체제단속과 강화를 위한 배타적 민족주의의 출발점이었다. 민족주의의 동원으로 체제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북한은 민족문화유산의 복원과 발굴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민족문화유산 발굴의 대부분은 왕릉 복원작업과 단군 실체를

규명하는 것에 맞추어졌으며, 단군릉 복원작업은 단군과 김일성을 동일화시키는 이상화의 한 방편으로 전략했다. 또한 북한은 평양 주위의 발굴작업을 통해 북방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남한에 대해 역사적 우위를 강조했다. 1999년에는 평양 일원을 '대동강문화'로 명명하고 북한 주민의 민족적 자부심을 고양시키고자 주력했다.

한편 활발하게 펼쳐졌던 해외동포 정책은 급격한 쇠퇴를 겪고 있다.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과 초청 등은 현저히 줄어들고 해외동포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급급한 실정이다. 조총련계 학교에 보내주던 교육원조비도 한때 중단되기도 했으며, 각 지역 해외동포와의 연결 통로인 해외공관도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북한은 조총련의 조직사업에서 주 대상을 상공인에 맞추도록 하는 등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한중·한소 수교 이후 불안감을 느낀 북한은 재중·재소동포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민족재통합 영역에서는 1991년 김일성의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담화 이후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분단 상태를 온존, 고착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문헌 발표와 1998년 '민족대단결 5대방침' 제기는 민족재통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수세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1990년대 북한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민족 연술을 통한 체제강화 노력과 해외동포에 대한 지원, 민족재통합 노력 등의 후퇴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는 경제난과 국제적인 고립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를 유지하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1999년 상반기에도 민족문제의 등장과 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이전 시기와 같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 민족주의를 통한 체제유지

북한은 유고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공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북한 민족문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주력민족과 소수민족간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내부에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민족문제를 민족주의를 통한 체제결속과 민족의 재통합문제, 해외동포와의 관계 문제로 설정하고 각 영역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을 전개해왔다.**

계속적으로 천명했다. 코소보 문제에 대해 북한은 유고의 내정문제로 보면서 나토의 공습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것으로 인식했다. 코소보 사태로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확인한 북한은 체제단속을 위해 '제국주의의 황색바람'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치고 경계해야 함을 역설했다. 즉 미국과 나토를 제국주의로 설정하고 대항민족주의의 동원에 의한 체제생존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일본과 남한의 어업협정에 대해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며 매국적인 협정으로 강력히 비난하고, 6월에는 일본정부의 국가 및 국기 제정방침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경계해야 함을 촉구하는 등 일본의 세력 신장에 대해 강한 민족주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민족의 존엄'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걸출한 영도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물이 김정일임을 선전했다. 이러한 선전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민족의 재창조'라는 담론을 통한 민족적 자부심의 강조로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전개한 것이다.

민족주의의 교양을 목적으로 한 민족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과 관련하여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조선 유산의 발굴작업을 올해부터는 개성으로까지 확장하면서 고려시대의 유물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이것은 북방민족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조선과 고구려, 통일을 달성한 고려를 논리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발굴 유물의 선전작업을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진행했으며, 4월에는 유네스코에 평양시와 개성시, 보현사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해외동포에 대한 지원요청과 정책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덕수 조총련 의장은 신년 초 "애국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자"고 강조했다. 애국사업은 다름아닌 대북지원 사업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외동포의 경제지원은 5월 재일 조선인 청년동맹 간부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몇차례 공식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동포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많이 위축되고 있다. 북한과의 무역거래를 주로 맡았던 조총련계 무역회사 도카이쇼지의 부도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또한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부실화는 더욱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과 조총련간의 합영회사도 애초에 131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15개 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북한은 3월 조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에 나진 선봉 이외에 특수경제지대를 창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일동포 기업가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했다.

북한이 막대한 지원을 했던 조총련계 학교의 위축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는 1967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으며 교과내용도 일본 정규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재중동포에 대해서는 연길사회예술센터의 운영과 4월 북한도 서사진 전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홍보와 접근을 모색했다. 특히 사회예술센터는 북한에서 12명의 교수가 직접 중국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수의 증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배타적 민족대단결을 위한 정책

북한은 2월 3일 '남조선 당국과 정당, 단체 및 각계 인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국보법 철폐와 합동군사훈련 중지등의 선행조건을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고위정치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리고 김정일이 1998년 4월 18일 발표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 1주년을 맞아 기념, 계승작업의 일환으로 조국평화통일 위원회는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구호'를 채택했다. 구호의 주요내용은 김일성의 통일유훈 관철,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전향 장기수 송환, 주한미군 철수 등이다.

북한에서의 민족대단결은 통일전선전술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것이다. 올해들어 북한은 민족대단결을 이루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김일성 민족의 존엄'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겉출한 영도자'가 필요한데 그러한 인물이 김정일임을 선전했다. 이러한 선전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지속되어 온 것으로 '민족의 재창조'라는 담론을 통한 민족적 자부심의 강조로 체제강화와 김정일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을 전개한 것이다.

서, 선행 실천 사항이 이행되어야만 고위급 정치회담도 성사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북한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미군 유해 상환문제와 연관시키며 미국을 압박했고, 남한정부에도 송환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미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를 만들어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전담시키고 있다. 북한이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남한정부의 장기수 석방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북한 주민에게 이인모 송환 때처럼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강조하면서 북한체제에 순응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임과 동시에 남한정부의 비전향 장기수 석방을 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에 대해 남한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자와 국군포로를 교환하자고 하자 북한당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 민족별

### 유대인

고병국  
(고대 대학원)

이스라엘은 1999년 6월 16일부터 이디오피아 거주 흑인 유대인에 대한 이주정책을 실시, 24일까지 3천 8백여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을 밟았다. 이디오피아의 흑인 유대인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반. 이들이 할례 등 유대교 풍습을 갖고 있는 사실에 주

목한 이스라엘 정부가 현지에 사무소를 열고 염색체와 DNA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유대교도임이 확인된 사람을 자국 땅으로 이주 시킨 것이다.

이디오피아 유대인의 집단이주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흡수정책의 연장선에서 파악될 수 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모든 유대인의 귀국에 대해 개방할 것이며, 모든 거주자를 위해 국가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에 기반한다. 이스라엘은 종교나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 대해 평등한 사회·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1950년의 귀환법(Law of Return)은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이스라엘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호 개방이 선포된 후, 68만 7천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귀국하게 되며 1951년까지의 이주자 수는 1948년 전 인구의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이들 이주자들에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불가리아와 폴란드의 유대인 공동체 대다수, 루마니아 유대인의 3분의 1, 그리고 리비아·예멘·이라크의 거의 모든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에도 세계 각지의 유대인을 흡수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독립 직후 이스라엘로의 대규모 이민은 주로 거주국의 유대인에 대한 억압정책에서 연유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구에서의 자발적 이민도 그 규모가 커지게 된다.

1990년 전후의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 집단이주는 구소련방과 이디오피아로부터의 이민이다. 1970년대의 국제적 화해무드의 덕분으로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이 소련방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주하였으나,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에 의한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에트 유대인에게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집단이주가 허용되었다. 1991년의 소련방 붕괴는 이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19만 명, 1991년 15만 명이 이주하였으며, 이후에는 구 소련방이 안정되고 이스라엘 내 이주자에 대한 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감소추세를 보여 해마다 약 7만 명 정도를 기록하게 된다.

**이스라엘은 1999년 6월 16일부터 이디오피아 거주 혹은 유대인에 대한 이주정책을 실시, 24일까지 3천 8백여 명의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을 밟았다. 이디오피아의 흑인 유대인 존재가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반. 이들이 합례 등 유대교 풍습을 갖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 이스라엘 정부는 현지에 사무소를 열고 염색체와 DNA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유대교도임이 확인된 사람을 이주시켰다.**



## IMMIGRATION TO ISRAEL BY REGION OF ORIGIN

Years	1992	1993	1994	1995	1996
Totals	77,100	76,800	79,800	76,400	70,600
Former U.S.S.R	65,100	66,100	68,100	64,800	58,900
Other European Countries	3,900	4,200	4,500	4,100	4,200
North America & Oceania	2,200	2,400	2,600	2,700	2,600
Latin America	800	800	1,000	1,500	2,200
Other	5,100	3,100	3,600	3,300	2,900

출처 :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http://www.israel-mfa.gov.il/mfa/>

한편, 이디오피아의 유대인 약 2만 4천여 명은 1984년과 1991년 두 차례 각각 '모세 작전' 과 '솔로몬 작전' 으로 알려진 비밀작전을 통해 이스라엘로의 이민에 성공하게 되며, 이후 1994년까지 이디오피아 이민자 수는 5만 2천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스라엘 정부의 유대인 흡수는 '직접흡수' 와 '간접흡수' 그리고 '흡수바스켓' (absorption basket) 등 이민자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집행으로부터 정착지 선정과 흡수방법 등에서 이민자 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변모해 왔다.

이 같은 이민자 흡수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은 구 소연방 출신 유대인의 대규모 이민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대인 흡수정책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를 전제로 하여 건국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대인의 이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스라엘로의 이민자 수가 증가하면서 주택이나 고용 등 사회복지 문제에서 새로운 어려움에 당면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기준을 세워야 했다. 즉, 유대인들 중 압도적인 수는 백인이지만 일부는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로 흘러들어가 오랜 현지생활로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유대교의 종파에 따라서 어느 종파로 개종하는가의 문제가 논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피부색의 차이에 따른 차별, 유대교 정통파 대 개혁파의 갈등, 유럽계 유대인(아슈케나짐)과 동방계 유대인(세파르딤)의 갈등 등은 서로에

대한 적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성공적인 유대인 흡수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 1년이 지나기 전에 제3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는 중도 탈락자(요르담 : yordim) 문제—이스라엘 내무부의 1991년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여행자 4,125명 중 1,015명이 귀국하지 않아 요르담으로 분류됨—은 이민자 흡수정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유대인은, 비록 높은 수준의 민족 정체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타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민자와 기존의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이스라엘의 흡수정책은 유입인구의 증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나라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터 키  
이 란  
시 리 아  
이 라 크

# 쿠르드족

오창유  
(고대 대학원)

지난해 11월~올 2월까지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지를 전전하다가 케냐 나이로비의 그리스 대사관에 은신 중이던 오잘란은 2월 15일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터키 특공대에게 체포되어, 6월 29일 터키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쿠르드노동당(PKK)의 2인자인 소이잘(Cevat Soysal)이 지난 7월 22일 체포되자 쿠르드노동당은 공식적으로 보복을 선언하였다.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을 통한 쿠르드 민족의 자유 쟁취를 기본 목표로 하는 쿠르드노동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자치를 식민지배의 연장으로

대한 적의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성공적인 유대인 흡수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 1년이 지나기 전에 제3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는 중도 탈락자(요르담 : yordim) 문제—이스라엘 내무부의 1991년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여행자 4,125명 중 1,015명이 귀국하지 않아 요르담으로 분류됨—은 이민자 흡수정책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유대인은, 비록 높은 수준의 민족 정체성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타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민자와 기존의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민자의 정착을 돕는 이스라엘의 흡수정책은 유입인구의 증가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나라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터 키  
이 란  
시 리 아  
이 라 크

**쿠 르 드 족**

오창유  
(고대 대학원)

지난해 11월~올 2월까지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지를 전전하다가 케냐 나이로비의 그리스 대사관에 은신 중이던 오잘란은 2월 15일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던 중 터키 특공대에게 체포되어, 6월 29일 터키 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쿠르드노동당(PKK)의 2인자인 소이잘(Cevat Soysal)이 지난 7월 22일 체포되자 쿠르드노동당은 공식적으로 보복을 선언하였다. '민족혁명'과 '민주혁명'을 통한 쿠르드 민족의 자유 쟁취를 기본 목표로 하는 쿠르드노동당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자치를 식민지배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고, 이에 단호히 반대하는 쿠르드노동당이 쿠르드 민족의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성취될 수 있는가? 지난 호에서 쿠르드 민족의 수난 상황을 고찰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쿠르드 민족국가인 가상국가 쿠르드스탄(Kurdistan)의 형태로 가능한 대안과 그 지정학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자디(M.R.Izady) 교수의 논문을 번역·소개한다.

지난 시절 쿠르드 독립국가의 건설의 가능성을 배제해 온 것은 바로 '가상국가'로서의 쿠르드스탄의 지정학이다. 7개 국에 걸쳐 있는 쿠르드스탄은 70여 년 동안 코카서스의 소련으로부터 중동지역을 보호해 온 '고원의 방패'였다.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의 쇠퇴는 중동 북부에 불안한 미래를 드리우고 있고, 쿠르드스탄은 여전히 완충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4개의 지정학적 세력들(아랍·나토·구소련 블럭·중남아시아 블럭)에 토착 인구를 보유한 유일한 집단으로 매우 애매한 특성을 지니며, 20세기 쿠르드족과 그들의 운명은 이러한 세계 블럭의 권력정치와 변화하는 이해 관계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강대국의 쿠르드족 지원은 구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나토 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터키의 동쪽 측면에 간접적이지만,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라크 내의 쿠르드족 지원은 바그다드에 대해 오랜 기간 절대적 관계를 견지해 온 이란과 시리아를 돕는 것인 동시에 터키에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아랍 블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라크와 시리아에 非아랍계 소수파가 외국세력과 연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쿠르드족 구원에 대한 서구의 단호한 거부는 쿠르드족을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도록 하고, 대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인 테러활동으로 내몰았다. 소련의 붕괴는 쿠르드 지도자들로부터 이러한 카드를 박탈하였으나, 현재의 유동적인 상황은 과거 판도로의 복귀 내지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야기할 수도 있다.

건조한 여타 중동지역의 주요한 수계인 쿠르드스탄은 현재 이 지

역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라크에서는 키르쿠크(Kirkuk) 유전이 전체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시리아와 터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유전이 쿠르드스탄에 위치해 있다. 바로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1차대전 이후 '세브르 조약'에 의해 시작된 독립 쿠르드스탄 건설의 과정을 영국이 방해한 주요 이유이다. 중부 쿠르드스탄의 원유생산지의 중요성 때문에, 영국은 쿠르드스탄을 이라크에 위임 통치하였고, 나머지는 터키에 병합시켰던 것이다.

민족적 번영을 위한 또 다른 장애요인은 쿠르드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역사적 맹방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쿠르드족은 '여타 아랍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이들에 의해 원조를 받으며, 범아랍주의자를 결합'시키는 명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는 구분된다. 쿠르드족은 주변국 어디와도 종족적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쿠르드족은 전략적 위치와 세계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희생물이다. 그들은 지역적·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동시에 쿠르드족은 너무 많은 지정학적 불력에 산재해 있어,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와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날 이라크와 시리아의 쿠르드족은 이들 반서방의 급진 아랍주의하에서 그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유산을 순화시킬 의무가 있는 반면, 동남부의 쿠르드족은 이란의 회교 근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추종을 요구받고 있다. 아나톨리아(Anatolia)에서, 쿠르드 문화는 親서방적이고 근대적 국가체제와 유럽적 시각을 보유한 터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경제·정치적 힘이 쿠르드 민족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그들은 문화적 결집력과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한민족에서 여러 민족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계속해서 쿠르드족의 영토를 장악하고, 인구를 팽창시키는 것이 중동지역의 당해 국가들의 현재와 미래에 미치는 이득과 책임을 고려할 때, 쿠르드스탄이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독립을 성취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쿠르드스탄의 지정학적·경제적·사회

**쿠르드족은 4개의 지정학적 세력들(아랍·나토·구소련 블록·중남아시아 블록)에 토착 인구를 보유한 유일한 집단으로 매우 애매한 특성을 지니며, 20세기 쿠르드족과 그들의 운명은 이러한 세계 블록의 권력정치와 변화하는 이해 관계의 맥락 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적 분화는 어떻게 될까?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할까?

## 터 키

최다수의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터키부터 살펴보자. 쿠르드인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모든 인접 영토를 병합한 광대한 범쿠르드 독립 국가가 등장한다면, 터키공화국은 경제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쿠르드스탄은 터키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침체된 지역이다. 또한 가장 보수적이고, 출생률이 가장 높으며, 교육수준이 가장 낮고, 터키에 가장 통합이 안 된 지역이다. 사실, 쿠르드스탄의 포기를 통해, 터키반도는 사회·인구구성·경제 그리고 역사적으로 동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가 된다. 매우 아시아적이고 빈곤한 지역인 쿠르드스탄을 포기하면, 유럽의 터키를 향한 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다.

새로 확정된 터키의 영토 내에서 주요 강은 그 수원을 쿠르드고원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쿠르드의 전략적인 수자원은 터키와는 무관한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티그리스·유프라테스(Tigris-Euphrates)水系는 쿠르드스탄에서 남쪽 이라크와 시리아로 흐르고, 아락세스(Araxes)와 쿠라(Kura)는 동쪽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로 흐른다. 높은 타우루스(Taurus) 산맥은 지리·수계상으로 쿠르드스탄을 반도의 아나톨리아에서 효과적으로 분리한다. 터키는 쿠르드의 물을 남쪽의 아랍에 판매하는 이익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쿠르드스탄을 계속 장악하는 비용을 상쇄하지는 않는다.

쿠르드스탄을 포기한다면, 터키는 더 높은 일인당 소득과 문자해득률, 더 낮은 인구성장률, 더 근대적인 교통체계를 갖게 될 것이고, 인권침해 사례를 용인할 이유가 적어지는 것이다. 사실, 아시아에서 위협국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새로이 설정된 터키에서의 인접하는 아시아 국경은 주권국인 쿠르드스탄과 그루지야뿐일 것이고, 터키는 '독립 쿠르드스탄'이라는 지정학적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큰 승리가 될 것이다.

## 이란

쿠르드 영토의 상실은 이란의 폭넓은 종족적 균열선을 따른 국가의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란은 더이상 고대 이래 존재했던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종족적 소수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3번째로 큰 종족집단인 쿠르드족 독립에 대한 동의는 여타의 약 12개 종족집단을 자국의 영토 내에 복속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게 할 것이다. 북부의 아제르스(Ageris)는 이미 구소련 영토 내에 독립국가(아제르바이잔)를 건설하였다. 만약에 일부 종족이 이란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다면, 많은 이란 내의 아제리스가 북부의 아제르바이잔과의 통일을 선택하게 될 것임은 당연하다. 정치적 영향이 너무나 큰 것이므로, 경제적인 측면은 살펴볼 필요도 없다. 만약 독립적인 쿠르드 국가가 생겨난다면, 이란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다.

## 시리아

쿠르드땅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민족주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다. 쿠르드땅의 상실은 시리아에 있어 마르딘(Mardin)의 남쪽과 하란고원(Harran Plain)의 아랍인 거주 영토의 귀속을 통해 충분히 보상될 것이다. 이 지역은 터키의 땅이지만, 지정학적 필요성의 경지에서 볼 때, 터키-쿠르드 분리 조약에서 쿠르드스탄에 귀속될 것이고, 시리아는 영토의 상실없이 거의 완전한 아랍어 사용국가가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리아 국경 내에 널려 있는 쿠르드 영토는 하란 고원의 비옥한 면화 생산지보다 가치가 없다.

## 이라크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자원을 가진 쿠르드땅의 분리에 대한 이라크의 동의는,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며, 키르쿠크의 유전

쿠르드스탄이 완전한 혹은 부분적인 독립을 성취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터키는 '독립 쿠르드스탄'이라는 지정학적 시나리오 속에서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이며 이란은 가장 큰 손해를 볼 것이다.

과 정유시설, 기타 설비의 상실은 심히 아쉬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남부 아랍 이라크에도 많은 석유가 있고, 키르쿠크의 상실은 머지않아 잊혀질 것이다.

반면, 쿠르드의 독립은 물 공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티그리스강의 원류를 쿠르드스탄이 장악하는 전략적 손실을 의미하고, 이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쿠르드스탄에서 합류한다. 수원에 대한 통제 문제는 바그다드의 모든 정부에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쿠르드 영토의 상실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물 때문에 매우 값비싼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라크는 주로 쿠르드족 문제로 인한 고통스런 근대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일단(쿠르드스탄이) 분리된 뒤에는 모든 당사자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이다.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이라크 역시 거의 완전히 아랍어 사용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한 국가로.

포괄적 독립국가인 '대쿠르드스탄(Greater Kurdistan)'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쿠르드인을 한 국가 내에 포섭하는 것은 많은 기존 국가의 영토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다. 현대 세계에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독립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20여 개의 아랍국가, 13개의 스페인어 사용국가, 많은 독일어 혹은 영어 사용국가, 그리고 공용어로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3개의 주권국가. 다른 주권국가에서 소수파로 생활하는 많은 아랍어·스페인어·독일어 그리고 페르시아어 사용집단. 그런데, 왜 쿠르드 국가는 대쿠르드스탄이 아니면 안 되는가? 쿠르드 국가가 굳이 쿠르드인으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으며, 쿠르드인이 다수일 필요도 없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라오스는 오늘날까지도 소수의 아제리스·아르메니아·라오스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자니(Barzana)·탈라베니(Talabeni)·오잘란(Ocalan) 등 쿠르드 지도자들은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도덕적으로 각자 부분 만큼의 쿠르드스탄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여타 민족의 경험을 고려할 때, 쿠르드족의 독립 형태는 두가지가 가능하다.



## 범쿠르드 국가

거의 모두를 포섭하는 범쿠르드 국가는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어렵다. 이는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있다. 이러한 선택은 4개의 중동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들 국가에는 가장 인구가 조밀한 국가와 가장 강력한 국가가 있다. 이란과 터키, 중동국가는 단지 투표를 통해 캐나다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분리를 인정하는 퀘백인이나 슬로바키아인처럼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 쿠르드스탄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그 어떤 국가도 쿠르드인 혹은 자국의 관할하에 살고 있는 다른 집단에게 조만간 그러한 사치를 허용할 것 같지 않다. 근대 무기의 파괴성을 감안한다면, 쿠르드족과 이 국가들 사이의 지루한 유혈전투는 범쿠르드 국가의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을 파괴할 것이다.

범쿠르드 국가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쿠르드 사회의 내부 문화적 균열은 모든 거대한 민족에 존재하는 균열 만큼이나 크다. 마라스(Maras)와 앤트워프(Antwerp)의 쿠르드인과 사난다야(Sanandaj)와 키르만사(Kirmanshah)의 쿠르드인을 통합하는 것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아랍인을 결합시키는 것 만큼 유치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다.

범쿠르드 국가가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잘 작동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그것은 풍부한 물과 농업자원을 갖고 있다. 유전은 이미 알렉산드레타(Alexandretta)만의 정유소와 파이프라인, 수출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은 잘 개발되어 있다. 그것은 전체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의 하나일 것이고, 잠재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일 것이다. 적어도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동문제의 중요한 당사자가 될 것이다.

## 많은 쿠르드 국가들

그러나, 왜 크든 작든 하나의 쿠르드 국가만 있어야 하는가? 쿠

포괄적 독립국가인 '대쿠르드스탄(Greater Kurdistan)'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쿠르드인을 한 국가 내에 포섭하는 것은 많은 기존 국가의 영토 해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다.

르드스탄의 이웃에는 20개의 아랍어 구사 국가와 3개의 페르시아어 사용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더 멀리, 4개의 독일어 사용국가, 20여 개의 스페인어 사용국가, 12개의 영어 사용국가가 있다. 이들 국가의 각 집단은 언어적인 요소에 더하여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민족 정체성이 단일국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동일언어 혹은 동일문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위에 언급된 국가 가운데 어느 국가도 단일 깃발 아래 통일을 향해 나아간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 혹은 일반인이 이를 선택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즉각적인 이익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면, 통일에 대한 전망, 즉 공통된 쿠르드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범쿠르드 국가는 범아랍·범독일 혹은 범페르시아 국가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쿠르드스탄의 경우, 독립의 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지금조차도, 다양한 쿠르드 정당들이 공공연한 전투를 통해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당이 통일의 전망이 존재할 때, 통일될 '대쿠르드스탄'을 위해 각자의 차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가? 무엇이 이토록 이질적인 쿠르드스탄으로 하여금 많은 '쿠르드스탄'으로 분열되는 것을 막을 것인가?

독립된 쿠르드 국가(들)을 건설하려는 시도 속에서, 많은 쿠르드인이 그 영토 외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바로 지리적 필요성에 의해 쿠라산(Khurasan), 중·서부 아나톨리아 그리고 코카서스의 쿠르드 거주지역은 쿠르드스탄에 복속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인보다도 더 많은 비쿠르드인을 이주시키지 않고는 독립된 쿠르드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중부 아나톨리아와 쿠라산의 쿠르드인은 고대부터, 코카서스에 거주하는 쿠르드인은 19세기 중엽 아르메니아인이 에리반(Erivan) 칸국(에르메니아공화국)으로 대규모 유입된 이래로 인접하는 쿠르드스탄과는 연계성을 상실하였다. 이들 지역은 독립 쿠르드스탄에 병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거주자(그곳에 거주하는 쿠르드인)는 이주해 갈 수 있고, 가상의 쿠르드 국가에 정착할 수도 있다.

# 화 교

박지원  
(고대 대학원)

지난 6월 22일 인민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국내 신문에 실린 한 화교 소녀의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소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전국 최우수 고교생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거부한 왕위안(王淵·18)이 그 주인공이다. 9살 때 공학박사인 부친을 따라 미국에 이민온 왕위안은 2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부지구 최고명문인 메사추세츠주 필립고교를 6월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9월 하버드대에 입학할 예정이다. 4년 전에는 고교 입학시험에서도 전국 수석을 했었다. 문제는 백악관이 올해 수상자 100명에 포함된 왕위안에게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수상자는 그 중에 국적이 미국인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영광도 조국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국적을 포기하느니 상을 포기하겠다”며 수상을 포기했다.

이 일은 그 동안 미국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오고 있던 중국으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었다.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편법으로 상을 받을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소녀는 끝내 이를 거부했다.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일은 중국인이라는 화교의 정체의식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막강한 위세를 과시하던 동남아의 화교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제국', '세계 최대의 복합기업집단' 등으로 불리면서 뛰어난 상재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경제를 장악하고 중국대륙의 개혁·개방의 자금줄 역할을 맡아 중화경제권의 꿈을 현실화시켜 왔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는 화교사회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가 불안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의 동요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다. 이는 화교의 영향력에 대한 동남아 원주민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 화교가 대처하는 방식은 자신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것을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유수의 즉석면 제조사인 인도네시아의 인도푸드사는 원 소유주가 화교재벌인 사립그룹이었는데, 현재 이 그룹이 홍콩에 설립한 퍼스트퍼시픽과 일본식품회사가 공동설립한 기업이 최대 주주다. 인도푸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외국계 자본으로 변신을 꾀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라고 한다. 이는 사립그룹이 추진 중인 사업매각사업의 일부분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하비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경제정책'에 대한 경제감에 의한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우대하고 화교계가 대부분인 대기업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하르토가 화교 차별 정책을 쓰면서도 화교계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정권을 유지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가장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6월 7일 총선의 결과다.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이 총선의 결과는 화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의 우세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에 이들은 그 동안 자제해 왔던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투쟁민주당·화교당·화교개혁당 등과 같은 여러 화교 정당의 출현이다. 이 정당들은 6월 7일 인도네시아 자유 총선에도 최초로 후보를 40여 명이나 내보냈다. 또,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세력화는 아니지만, 점차 부미푸트라라는 원주민 우대 정책을 노

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발언이 저명한 화교계 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국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화교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무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치를 원주민에게 인식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들 동남아국가들과 비슷한 시기에 경제위기에 처했던 한국의 경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선, 동남아에서 탈출한 화교자본을 비롯한 세계적인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며 경제회생에 이용하고자 적극적으로 화교자본에 대해 손짓을 하고 있다. 이는 인천에 있는 한국 유일의 차이나타운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는데,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많아서 이에 대한 해외화교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3억 달러 가량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고, 10억 달러 이상의 외자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5월 27일 출범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화교경제인협회'이다. 이는 재한화교학자협회·한국산동성향우회·한국화교약사회·중화JC·한국화교한의사협회 등이 모여서 만든 것으로 외국인만으로 이뤄진 비영리사단법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들이 내세운 것은 홍콩·싱가포르·대만·동남아 등의 화교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이들의 한국 내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필요와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의 출범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3월 25일 방일 중에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화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 내 '정주외국인의 참정권 부여'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를 진척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크게 진척되고 있지는 않다.

이상에서와 같이 세계의 화교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자신

**화교세계는 중국국적을 지킨 한 소녀의 일로 고무되기도 했으나 동남아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화교 움직임에 의해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재 이들은 그들의 기반인 경제적 부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그 동안 자제해 왔던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들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도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화교들은 나름대로 이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력에 대한 고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그들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재외한인

미 국  
일 본  
중 국  
독립 국가연합

김용찬  
(고대 대학원)

1999년 6월 현재 해외동포는 모두 564만 명으로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205만 명, 중국 204만 명, 일본 66만 명, 독립국가연합 48만 명, 캐나다에 11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 미 국

미국 내 한인은 1999년 6월 현재 205만 7,500명에 이른다. 이는 1995년에 비해 15.6%, 1997년에 비해 2.8%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65만 4천 명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재미동포는 주로 도시형 거주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한인 중 시민권 소유자가 4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등 많은 한계 때문에 정치체로의 진출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3월 13일 워싱턴에서 '재외동포의 정치적 위상확

들의 정체성에 대한 많은 고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적 부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도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의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화교들은 나름대로 이에 잘 대처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무기인 경제력에 대한 고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그들만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재외한인

미 국  
일 본  
중 국  
독립 국가연합

김용찬  
(고대 대학원)

1999년 6월 현재 해외동포는 모두 564만 명으로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205만 명, 중국 204만 명, 일본 66만 명, 독립국가연합 48만 명, 캐나다에 11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 미 국

미국 내 한인은 1999년 6월 현재 205만 7,500명에 이른다. 이는 1995년에 비해 15.6%, 1997년에 비해 2.8%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65만 4천 명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재미동포는 주로 도시형 거주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등 5개 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미한인 중 시민권 소유자가 4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등 많은 한계 때문에 정치체로의 진출은 미미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3월 13일 워싱턴에서 '재외동포의 정치적 위상확

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은 "유대인이 미국 지도자 그룹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인은 정치무대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재미동포 학생의 민족동질성 찾기 행사의 하나로 3월 25일에는 1,500명이 참가한 '전 미주 한인대학생 총협의회'가 개최되었고 '한민족 바로알기'와 '정체성 찾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편 미국연방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20여 명 가까운 한인 영주권자가 이민법 위반이나 각종 범죄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방 인원의 증가는 개정이민법에서 강제구금 규정이 1998년 10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인은 추방명령에 항소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본

좁은 의미에서 재일동포는 66만 명으로 그중 약 50만여 명이 한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해방 후 일본에 남은 조선인과 그 자손으로 현재도 한국적 또는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재일한인은 국적이 한국 또는 조선이었거나 현재도 그러한 사람과 자기의 혈족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거나 현재도 있는 사람 등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재일동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률개정이 올해 이루어졌으며 참정권 등의 법률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 3월 출입국관리법안을 개정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불법체류자를 신설해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차별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재일동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률개정이 올해 이루어졌으며 참정권 등의 법률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 3월 출입국관리법안을 개정하여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 차별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또 일본에서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문제가 부각되었다. 일본 내에서 외국인 참정권 문제는 재일 영주 외국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일동포 문제로 귀결된다. 일본 정부가 이 법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재일동포의 반응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민단은 지방참정권 확보를 숙원사업으로 삼고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면, 조총련은 참정권을 갖게 되면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민족성을 잃는다는 논리를 펴면서 반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9년 말이나 2000년 초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재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조총련 내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 중 매년 6천 명 정도가 한국적을 취득하거나 일본으로 귀화하고 있으며 한때 4만 명에 육박하던 조총련계 학생수도 1만 6천 명 정도로 줄었으며, 조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해서도 내부 비판이 증폭되고 있다. 1998년 말 도쿄조선중고급학교 문제에 관련해서 개최된 포럼에서 참여자들은 채택한 '요망서-민주주의민족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를 통해 조총련계 학교의 북한정치 중심 교과과정과 각종 생활지도를 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한 관련 내용도 다룰 것을 제의하는 등 기존 민족교육을 비판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대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총련은 이런 제안을 묵살하고 1999년 4월부터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입고 있는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만 실시했다. 이런 조치는 일본인들로부터 폭행이나 따돌림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조총련은 밝혔다.

재일동포의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문부성은 지금까지 국립대학 입학을 사실상 불허해 온 재일동포학교 졸업생에 대해 2001년부터 대입검정시험과 입학시험을 거쳐 국립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중 국

재중동포는 동북 3성에 밀집되어 살고 있는데 길림성에 약 118만

여 명(연변 82만 명), 흑룡강성에 45만 명, 요녕성에 23만 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연변지역의 조선족 인구는 1998년 말 82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32% 감소했다. 이러한 연변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1998년에는 80개 향·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연변지역 재중동포의 인구감소 원인은 조선족의 혼인관 변화, 외국인과의 결혼 등에 기인한다. 도시이주로 농촌지역에 인구가 감소하자 흑룡강성 화천현 성화 조선족향 당 위원회와 정부는 조선족 부부가 두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학비를 면제시켜 주는 특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조선족 사회는 1999년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족 농촌경제는 고리 사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흑룡강 지역의 경안·수화·이춘 등의 경우 50% 가까이 되는 농촌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족은 한국과 북한의 금강산 등지로 진출하고 있다. 연길과 용정의 기업인은 한국경제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조선족 사기 사건의 피해자 천여 명은 1999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한국에 입국해서 연수과정을 거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 1999년에는 금강산 관광지인 북한 온정리에도 조선족 150여 명이 진출했다.

조선족 사회는 1999년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족 농촌경제는 고리 사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흑룡강 지역의 경안·수화·이춘 등의 경우 50% 가까이 되는 농촌가구가 빚을 지고 있으며 학업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 독립국가연합(CIS)

1999년 현재 CIS에는 48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우즈베크 22만 명, 러시아연방 11만 명, 카자흐스탄 11만 명 등으로 대부분 이 세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수로 보면 CIS 내 120여 개 소수민족 가운데 2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한인은 해당 국가의 주력민족에 밀려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한인은 그들의 선조가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 연해주 지역으로 떠났다. 그

이유는 민족 갈등에 의해 중앙아시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연해주가 유엔개발계획과 일본과 한국기업의 진출로 경제 발전의 토대가 형성되고 있는 기인한다. 이주를 하고 있는 한인과 연해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  
신간안내

민족문제와 민족정책을 통해 본 일본정치의 실제 규명

## 일본의 민족문제

조정남 저 / 교양사 / 값 15,000원

**주요 목차** 일본의 민족상황  
일본민족의 형성  
일본민족론의 전개  
재일외국인 정책  
재외일본인 정책  
일본의 민족적 과제  
부록 / 일본인해외이주년표

# 유고슬라비아에서 세르비즘까지

— 세르비아의 민족적 이상 1986~1996

연구논단 1

Alexander Pavkovic / 오창유 역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매우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념과 비전의 경쟁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열띤 논쟁을 통해 전개된 비전과 이념의 다양성은

세르비아계 역사 혹은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어떤 민족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입장의 다양성을 예시하고,

각 입장에 대한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Alexander Pavkovic는 호주의 맥콰이어대학 정치학과 교수이고, 오창유는 고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한 국가로의 남슬라브 민족 통일이라는 관념의 기원은 19세기 초 크로아티아계의 민족적 부활에서 발견되지만, 최근에는 지식인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국가 조직에 대한 비전으로서 유고슬라브주의는 과거 유고슬라비아 민족을 구성하는 여타 민족의 지적 논의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이나,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논의에서는 여전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1993년 헤르체고비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이탈한 후, 유고슬라브주의는 세르비아 지식인에 의해서도 폐기되었다. 이후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지식인의 논의는 거의 '세르비아 민족국가-세르비아주의'라는 개념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속에서 '유고슬라브주의'와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주의'도 매우 다양하고 상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매우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념과 비전의 경쟁이었다. 지난 10년간의 열띤 논쟁을 통해 전개된 비전과 이념의 다양성은 세르비아계 역사

혹은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다른 어떤 민족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 논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입장의 다양성을 예시하고, 각각에 대한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런 목적에서 이 논문은 정치적 영향력과는 무관심한 지식인(작가·학자)의 논쟁에 한정한다. 다양한 학문 영역(창작활동·역사·언어학·정치이론·화학)과 확고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참가자들은 선별된 집단을 형성하였다. 자민족의 민족적 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는 암묵적 가정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이 논쟁에 참여했다. 여타의 많은 학자와 작가는 집단적 목표 혹은 민족적(보편적인 것에 반대되는)·사회적인 목표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논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설사 참여했다 할지라도 단지 유해한 민족주의의 한 유형으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일 뿐이었다. 여기서 '민족의식을 지닌 지식인'이라 함

은,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논쟁에의 참여한 자와 논쟁의 지적인 관객을 의미한다.

논쟁은 주로 계몽적이고 가치 평가적 기능을 결합한 비판적인 에세이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는 과거의 민족적 이상(흔히 다양한 민족 설화와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을 언급함으로써)을 환기시키고, 과거와 (혹은) 현재에서의 그의 실현을 평가한다. 민족적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 그것은 세르비아 민족의 여러 적에 대한 비난과 결합되어 민족적 실패와 약점에 대한 중대한 평가를 제공한다. 이런 평가와 비난은 민족에 대한 권고와 일반적인 충고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문학적 에세이와 세속적인 설교형식을 결합한 비판적 에세이는 1992년 이래 점차 동일한 이슈를 다루는 장문의 언론 대담으로 대체되었다.

### 발단 : 메모렌덤의 초안

세르비아 민족 목표에 대한 현재의 논쟁을 촉발한 것은 비판적인 에세이도 장문의 언론 대담도 아닌 1986년 9월 공산당 통제하에서 언론상에 유포된 세르비아 예술과학 아카데미(the Serb Academy of Arts and Science)의 메모렌덤 초안이다. 1980년 공산당 지도자 티토(Marshal Tito)의 사망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1948년 스탈린 통제하의 공산당 불력으로부터 축출된 이래 최악의 정치·경제

## 1993년 헤르체고비나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이탈한 후, 유고슬라브주의는 세르비아 지식인에 의해서도 폐기되었다. 이후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지식인의 논의는 거의 '세르비아 민족국가-세르비아주의'라는 개념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속에서 '유고슬라브주의'와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주의'도 매우 다양하고 상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적 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각 지역의 공산당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는 6개의 '공화국' 경제로 분리된 유고슬라비아 경제는 체제상의 실패(systematic mismanagement), 서방에의 막대한 채무와 악성 인플레이션에 신음하고 있었다(Lydall).

1981년 가장 빈곤한 지역인 코소보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였다. 2만여 명의 알바니아계는 (헌법상 세르비아공화국의 일부인) 그 지역을 연방공화국 지위로 격상시켜 줄 것과, 그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를 유고슬라비아연방의 구성 민족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1944~1945년간에 그 지역에서 있었던 알바니아계의 군사반란 이후 최대 규모이자 가장 치열한 정치적 저항이었다. 1981년 유고슬라비아 군·경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기는 하였지만, 알바니아계의 정치적 저항은 1980년대 내내 소규모로 계속되었다. 반복적인 관련자 숙청에도 불구하고, 코소보공산당과 알바니아계 지도자들은 계속되는 알바니아계의 정치적 소요와 점증하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인의 이주를 중단시킬 수 없었다. 1985년 세르비아예술

과학아카데미는 계속되는 유고슬라비아 위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메모랜드의 초안 작업을 위해 유명한 세르비아 작가·경제학자·철학자·역사학자·언어학자(이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이었고, 반체제 인사로 간주되었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초안(초안의 최종판은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의 최고위원을 위한 것이었다)의 제1부는 우선 1960년대 초 이래의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광범위하고 통렬한(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맑스주의적) 비판을 제기하였다. '세르비아와 세르비아계 민족의 지위'라는 제목의 제2부는 1960년대 초부터 세르비아 민족이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걸쳐 총체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고(코소보 지역에서의 대량 살육을 포함해서), 다소 모호하게나마 이러한 경향을 중단시키고 반전시키는 데 목표를 맞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산당 인터내셔널(Comintern)이 세르비아계를 '박해자' 민족으로 분류한 데 있으므로(Mihailovic and Krestic), 초안에서는 먼저 '세르비아 민족으로부터 역사적인 범죄자의 낙인을 제거하고', '독자적인 역사적·정신적 존재의식을 회복하고, 자신의 경제적·문화적 이익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세르비아 민족이 본래적인 권리를 지닌 역사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더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1974년의 유고슬라비아공산당 헌법을 부인하였다. 왜냐하면, 당 헌법은 세르비아 민족을 4개의 '국가'와 2개의 '자치주'에 분리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1943년의 공산당이 주도하는 의회(AVNOJ)에서 최초로 선언된 헌법 구조 즉 '통합적인 민주 연방'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였다. 초안이 연방의 형태를 묘사하지는 않으나, 대략 6개의 공화국은 1974년 헌법에서 인정된 주권을 상실하고, 코소보와 보이보디나자치주는 입법상 세르비아공화국에 종속된다. 이러한 좀 더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통해 세르비아계의 완전한 민족·문화적 통합은 더욱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 전역에 걸친 세르비아계를 위해 새롭고, 더욱 중앙집권화된 정치적 조직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대해 초안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내 다른 민족들이 '통합적 연방' 이외의 대안을 선호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세르비아계가 독자적인 대안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므로 초안은 세르비아 민족의 두 가지 목표 즉 세르비아 민족 국가의 형성과 세르비아계의 한 국가로의 통일(1945년 유고슬라비아 공산혁명에 선재하는)이 유고슬라비아연방에 대한 공산당 초기 청사진 속에서도 성취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제일의 목표 '시민적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이를 쟁취한 세르비아 민족의 독자적 국가' 건설은 적어도 부분적이거나 1914년 이전의 세르비아 입헌 군주제에서 달성되었다. 최초의 남슬라브계 국가가 형성되기 전까지 세르비아인들이 거의 한 세기 동안 노력하였던 둘째 목표 '세르비아 민족의 민족적 통일'은 1918년에 이룩되었다. 이들 두 목표가 초안을 통해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로 명확히 인식된 것은 아니지만 1974년의 헌법과 공산당의 여러 정책은 이들 두 개(특별히 두 번째)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되었고, 이들 목표에 심히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모랜드 초안은 유고슬라브주의(Yugoslavism)의 연방주의적 형태('통합적인' 유고슬라비아연방)

와 다소 초보적인 형태의 세르비아주의(Serbism=세르비아계의 한 국가로의 통합)를 모두 옹호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무리 암묵적이고 초보적이라 할지라도, 세르비아주의는 1986년 세르비아와 여타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언론과 공산당 지도자에 의해 민족주의적이고 반

**세르비아주의는 1986년 세르비아와 여타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언론과 공산당 지도자에 의해 민족주의적이고 반동적인 독트린으로 낙인찍혔고,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7년 밀로세비치는 세르비아주의를 거부하는 세르비아 내 공산당 엘리트를 숙청하고 세르비아계를 대상으로 대중 동원에 착수한다.**

동적인 독트린으로 낙인찍혔고,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공개적인 논쟁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1987년 공산당 지도자 밀로세비치(Slobodan Milošević)는 초안의 세르비아주의를 거부하는 세르비아 내 공산당 엘리트를 숙청하고, 1988년에는 메모렌덤의 초안과 매우 유사한 정강 정책을 지지하는 세르비아계를 대상으로 대중 동원에 착수하였다(세르비아 내에서의 일련의 군중집회를 통해). 그가 주장하는 목표는 유고슬라비아(특히, 코소보)에서의 세르비아계에 대한 차별을 중단시키고, 코소보와 보이보디나를 세르비아로 재통합하고 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Cohen) 이러한 언론 캠페인과 군중 집회를 통해 형성된 세르비아 민족 부흥의 분위기 속에서, 세르비아 민족의 목표에 대한 논쟁은 세르비아에서 전례없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밀로세비치 체제는 과거의 티토주의자(Titoist)·공산주의자(communist) 체제의 정통성을 해체시키기 위해 언론 캠페인에 착수하였다; 부분적으로, 과거에 공인된 마르크스주의 독트린 역시도 세르비아계 지식인 저널의 계속되

는 공격을 감내해야 했다. 초기 공산주의 헌법에 규정된 연방주의적 유고슬라브주의(the federalist Yugoslavism)는 억압적인 공산주의 지배의 또 다른 유산으로 인식되었다. 1945년 공산혁명 이후 최초로 세르비아 언론에서 세르비아주의를 옹호하면서, 유고슬라브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다소 유행하기도 하였다.

### 유고슬라비즘 대 세르비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헌법구조에 대한 각 공화국(특히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산당 지배 엘리트 사이의 갈등은 공산당 통제하에 있던 매체들이 '사회주의 자주관리'를 민족주의적 레토릭으로 대체함에 따라 1989년 매우 격화되었다. 이는 1990년 1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대표가 유고슬라비아공산당 대의원회의에서 대표들을 퇴장시키는데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그들의 탈퇴는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을 중앙집중화시키려는 밀로세비치의 시도를 좌절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그때까지 유고슬

라비아 공동국가(common Yugoslav state)에 위임되어 있던 유일한 범유고슬라비아 정치 강제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년 4~5월 시행된 당계 선거를 통해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권력을 장악한 민족주의 정당 연합은 유고슬라비아 공동국가 개념을 거부하였고, 1991년 6월에는 독립선언을 통해 1918년 시작된 남슬라브국가 통합의 실험을 효과적으로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런 실험의 종결이 남슬라브국가의 비전 내지 이상인 유고슬라브주의에 종말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세르비아 지식인 사이에서 이러한 이상은 1992년 구유고슬라비아연방이 붕괴한 후의 일단의 소규모의 취약하고, 상호 적대적인 민족국가가 난립한 상황보다는 더욱 '합리적' (혹은 더욱 매력적)인 국가 청사진이었다. 가령, 1991년 크로아티아에서의 세르비아-크로아티아 군 사이의 전쟁 이후, 1992년 세르비아 작가 Debrica Cosic은 유고슬라비아연방을 민주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며 개방적인 사회(자유 시민을 기초로 하며, 모든 유고슬라비아 민족은 연방 가입·탈퇴의 자유를 포함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는 1945년 공산당에 의해 성립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6개 공화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osic은 주장하기를,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독자적인 기준과 목표에 따라 6개 공화국의 국경을 설정하였기에, 공산주의적 사회질서가 파괴되면서 공화국 국경의 기반 또한 붕괴되었다. 요약하자면, Cosic에 있어 유고슬라비아연방은 (그도 인정하기를 다소 이상주의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세르비아 민족의 역사적 목표-모든 세르비아 민족의 단일 국가로의 통일'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한 바람직한 국가상이다.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라는 견지에서 유고슬라비아 국가

(Yugoslav state)라는 계획을 평가하지만, 그의 연방주의적 유고슬라브주의(federalist Yugoslavism)는 민족적 이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유고슬라비아 민족의 연방에의 자유로운 탈퇴를 인정한다.

대조적으로, 통합주의적 유고슬라브주의(integralist Yugoslavism)는 유고슬라비아 국가를 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들(암묵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인과 보스니아 회교도들도)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민족 국가로 규정한다. 1991년의 유고슬라비아 국가 해체와 그 이전의 공동 유고슬라비아 민족(the common Yugoslav nation)의 해체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악한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유고슬라비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역사학자인 Milorad Ekmečić는 단일 국가로의 남슬라브민족 통일이라는 이상은 언어를 민족정체성의 기초로 간주하는 18세기의 합리주의적인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슬라브민족에 대한 이러한 합리주의적 개념은 세 개의 동등한 변형적 언어를 사용하는 세 부류로 구성되고, 세가지 이름(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을 포용하는 단일민족으로 유고슬라비아인(Yugoslav)을 표현한다.

반면, 언어가 아니라 종교에 의해 민족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합리주의적이고 언어적인 기준 설정에 반대한다. 종교적 개념에 의하면, 적어도 세 부류의 남슬라브민족이 존재한다. 크로아티아인(로마 가톨릭)·세르비아인(동유럽 정교)·슬로베니아인(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이 그들이다. 이런 개념이 1918년 이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1918년 이후에는 소비에트 통제하의 코민테른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에 따라 이 두 국제조직은 1차대전 종



전기에 형성된 유고슬라비아 공동국가(the common Yugoslav state)의 해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세르비아 민족운동의 지도적 이념으로서 합리주의적·통합적인 유고슬라비아라는 관념은, Ekmecic의 관점에서는 진보적이고 해방적인 힘이었다.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 이후, 이런 관념은 해방적인 힘을 상실하였고(그것은 현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이고 불세비키에 감화된 분리주의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패배하였다. 그러나, 1993년 Ekmecic는 서구에서 민족주의 물질이 퇴조함에 따라 합리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데올로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맥락에서 합리주의적 유고슬라비아라는 관념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미래는 결코 편협하고 종교에 기반한 민족주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주의적’ 관념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견을 한 1년 뒤, Ekmecic는 세르비아주의의 다소 비합리주의적인 측면을 옹호하면서 합리주의적 관념을 폐기한다.

Ekmecic와는 대조적으로, 세르비아의 역사학자 Radovan Samardzic는 세르비아 민족의 핵심적인 특징은 제일 대주교 St. Sava(1175~1235)의 가르침에서 요약되는 정교신앙과, 모든 세르비아인이 코소보 평원에서 '위대한 자유와 영광스러운 십자

**연방주의적 유고슬라브주의(federalist Yugoslavism)는 민족적 이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유고슬라비아 민족의 연방에의 자유로운 탈퇴를 인정한다. 대조적으로, 통합주의적 유고슬라브주의(integralist Yugoslavism)는 유고슬라비아 국가를 세르비아인·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들(암묵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인과 보스니아 회교도들)로 구성된 유고슬라비아 민족 국가로 규정한다.**

가'를 위해 투쟁할 것을 호소하는 Lazar왕의 서약에 대한 신봉이라고 주장한다. 코소보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의 패배(1389)에 대한 Lazar왕의 복수는 외국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세르비아 민족의 해방을 상징하게 되었다. Samardzic는 이러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세르비아 민족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예외적인 민족으로 인식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러한 '예외성에 대한 반복적 강조'는 다른 민족의 세르비아 민족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게 되었다(Samardzic).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세르비아계는 전통적인 세르비아 애국주의를 포기하고 유고슬라비아인(Yugoslav) 관념(전체 남슬라브민족의 단일민족으로의 통일)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계는 '본질적 존재성'을 상실하였다.

유명한 세르비아 언어학자 Pavle Ivic는 1918년의 유고슬라비아 건설은 세르비아 민족의 가장 커다란 모험이자 역사적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유고슬라비아 형성기인 1918년 그 지역에는 갈등하고 충돌하는 상이한 민족이 자리하고 있었고, 세르비

아 민족은 유고슬라비아 대신 세르비아 민족이 다수를 점하는 대세르비아를 만들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가능하다면 보스니아 회교도의 영토도 포함하여). 그러나 일단 유고슬라비아가 형성되자 이 국가를 유지하고자 하는 헛된 시도 속에서 공동국가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적대감은 세르비아 민족이 자신들의 주요한 민족적 목표를 상실하게 하고, 그간의 주요한 업적인 의회 민주주의와 명성을 희생시키면서 세르비아 민족을 수세적인 위치로 전락시켰다.(Ivic)

Radovan Samardzic 와 Ivic는 1918년 이전의 세르비아 의회민주제와 입헌 군주정을 세르비아 민족의 가장 위대한 정치적 업적으로 간주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 유고슬라비아인이라는 관념을 커다란 회생을 치른 실패작으로 거부하면서, 이들은 세르비아인이 거주하는 영토를 단일의 세르비아 민족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세르비아 민족의 주요한 민족적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유고슬라비아 대신 세르비아 국가로 세르비아 민족을 통일시키는 것을 주요한 민족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 세르비아 통일주의(Serb unificationism) 혹은 대세르비아주의(broad Serbism)의 표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세르비아 통일주의가 1990년대 초기 이전에는 유고슬라비아주의에 대한 명료한 대안을 제공한 것이었으나, 민족주의적 의식을 지닌 모든 세르비아 지식인이 양자 가운데 하나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소세르비아주의(narrow Serbism)와 '세르비아 제일주의(Serbia first)' 라고 명명될 수 있는 세 번째 관점은 세르비아공화국 거주 세르비아인에게 관련되는 핵심적 세르비아 민족이익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크로아티아 지역의 세르비아인에 관련되는 주변적 세르비아의 민족이익을 구분한

다. 후자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소세르비아주의자는 모든 세르비아인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이 세르비아민족의 주된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Danko Popovic에 의하면, 세르비아의 전통은 자신의 국가 즉 세르비아(Serbia)를 자신의 고향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Knjiga o Milutunu(1985)를 포함한 그의 소설은 이러한 전통의 허구적인 재구성이다.

이 소설에서 그는 세르비아 농촌가족의 역사를 추적한다. 남자들은, 당시의 정부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운명을 가정에 남겨진 아내들이 감내토록 한 채 기꺼이 참전했고 죽어갔다. 세르비아 농민은 국가방위로 인식되는 모든 것을 감수했고 기꺼이 죽었다. 정치적 색깔에 상관없이 세르비아와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세르비아 농민에게 끝없는 고통만 안겨주는 거대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위해 단순한 애국주의를 이용했다. 최초의 정치적 프로젝트는 1918년의 유고슬라비아 건설이었고, 다음이 1941년 3월 27일의 반주축국 군사쿠데타였다. 그의 실패는 주축국에 의한 점령을, 이후 1945년에는 공산당의 공포정치와 독재를 유발하였다.

Popovic의 감동적인 에세이 'Na Moravama'는 1993년 1월, 즉 1992년 4월 미국과 EC가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한 후, 유고연방군과 밀로세비치 정부에 의해 무장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와 신생 독립한 크로아티아에 의해 지원받는 보스니아 회교도·크로아티아계 연합간에 발발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중에 출간되었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부를 세르비아의 통제하에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보스니아 회교도, 크로아티아 동맹의 지도자들은 공화국(세르비아계 거주 부분도 포함하여)의

단결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Popovic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있는 세르비아인을 위해 세르비아에 있는 세르비아인을 이용코자 세르비아 정치인과 관리들에 의해 고안되고 세르비아의 일반 대중이 유인당하고 있는 또 다

른 거대하고 자멸적인 프로젝트를 폭로하려고 한다. 이들 정치인과 관료들은 Tito 집권 동안-Tito의 공산당 집권기구의 한 성원으로서-고향과 그곳에 남겨진 세르비아인을 버려둔 채, 세르비아로 와서 세르비아인을 탄압해 왔다. 바로 그들이 1992년에는 자신들이 억압해 온 세르비아 내의 세르비아인에게 크로아티아인과 회교도로부터 자기들이 방기한 고향을 해방시킬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Popovic는 이것은 자기의 목적이 아닌 것을 위해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세르비아 출신 세르비아인에게 가해지는 일련의 자멸이라고 주장한다. 세르비아인은 그것에 주목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영적인 쇠신과 자신들의 유일한 조국(세르비아)의 보위와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세르비아인들은 아직도 1~2차 세계대전의 장대한 (그러나 실패한) 계획에 의한 엄청난 인명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되지 못했다. 전후 승리의 환희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세르비아인은 무시되었다. 그들의 택지와 부, 정신적·물질적 삶의 질은 모두 무시되었다.

## 소세르비아주의(narrow Serbism)와 '세르비아 제일주의(Serbia first)'라고 명명될 수 있는 세 번째 관점은 세르비아공화국

거주 세르비아인에게 관련되는 핵심적 세르비아 민족이익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그리고 크로아티아 지역의 세르비아인에 관련되는 주변적 세르비아의 민족이익을 구분한다. 후자의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소세르비아주의자는 모든 세르비아인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이 세르비아민족의 주된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소세르비즘 대 세르비아 통합주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투를 중단시키려는 EC의 노력이 실패함에 따라, 1992년 3월 유엔 안보리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에 대한 원조를 중단시키기 위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제재 조치와 EC-UN의 지속적인 평화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전쟁은 미국 정부에 의해 무장되고, 퇴역 미군 장교들에 의해 훈련받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회교군이 서부 보스니아의 광범한 영역을 재탈환 한 1995년 9월까지 계속되었다. 보스니아 전쟁에서 NATO 공군과 지상의 포병대는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군사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합동작전으로 인해, 크로아티아와 서부 보스니아로부터 45만여 명의 세르비아인이 탈출했고,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의 지도자들은 1995년 11월 오하이오주 데이턴(Dayton)에서 미국 정부의 평화협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화협정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두 개

의 자주독립체(세르비아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연방(보스니아 회교도와 크로아티아인))을 형성하였고, 국경은 1995년 9월의 전선을 반영한 것이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앙정부는 세 민족(보스니아(1993년 말 보스니아 회교도를 지칭하기 위해 채택한 공식명칭)·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보스니아 세르비아인)으로 구성되었다. 권력은 제한되었고, 공동방위나 법률의 집행권은 보유하지 않았다.

Popovic의 1993년 에세이가 명백히 유엔 제재에 의해 세르비아에 부과된 고립과 고통의 분위기를 반영하지만, 1995년 데이턴 평화 협정 이후, 1996년 2월에 있는 그의 인터뷰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회교도와 크로아티아계 군대에 대한 세르비아계의 모욕적인 패배를 반영하고 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세르비아 영토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프로그램은 1995년의 서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로부터 세르비아인의 대탈출과 함께 완전히 와해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르비아 내의 일반 여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가 보기에 '세르비아 내의 일반 여론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옹호하고 있었고, 실패를 너무도 쉽게 극복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대중의 변덕스러움 또한 세르비아인의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주요 정치인과 세르비아 민족의 통일을 주장하는 지식인들—민족의 아버지(빈정대는 말투로)—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인도 처절한 '세르비아 민족정신'의 패배를 가져온 대표자와 지도자를 선택한 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즉,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거주지역은 미래에 고국 세르비아와 통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르비아왕국의 총리대신 Nikola Pasic의 실용적인

정책을 모방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환경의 도래를 기다려야 한다. 세르비아 민족의 통일에 대한 Popovic의 실용적인 접근은 그가 단지 무분별하게 세르비아 외부의 세르비아인을 위해 세르비아를 회생시키는 세르비아 민족 통일의 프로그램을 거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의 장기간 전쟁이 Popovic의 '세르비아 제일주의' 접근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인 Ekmecic는 미래국가의 청사진으로 유고슬라브주의를 포기하였다. '내전 결과, 유고슬라비아 민족의 통일성의 기초는 파괴되었다. 공동 국가에서의 삶의 가능성은 적어도 단기기간에는 소멸된 것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브주의를 포기하면서도 Ekmecic는 여전히 Popovic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한 세르비아의 독자적 이익은 무시하였다; 1993년 이후 Ekmecic의 세르비아주의는 모든 세르비아인의 이익을 단일 국가 내에서의 세르비아인의 통일이라는 필요성에 종속시켰다. 그의 세르비아주의의 주요 특징은 한 국가로 연합하려는 세르비아인의 의지와 이러한 명분의 집착은 결과적으로 (반드시 조만간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통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신념이다. 이러한 집단적인 정치적 의지의 존재에 대한 낭만적인 신념과 집착 때문에, 그것을 낭만적 통일주의(Romantic unificationism)라고 칭하고자 한다. 여타의 낭만주의적인 19세기의 통일론적 시각과 마찬가지로, 세르비아 민족의 낭만적 통일주의는 민족적 의지를 표현하고, 분열된 민족을 결합시키려는 민족의 중심과 '보금자리'의 존재를 가정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이러한 중심은 세르비아왕국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시인 Gojko Djogo가 표현하듯이, 세르비아인의 어머

##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의 역사적 경험은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의 존재와 유지가 단지 민족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역사적 공간 속에서 그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동일국가에 잔류코자 하는, 다시 말해 한 국가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적 단일성을 위해 투쟁코자 하는 결정 속에 있다.**

니이자 보금자리로서의 세르비아에 대한 신념은 1994년에는 거의 신화적인 것이 되었다.

이 전쟁(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 1992~1994)은 서부 세르비아인에 의해 수행되었고, 승리하였다. 그들은 전 세르비아왕국을 위해 전쟁을 치렀다. 가족과 재산, 성스러운 목

적과 묘지, 정교적 신앙과 위대한 세르비아를 위해. 그들에게 있어 세르비아는 단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Serb Krajinas와 헤르체고비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르비아는 은유적 표현이다. 이런 이상향은 수세기 동안 맹목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세르비아는 보금자리이자 위대한 모성이다. 그들은 항상 '한 방울의 젖을 위해 한 방울의 피'를 주고 있다. 이렇듯 모성을 향해 영원히 손을 뻗고 있는 서부 세르비아인에게는 고아의 사랑과 유사한 무언가가 있다. 어머니를 가진 자는 결코 이러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Sumadija(세르비아의 중심부) 출신은 결코 세르비아가 무언지 이해하지 못한다.

낭만적 통일주의 지지자들 모두가 이러한 이상의 모국 관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단합하려는 세르비아인의 의지를 영웅적으로 고수함으로써 인해 성취되는 통합된 세르비아 국가의 비전을 공유한다; 통일은 '역사적 인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Ekmecic보다 젊은 일부의 자유주의적 정치이론가들은 세르비아 통일을 '민족적 의지'와 '역사적 인내'의 문제로 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통일주의(Liberal unificationism)라고 칭한 관점에서는, 세르비아인의 통일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르비아인의 '내·외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자유의 쟁취가 세르비아인의 주요한 민족적 목표인 반면에, 단일국가로의 통일은 이런 자유를 쟁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의 역사적 경험(20세기)은 문화적·종교적 정체성의 존재와 유지가 단지 민족국가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역사적 공간 속에서 그 존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동일국가에 잔류코자 하는, 다시 말해 한 국가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적 단일성을 위해 투쟁코자 하는 결정 속에 있다.

'외적 자유'는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의 성취는 19~20세기 많은 유럽 민족의 주요한 민족적 목표였다. 서유럽 민족은 19세기 말엽 이를 성취했다. 그러나 Kosta Cavoski는 구유고슬라비아 전역에 산재한 세르비아 민족에게, 이것은 여전히 주요하고도 성취되지 않은 민족적 이상이라

고 주장했다(1995: 273).

‘내적 자유’는 민주적인 다당제 선거, 언론과 출판의 자유, 독재로부터의 해방 등을 포함한 법적으로 보장되고 강제되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로 구성된다. Cavoski에 있어 이런 내적 자유는 세르비아 역사에서 1903~1914의 Peter I Karadjordjevic 집권 시 단기간만 보장되고 운영되었다(1995 : 272). 그에게 있어 밀로세비치의 독재는 동유럽 공산주의 붕괴 이후 세르비아가 내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이다(Cavoski). Slobodan Samardzic에 따르면, 정치적 통일의 주요한 내적 장애는 순수한 대중적 합의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정치적) 게임의 규칙 부재이다. 이는 밀로세비치 체제의 ‘국민투표제 독재정치(plebiscitary Caesarism)’의 결과이다. 이 체제는 민족적 통일의 전략에 대한 순수 대중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야당은 그러한 정치권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밀로세비치 체제는 세르비아(공화국) 외부의 세르비아인은 운명의 처분에 맡겨둔 채, 민족통일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해매고 있었다.

외적 자유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다당제 체계와 의회지배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적 수단에 의한 합의가 이룩될 것이다(가령, 통합된 세르비아 영토에서 제헌의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헌법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은 세르비아인이 내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실패한다면 외적 자유 즉 세르비아 민족 국가를 통한 외국 지배로부터의 해방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통일주의는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 제도와 민족적 통일간의 필연적 연관성을 가정하는 세르비아인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유일한 현대적 접근이다.

세르비아 통일주의와 소세르비아주의의 두 변형에 더하여, 우리가 문화적 통합주의(Cultural integrationism)라고 부르는 네 번째 접근법이 1990년대 중반에 세르비아주의의 틀 내에서 등장했다. 이런 관점은 1995년 Dobrica Cosic의 인터뷰에서 정교화되었다. 그는 초기의 유고슬라브주의를 포기하고 세르비아 통일주의를 채택했다고 선언했다. “왜냐하면, 크로아티아인·슬로베니아인·마케도니아인·회교도는 가장 설득력있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그들이 세르비아인과 한 국가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고, 마침내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Nikolic 1995 : 257) ‘최종적인 증거’는 바로 1992~1995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기간 동안 세르비아인에 대항한 보스니아 회교도와 크로아티아계의 동맹이다. 인터뷰에서 Cosic은 그의 세르비아 통일주의를 불리한 환경하에서 세르비아인의 정치적 통일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의 보존이라는 세르비아인의 일차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유고슬라비아의 건설과 더불어 (세르비아인의) 민족적 통일성의 기초는 파괴되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전체가 세르비아 민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국가의 창조에서 구원을 발견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모두가 세르비아인은 아닐지라도, 세르비아민족이 다수파인 지역에서는, 그러한 국가를 위해 투쟁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일부의 세르비아민족을 위해 대안적인 국가와 정치형태를 제공해야만 했다. 이런 대안적 형태 속에서 세르비아민족의 정체성과 전체에 대한 소속감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각각의 개별적인 해법을 가진 민족정책을 옹호해 왔다.”(Nikolic 1995: 261)

이런 ‘역사적 타협의 정책’에 따르면, 만약 국제

적 요소가 세르비아민족이 다수를 점하는 구유고슬라비아 지역을 통합한 국가 건설을 방해한다면, 적어도 세르비아 민족 국가 외부에 남아 있는 세르비아인이 세르비아민족에의 소속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얼마간의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문화적 통합주의는 여하튼 통일주의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정치적 통일이 성취될 수 없는 환경하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의 보존이 우선한다. 자유주의적 통일주의는 세르비아인이 외국에서는 기본적인 '내적'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획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런 시각을 거부한다. 자유주의적 통일주의론자에게 있어 민족정체성의 보존은 결코 내·외적 자유의 성취에 대한 대안일 수 없다. 게다가 Slobodan Samardzic 같은 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말에 외국에서 민족적 정체성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가 말했듯이(Samardzic 1995 : 246), 왜 독일인들은 1990년에 '고전적인 국가 건설의 방식'으로 통일해야 했고, 반면 세르비아민족과 같은 소규모 민족은 (외국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 식으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유지라는 덜 고전적이고, 오히려 더욱 '포스트 모던' 한 방식으로 실험해야만 하는가? 그는 1990년 독일인은 단지 모든 서구의 민주주의적 민족에게 있어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민족국가 패러다임을 추종했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인이 이러한 패러다임을 따르지 말아야 할

**세르비아 통일주의와 소세르비아주의의 두 변형에 대하여, 우리가 문화적 통합주의(Cultural integrationism)라고 부르는 네 번째 접근법이 1990년대 중반에 세르비아주의의 틀 내에서 등장했다. 문화적 통합주의에 따르면, 정치적 통일이 성취될 수 없는 환경하에서는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대한 얼마간의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

어떠한 이유도 없다.

공개적으로 유고슬라비아주의를 포기하기 전에도 1993년 Cosic은 세르비아계의 정치적·경제적 재건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애의 하나로서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정치적 소요를 지적했다. "코소보는 세르비아를 경제적으로 피폐화시키고, 발전을 제약하며, 인구 팽창을 통해 영토에 위협을 가할 악성 종양이 되었다."(Nikolic 1995) 그가 선호하는 해결책은 알바니아계 지배하의 코소보 일부 지역을 세르비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1996년 세르비아예술 과학아카데미 의장 Alexander Despic도 아카데미의 연차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일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 있다. 하나는 새로운 분리 이탈리아의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는 세르비아의 영토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르비아 영토의 일부 분리를 통해 독립국가를 건설코자 하는 알바니아계의 열망을 수용하는 것이다."(TANJUG : 1996)

세르비아에서 알바니아계가 정치권력을 탈취할 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 Despic이 두 번째 입장 즉 코소보의 분리를 옹호했음은 그의 연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996년 출간된 짤막한 에세이에서 Despic은 이미 “코소보지역에서의 인구팽창이 세르비아 민족 통일을 위한 투쟁을 통해 연개 될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족이 태고적부터 살아온 영토(코소보·메토히야로부터 Drina강을 건너 Una강과 Velebit 강까지)를 보존코자 하는 투쟁은 오늘날 비극적이고 유혈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투쟁의 결과는(세르비아에서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의해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다.”(Saratlic 1996 : 85)

이런 인구감소의 결과, 20~30년이 지나면 세르비아에서 세르비아민족이 소수로 전락하고 ‘소수과 권리’를 위해 자국 영토 내에서 투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다. 알바니아계에 유리한 인구변동은 세르비아 정치권력의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와 정부는 ‘인구의 민족적 구조’를 반영한다. Despic은 ‘인구 통계적 문제가 세르비아 민족 제일의 실존 문제’라고 결론지었다.(Saratlic 1996: 86) 이렇게 평가하면서, Despic은 명백히 소세르비아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통일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세르비아 내에서 세르비아민족이 다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조국에 대한 세르비아민족의 전통적인 충성심에 호소하는 Popovic의 소세르비아주의와는 달리 이런 형태의 소세르비아주의는 현존하는 세르비아 민족 국가를 유지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자기이익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적 통일주의와 소세르비아주의가 조울할 수 있는 기반이다. 코소보 알바니아계의 분리주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은 세르비아 민족의 내·외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고, 또한 자유주의적 아젠다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 왜 다른가?

민족주의 담론의 전형적인 주제들—외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문화적 통합·정치적 통일·도덕적 정신적 재건(순수한 민족적 가치의 회복)·개인 자유의 획득—은 포괄적인 민족적 비전과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논의의 초점이다. 1987년 Nova Revja에서 논의된 슬로베니아 민족 프로그램—어느 정도 세르비아 메모랜드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을 지닌—은 위의 주제 모두를 포괄하면서도 주로 민족적 독립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민족 프로그램의 예를 제공하고 있다.(Pavkovic : 1997) 이 경우, 다양한 시각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은 정치적인 정향(가령, 보수적인 시각 대 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발견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민족적 목표(문화적·정치적 통일과 독립 등)에 대해 공공연히 이론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최근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논쟁에서는 위의 주제 각각이 세르비아민족의 바람직한 목표의 명확한 이상과 비전이라는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어떠한 입장도 위의 주제를 포괄적인 하나의 민족 목표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의 문학 작품과 논문에서 광의의 민족 목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던 Cosic과 Popovic 같은 작가들조차도 ‘회복’할 필요가 있는 민족적 가치와 민족적 목표에 대해 상충되는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이상에 대한 명백한 ‘분화’



민족정체성 문제는 민족 목표와 가치의  
개념화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민족정체성 문제에 대한 합의의

부재는 광범위한 관련 이슈에 대한 합의를 저해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고슬라비아주의의 지속은 세르비아  
역사의 중세 혹은 왕당파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세르비아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즉 비역사적이고 비종교적인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는 논쟁에 참가하고 있는 각자의 개성과 지적·정치적 전통의 다양성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이는 해소되지 않은 근본적인 논점의 지속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민족적 목표의 개념화를 저해하는 각 주장의 영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

인 논점들 가운데 하나(세르비아계의 민족적 정체성의 본질과 근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듯하다. 과거 유고슬라비아주의자들은 일관되게 세르비아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종교적·역사적인 정의는 '퇴행적' 혹은 '비합리적'인 것으로서 거부하였고, 세르비아 통일주의와 소세르비아주의자들(가령, Radovan Samaržić와 Danko Popović)은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정체성을 세르비아계의 종교적 유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중세, 후기 왕당파적) 업적의 관점에서 정의했다. 민족정체성 문제는 민족 목표와 가치의 개념화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므로, 민족정체성 문제에 대한 합의의 부재는 광범위한 관련 이슈에 대한 합의를 저해한다.

이런 맥락에서 유고슬라비아주의의 지속은 세르비아 역사의 중세 혹은 왕당파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하지 않는, 세르비아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근대적' 즉 비역사적이고 비종교적인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음의 이상주의적 주장의 형태가 더욱 적절할 것으로 증명되었다. 먼저 이상적인 사회 혹은 헌법구조가

형성된다(흔히, 개인이나 집단의 현재적 필요나 관심과는 무관하게). 다음으로, 모든 기타의 개념은 제안된 이상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각하된다. 그 경우의 이상은 진보와(혹은) 사회적 평등에 대한 신념을 공언하는 추상적·비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추출된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 횡행한 여러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유래한 이러한 형태의 주장은 그 의도와 효과에 있어 매우 배타주의적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의 시각과 공존할 수 없는 민족적 목표와 가치(가령, 가부장적이고 왕당파적인 세르비아의 그것들) 배제에 목적을 둔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목표와 가치의 배제는 물론 마르크스주의의 유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원래의 형태상 일단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생활양식에 기반한 소세르비아주의 또한 민족과 국가를 확장된 가족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접근법은 이따금 명백히 비의도적으로 반 집단주의적이고, 자유주의와 같은 근대적 가치와 목표를 배제한다. 그러므로, 세르비아계의 민족적 목표에

대한 거부장적이고 유토피아적·마르크스주의적 접근법은 개인주의적 가치와 민족적 목표에 대한 자유주의적 개념을 배제한다. 세르비아 민족 해방의 프로젝트로서, 세르비아 민족의 정치적 통일이라는 이상 또한 민족적 목표에 대한 배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개념을 지지했다.

민족 목표에 대한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 가운데서도 세르비아계의 정치적 통일과 문화적 통합이 외국의 지배에 항거하고, 외국의 압제로부터 민족적 해방을 성취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일관되게 정당화되어 왔다. 이는 과거에 외국의 종속으로부터 민족 해방을 이룩하는 사상이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1945~1991년 사이, 외국의 압제자는 주로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비세르비아계 공산당 집권자들(Tito와 Edvard Kardelj 같은)이었다. 반면, 1991년 이후에는 신생국가의 지배 민족 집단(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 회교계)과 그들을 지원하는 외세를 포함하게 되었다. 1991년 구유고슬라비아의 해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EU 국가들과 미국 정부는 세르비아공화국 외부의 세르비아계와 세르비아공화국의 정치적 통일을 유발할 수도 있는 모든 계획들을 부정하고, 여러 신생 독립국가들에서의 세르비아 민족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제안들을 지지하지 않았다. 세르비아 통일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외세의 반대는 세르비아 민족의 정치적 통일과 문화적 통합이 세르비아 민족 정복이라는 외세의 계획을 위협하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모든 세르비아 통일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으로 통합된 세르비아 민족이 외국의 지배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어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세르비아 민족의 정치적 통일이라는 이상에 대한 외국의 반대는 단지 민족 해방의 적격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으며, 외국 지배로부터의

민족적 해방이라는 집단주의적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였다.

1991년 민족주의적 의식을 지닌 많은 세르비아계 지식인에게 있어 제일의 목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민족집단의 보위였다. 여타의 비집단주의적 목표들(예를 들어, 시민적·정치적 자유)은 외국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기다려야 했다. 게다가, 세르비아 민족의 통일 혹은 문화적 통합에 반대하는 외국정부가 자유 민주주의였으므로, 이들이 호소하는 자유주의적 이상은 세르비아민족의 목표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없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단지 일단의 젊고 확신에 찬 자유주의자들만이 정치적 통일과 개인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함을 통해서 이러한 시각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외국의 압제뿐만 아니라 자국의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로부터 세르비아 민족의 해방을 성취하기 위해 대담한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통일주의라고 명명된 이러한 계획들은 미리 결정된 역사적 목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이상에 기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르비아민족의 정치적 통일의 역사적 목표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민족해방 프로그램으로서 그것의 호소력이 감퇴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세르비아민족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침해(예 : 세르비아민족에 가해진 생활 터전으로부터의 추방)를 묵과하는 구유고슬라비아의 모든 국경과 평화협정은 자유주의적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파기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암시하는 바는 최소한 세르비아민족의 정치적 통일의 부재 속에서 민족 목표에 대한 논쟁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신개입주의의 향방

The New Interventionism : The Search for a Just International Law

연구논단 2

Michael J. Glennon / 편집부 역

UN헌장 아래서의 반개입주의적 기준과 같이,  
새로운 레짐도 역시 현재의 파워의 동학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1945년 UN헌장이 진정으로 법에 근거한 글로벌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스템 구축 시도 역시 틀림없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Michael J. Glennon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교 법과대학 교수로, 이 글은 그가 『Foreign Affairs』(1999.5.-6.)에 기고한 것이다.

20세기 말이 가까워 오며 따라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분쟁)에 어느 단계에서 간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제적인 합의가 약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지도 않은채 국내분쟁에 대한 국제적 개입에 대해 UN헌장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제약을 보기 좋게 없애버렸다. 구미제국은 이에 대신하여 군사개입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는 크게 관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 시스템에는 확고한 룰은 거의 없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려깊은 배려와 사전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동을 일으킨 후의 구미제국에 의한 합리화의 산물이다.

물론 과거의 평화유지, 평화창조(구축) 활동에 관한 룰 아래서, 피비린내나는 분쟁의 대부분이 '국내 문제'로서 무시돼 왔기 때문에 그 룰의 종언을 개탄할 필요는 없다. 냉전 후의 사태 전개는 과거의 반개입주의가 작금의 정의의 이념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부각했다.

코소보 위기는 이런 반개입주의와 정의의 이념간의 모순만이 아니라, 국제법 등에 관계없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실행한다고 하는 미국의 새로운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고의 코소보자치주에서의 민족청소 공포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매스컴이 취급하고 있었다. 슬로보단 밀로세비치가 코소보 문제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세를 취하자, UN헌장의 규정에서 벗어나는가 아닌가와 관계없이 세르비아(유고)에 대한 무력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구미제국에 의한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이 행동이 폭넓은 지지를 얻은 것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UN헌장을 주축으로 하는) 구레짐의 룰에 따르면 이 행동은 불법이었다. 코소보는 여전히 유고슬라비아라는 주권국가의 일부이며, UN헌장이 국제적 군사개입을 인정하는 조건의 하나인 국경을 넘은 공격도 아니고,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NATO에 무력행사의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코소보에의 대응을 둘러싸고 정의의 이념—적어도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과(내정간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UN헌장의 이념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반개입주의 레짐 포기 의 손익제산서

UN헌장은 선진국이 현재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국내분쟁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UN헌장이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낡은 시대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전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위협은 국가간의 무력충돌에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타당한 견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냉전에 의한 양국간의 경직된 대립상황,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UN헌장이 규정하는 구 틀에서는 아프카니스탄이나 베트남 같은(내전에 파생하는) 국가간 무력충돌을 저지할 수 없었다.

과거의 반개입주의 레짐을 방기함으로써 생기는 댓가를,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레짐이 보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현시점에서는 분명하지 않다. 막연하고 정비되어 있지 못한데다 상황적인 일련의 방침이나 원칙으로 기존의 레짐에 대체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 또 충분히 시도되지 않은 물을 운용한다면,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줄속으로 처리된 새로운 물은 사람들의 반발을 살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구레짐이 기능하지 못한 결과 비참한 결말이 결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레짐의 시도로 잃을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싸움에 나가는 장수들이 가끔 최후에 싸운 전쟁의 경험을 근거로 다음 전쟁에 임하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UN헌장의 입안자들도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을 설계할 때 제2차대전에서 이르게 한 위기만을 중시하여, 장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 세대에 걸쳐 무력행사를 통제하는 것을 위해 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왔던 것이다. 헌장의 기초자들은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주권을 가지는 것을 인식,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한편 안보리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 한해, 그것도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의해(평화와 안전이) 위협될 경우라는 아주 한정된 상황에 한해 '비방위적'(nondefensive)인 무력행사를 인정하려 했다.

이런 기초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UN헌장이 금지한 행동은 1939년 독일에 의한 폴란드침공을 염두에 둔 국가간 침략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1945년의 시점에서 국가간 분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음이 분명이다. 그러나 현재 빈발하고 있는 문제는 이와는 달리 국내폭력 내지 국내분쟁으로, 기존의 UN헌장에서는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는 민간의 학살을 없애기 위해 아이티·소말리아·르완다 내전에 개입했으나, 그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들의 개입은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는 않았으나, 그것에 대한 용인 결의는 UN헌장이 정한 제약 그리고 내전과 국내불안을 사실상 무시해 왔던 40년을 넘는 그때까지의 UN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것이었다. UN헌장은 국내분쟁이나 폭력은 '국내의 사법관할권'의 문제며, 공식적인 국제적인 우려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9년 현재, 국경을 초월한 폭력은 국가가 배후

가 된 테러리즘이라는  
 형태로 계속되고 있으나  
 UN헌장은 이러한 형태  
 의 폭력을 상정하고 있  
 지 않다. 1988년에 스코  
 틀랜드의 로카비 상공에  
 서 일어난 펜암103편의  
 폭탄테러의 범인으로 고  
 소되고 있는 두 사람의  
 리비아인은 희생자 유족  
 의 노력과 UN의 제제에  
 도 여전히 공정한 재판

장에 서 있지 못하다. 1976년 당시 범인에게 암살  
 명령을 내린 칠레 (피노체토 정권의) 정보기관의 장  
 관은 1995년 칠레 국내에서 투옥되었으나,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이며, 실제 UN  
 은 이 사이에 칠레에 대한 제제조치를 한번도 발동  
 하지 않았다.

UN헌장이 국가간 분쟁 억제에 실제로 효과를 발  
 휘한다면, 오직 국가간 분쟁을 중시하는 UN헌장의  
 시대착오적인 성격도 그 나름대로 용인될지도 모르  
 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소련의 형  
 가리·체코슬로바키아·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개입  
 과, 미국의 도미니카공화국·그라나다·파나마·니  
 카라과에 대한 개입을 앞두고도 UN헌장이 국제적  
 대응을 위한 노력을 환기한 일은 없었다. 동티모르  
 에 대한 인도네시아, 티벳에 대한 중국, 포클랜드에  
 대한 아르헨티나, 그리고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의  
 군사침공도 같았으며, 1945년 이후 일어난 무수한  
 국경을 넘는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UN헌장은 전혀  
 무력했다. 실제 외교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지  
 금까지 국제분쟁이 UN에 의해 종식된 예를 아직

**UN헌장이 국가간 분쟁 억제에 실제로 효과를  
 발휘한다면, 오직 국가간 분쟁을 중시하는  
 UN헌장의 시대착오적인 성격도 그 나름대로  
 용인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둘러싸고 UN이 무력했던 것은 대개의 경우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남용했기 때문  
 이다. 본래 단독국가의 권력에 대한 견제조치로도  
 입된 거부권은 점차 큰 힘을 가진 나라로부터 국력  
 이 약한 나라에 권력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화했다.  
 또 소련 붕괴 이후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서의  
 컨센서스를 확보할 필요성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러시아·중국 등에 대해 그들의 경제력이  
 나 군사력에 걸맞지 않는 강력한 외교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예컨대 작년 미국이 이라크의 잘못된 행동  
 을 견제하려고 무력행사를 시사했을 때, 프랑스·러  
 시아·중국은 자국의 외교이익 때문에 거부권을 행  
 사하여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저지시켰다. 결국  
 UN헌장은 미국이나 그밖의 나라들의 전력보다는  
 냉전 이후의 단극 세계를 다극화시키는 것을 의도하  
 는 프랑스·러시아·중국의 전략 목표에 확실히 유  
 리하게 기능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UN헌장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레  
 짐이 포함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검증, NATO가

그들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룰이 현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혐의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현행 UN헌장을 기반으로 하는 레짐이 이미 무용지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개선하는 쪽이 확실히 간단하다. 그러나 법에 도전하는 것과, 법의 지배에 도전하는 것은 같은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NATO가 UN헌장에 대하여 하는 것 같이) 정반대다. 부적당한 법에 대한 도전은 법 레짐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잘라 말하면, 법에 따르는 것처럼 하기보다 법을 공공연히 파괴하는 것이 피해가 적다. 눈에 띄지 않게 교활하게 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통용되면, 법 개혁과 법의 정당성이 의존하는 본질 부분을 둘러싼 개방적인 논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의 반개입주의 레짐을 포기하는 데 따른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억제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 새로운 레짐의 채택에 의해 얻어진 이익이란 무엇일까. 새로운 레짐의 윤곽이 지금까지는 불명확할 뿐 아니라, 새로운 레짐의 도입에 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나, 일반적 분석은 가능하다.

개입에 적극적인 구미제국의 새로운 룰은 나라의 대소를 묻지 않고 법 아래서 주권국가는 평등하다는 전래의 사상에 커다란 변화를 결파시키지는 않는다. 물론, 새로운 룰은 이런 관념의 공허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파위나 부 그리고 인권이나 평화에의 개입에 관한 국가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UN헌장이 빠뜨리고 있는 다른 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 안정

과 번영에 의해, 지금은 국내분쟁이 국제분쟁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각 국가가 국내 질서에 관해서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으나, 새로운 레짐 아래서는 (대량 학살과 같은) 불개입에 따른 인도적 손실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개입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커다란 차이이다. 물론 새로운 레짐 아래서도 어떤 나라의 정치 경제철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국제법의 이름으로 상대국 정부의 전복을 의도하여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는 (새로운 시스템의 다른 세부 내용과 같이) 아직 불명확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일국에 의한 단독개입보다도 복수 나라에 의한 개입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안정책 내지 보장이 되고 있다. 다국간의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국의 추구라는 요소가 제외돼, 특정한 나라가 국제개입을 둘러싸고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레짐은 진정한 의미에서 법의 지배와는 제대로 합치되지 않는다. UN헌장 아래서의 반개입주의적 기준과 같이, 새로운 레짐도 역시 현재의 파위의 동학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1945년 UN헌장이 진정으로 법에 근거한 글로벌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스템 구축 시도도 거의 틀림없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각 국가는 여전히 (국제적인) 권력의 집중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당연하다. 합법적으로 집중된 강제력을 제공하는 통일 시스템이 가져온 리스크는 강제력의 메커니즘을 결여한 시스템이 수반한 리스크보다도 여전히 크다. 대국에 의한 파위의 남용이나, 레

집이 옹호해야 할 가치를 손상시킬 것 같은 강제력의 행사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아직 고안되지 못했고, 그러한 안전장치가 고안될때까지는 법에 근거한 글로벌한 통치는 꿈 속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로운 레짐의 형성과 더불어 정

의가 실현될 것인가. 새로운 개입주의적 레짐이 발족의 시점에서 합법적이 아니라고 해서, 보다 광범한 정의의 달성이 꿈 속의 이야기로만 계속될 필요는 없다. 국제적 정의는 완전하게 기능하고 있는 합법적 레짐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국과 NATO가 최근에 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 세력 균형과 통합 모델의 한계 극복의 과제

NATO의 개입에 의해 코소보에서의 민족청소로부터 구제된 어린이들은 그러한 개입이 (시간이 걸리는) 공적 시스템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긴급대처에 의해 살아남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레짐이 정착, 확립된 때에는 그러한 개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고려를 태만히 하면 정의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위협하게 하는 개입주의 레짐이 해체될 위험이 있다.

**UN헌장 아래서의 반개입주의적 기준과 같이, 새로운 레짐도 역시 현재의 파워의 동학을 반영한 것일 것이다. 1945년 UN헌장이 진정으로 법에 근거한 글로벌한 시스템을 형성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오늘날에 있어서의 글로벌 시스템 구축 시도 역시 틀림없이 실패로 끝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일련의 시스템 체크적인 장기적 영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다. 개입이 시야에 들어왔을 단계에서 집단적이며 포괄적인 재검토를 행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국경을 넘은 폭력의 격화에 대해서 재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느 정치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문제는 '(글로벌한) 문제에 대해 집단적이고 정식으로 통합된 어프로치 쪽이 문제를 하나씩 잠정적이고 단독적으로 경우에 따라 대처하는 것보다 적절한 것인가' 라는 명제로 환원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이라크와 코소보나 그 이전의 위기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입, 문제를 해결해 온 미국과 NATO는 후자를 지지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잠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접근의 선례는 많다. 30년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1648년의 웨스트팔렌 조약에서는 국가주권과 근대국가 시스템의 개념이 (조약이라는 형태로) 법제화되었다. 이 조약의 기초자들은 세력균형이 안정된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한다는 신념에 근거, 평등한 주권을 가진 독립된 국가

간 혹은 복수의 국가로 구성되는 그룹 사이의 세력 균형을 도모하려 했다. 나폴레옹전쟁 후인 1815년 열린 빈회의는 내셔널리즘과 리버럴리즘이 관리 가능한 조류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 후 40년 계속된 세력균형의 재구축에 성공했다.

그러나 아테네가 기원전 476년 (페르시아의 공격에 대비하여) 테로스동맹을 구축한 이래, 인류는 분쟁이 생겨난 이후뿐 아니라 그 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려고 노력해 왔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초국가적 강제력을 가진 국제기구에 개별 국가가 참가하는 것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복수의 국가주권을 어떻게 교묘하게 조합하더라도, 세력균형은 반드시 붕괴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 되었기 때문이며, 지금은 보다 나은 그 무엇인가가 필요시되고 있다.

1919년의 베르사이유조약은 세력균형에 대신하는 것을 형성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 세력균형에 대신할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평화유지 메커니즘 결국 국제연맹이었다. (그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45년 완성된 UN헌장은 집단적 강제 모델을 안전보장이사회라는 초국가적 권위의 도입에 의해 완성시키려고 시도, 그것으로 나쁜 짓을 하는 나라에 대처하려 했다.

쌍방의 시스템 결국 세력균형과 통합모델은 다같이 국제분쟁을 제어하려는 목적에서—현저히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법의 지배를 철저히화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에서 실패로 끝났다.

이 때문에 어느 어프로치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명제에는 여전히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어떤 어프로치도 실제적인 면에서 명확한 우위를 확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약에 근거한 어프로치 쪽이 보다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만큼, 상황에 따른 대응을 결정하는 어프로치보다도 명확한 잇점을 가지고 있다.

## 신개입주의에 대한 정통성 확보 문제

1999년 현재, 관례에 의거한 기준보다도 성문화된 문서 쪽이 높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다. 사실 금세기에서 국제법의 역사는 곧 성문화의 역사였다. 외교특권·조약·무력행사라는 관습이 차례차례 성문화되었다. 성문화에 의해 (조인국) 잘못을 범할 위험은 저하되고 (시스템에의) 신뢰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파악하기 쉬워졌고, 보다 규칙에 준한 행동이 취해지게 되었다. UN헌장에 의한 과거의 룰은 엄숙한 협의를 거친 문서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고 있으며, 당연히 동등한 공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새로운 룰의 권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NATO가 정규 수속을 거치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내분쟁에 개입, 단독으로 룰을 변경시킬 위험이 있다. 새로운 개입주의에 있어서의 시련은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아니다. 미디어가 이미 인내의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밀 유도 병기에 의한 (민간인에의 피해를 배려한) 핀 포인트 공격을 행했다고 묘사하였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구미의 여론에서는 적어도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군사계획 입안자나 작전홍보 담당자에 의해서 이미 검토를 필한 사항이다. 그러한 공격은 악을 징벌하고, 국제적인 명예를 옹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기간에 성과를 손에 넣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CNN에 의하면) 이 방법은 민간인의 희생



최소한으로 억제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서방측 병사의 회생을 억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효과적인 군사작전의 시나리오는 누구도 알고 있는 것으로 국가 기밀은 아니다.

그러나 개입주의의 새로운 레짐이 장기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새로운 시스템의 과제는 힘과 부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다음 세대가 이 시스템 내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있다. 무력행사를 행하는 제국에 의한 게이스 바이 게이스적인 내부적 결정에서는 그러한 광범한 지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무력행사의 목적이 폭넓게 지지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배타적인 의사결정을 행하면, 어쨌든 시민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력행사에 수반된 혼란이 발생, 과실이나 실수에 의해 희생자가 날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정의는 결국은 정당성을 필요로 한다. 법에 근거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은 개입이 아니면, 새로운 개입주의는 법이나 정의가 아니라 힘만에 의존한 것으로 인식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인 정통성을 결여한 개입주의 레짐이 현행 레짐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새로운 개입주의 지지자들은 자기의 레짐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성과, 반대파

**새로운 시스템의 과제는 힘과 부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다음 세대가 이 시스템 내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있다.**

와 소극파 및 개입대상이 되는 나라에 의한 저항과 마찰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새로운 레짐의 지지자는 질서의 혼란을 방지할 때의 비용이 보다 질서있는 세계의 형성에 의해 얻어지는 성과를 상회할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제는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연관되어 있다. 국제여론의 중심이 NATO와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처방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처방전도 틀림없이 시민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리라.

그러나 신개입주의 지지자들은 UN헌장의 반개입주의적 금지사항이라는 숭고하고 불가침의 법적 성역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인류가 수 세기 동안에 성취하지 못한, 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목표 즉 힘에 뒷받침된 정의라는 이상의 모색을 그렇게 간단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성취한다면 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제법 개정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정의를 행하기 위한 힘이 행사된다면, 법은 뒤에서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 日帝의 滿洲國 同化政策

역사적 동화이념 도출과 천황제 시행

연구논단 3

保坂裕二



일제는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을 만주국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일제의 동화정책의 특징은, 먼저 여러가지 동화이념을 만들어놓은 다음 그것을 근거로 피지배국에게 천황제 시행을 강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가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과 '역사적 동화이념'을 모체로 하여, 결국 같은 수법으로 만주국에 대해서도 동화정책을 쓰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호사카 유우지(保坂裕二)는 세종대 교수(일본학)이다.

일제가 그들의 식민지 국가에 대하여 취했던 정책의 기초는 이른바 '동화정책'이라 불리는 '민족말살정책'이었다. 동화정책은 피지배민족의 문화·언어·역사 등을 없애고 일본의 문화·언어·역사 등을 강요, 주입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일제의 식민지 중에서 한국이 이러한 동화정책의 모델이었다.

1931년 일제는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국의 국가이념을 유교사상에 기초한 '왕도주의'로 정했다. 그러나 일제는 그후 만주국의 왕도주의를 비판하기 시작, 결국 만주국은 그 이념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일제의 동화정책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만주국에도 그것을 그대로 응용·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의 동화정책은, 먼저 여러가지 동화이념을 만들어놓은 다음 그것을 근거로 피지배국에게 천황제 시행을 강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가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과 '역사적 동화이념'을 모체로 하여, 결국 같은 수법으로 만주국에 대해서도 동화정책을 쓰려고 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동화이념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특히 역사적 동화이념에 주목한다. 그 이유는 각 피지배민족마다 일제의 동화정책에 대한 차별성의 근거가 될 만한 요소가 그들의 역사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한국에 대한 역사적 동화이념의 도출

피지배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은 먼저 그 역사적 동화이념을 도출하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한국에 대하여 고대의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 해석하여 이른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만들어낸 과정이 그것이었다. 여기서는 이를 개관하면서 일제의 동화이념의 기본적 개념을 확인하고자 한다.

##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인식

한국에 대한 역사적 동화이념은 먼저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속국이요 일본이 한국의 상국(上國)

**명치정부 자체가 역사적으로 한국을 일본에  
 대한 조공국으로 인식하면서 출범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아시아의 불행한 근대사를  
 예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지배민족이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동화이념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라는 왜곡된 역사관을 만들어냈다. 에도막부(江戸幕府) 말기 존왕양이(尊王攘夷) 사상의 대부이자 명치정부의 중심이었던 기도 타카요시(木戶孝允)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스승이었던 요시다 쇼오인(吉田松陰)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조선의 잘못을 엄중히 책하고, 납질봉공(納質奉貢)함이 옛날에 성행했을 때와 같게 하며, 북으로 만주를 분할하고 남으로 대만과 필리핀 등 여러 섬을 다스린다.<sup>1)</sup>

즉,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조선·만주·대만·필리핀까지 침략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글이다. 요시다 쇼오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이자 명치정부 초기의 중진이었던 기도 타카요시는 한국이 대마도의 속국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날에 조선은 대마번(對馬藩)에 속하여 성의를 표했듯이, 그들이 다시 와서 관사(款謝)를 올려야 하는데, … 감히 상국 일본에게 대항하려고 한다.<sup>2)</sup>

이런 인식은 당시 명치정부 간부의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정부 고용 외국인도 한국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에도막부가 조선통신사의 방일을 일종의 조공 의례로 해석하고 한

국을 일본의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견해<sup>3)</sup>를 명치정부도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명치정부 자체가 역사적으로 한국을 일본에 대한 조공국으로 인식하면서 출범했다는 사실은 한국과 아시아의 불행한 근대사를 예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피지배민족이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동화이념의 한 요소가 되었다.

### 한일 양민족의 혈연관계를 밝힌다

그후 명치정부는 현실적으로 중국의 속방이 되어 있는 한국을 일본 주도로 독립시키고 난 다음 일본에게 편입시키려는 정책을 썼다. 이 과정에서 주장된 논리가 역사적으로 한일 양 민족은 혈연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일본인의 피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고, 반대로 한국인의 피 속에는 일본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일 양민족은 혈연적인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론이었다. 이것은 '일선동조론'과 '일한동역론(日韓同域論)'이라고 불렀고 일본의 많은 사학자들이 이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sup>4)</sup> 이런 인식은 곧 역사적 동화이념의 한 요소가 되었다.

### 일본 시조(始祖)의 동생이 한국의 시조라는 신화

마지막으로 일본 시조의 남동생이 한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신화가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졌다. 이 단계까지 와서 일본의 동화이념은 일단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남동생인 수사노오(素戔鳴尊)가 한국에 강림하여 한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신화이다. 이것은 일본의 역사고전『일본서기(日本書紀)』 신대(神代)권의 기술을 근거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일본서기』 신대권 팔단(八段) 일서(一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수사노오, 그 아들 이타케루(五十猛)를 거느리고 신라국에 내리셔서 소시모리(曾尸茂梨)라는 데에 있다.

수사노오가 신라에 강림했다는 이 기술과 다른 한국 관련 부분을 근거로 결국 수사노오가 한국의 시조가 되었다는 논리가 활발하게 연구되어 유포되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총독부가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로 상식화되고 있었던 이야기였다. 예를들면 당시 고이소(小磯國昭) 총독(1942.5~1944.7)은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반도 2,500만의 원민족은 틀림없이 수사노오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후손인 내지(=일본) 민족과 바로 뿌리가 같고, 하나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알 수 있는 역사에서도 그 후에 피의 혼합이 되풀이되고 있다. ... 그런데 명치 43년(1910)의 성대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후손이신 명치천황에

대하여 수사노오 후손인 조선이 병합된 것은 신대(神代) 말기의 신사(神事)가 더욱 철저히 완성적으로 다시 되풀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수사노오가 한국의 시조이므로 일본민족과 한국민족은 동일민족이라는 주장이고, 이러한 논리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철저히 이용되었다. 즉 일제는 이렇게 만들어낸 역사적 동화이념을 한국에 대한 천황제 주입에 이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단군과 수사노오가 동일 인물이라는 이야기도 당시 상식처럼 널리 유포되었다.<sup>5)</sup> 이렇게 하여 일본민족과 한국민족은 신대(神代)로부터 완전히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동족이었다는 논리가 거의 완성되어 한국을 통치하는 기초사상이 되었다. 즉 이렇게 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가 '역사적 동화이념'의 구성요소가 되었다.

### 역사적 동화이념을 기초로 한 천황제 시행

한국에서 1940년 성립된 관제조직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실천요강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sup>6)</sup>

국민총력조선연맹 실천요강

1. 최고목표 : 고도 국방 국가체제의 확립
2. 실천요강 : 제1=사상통일, 제2=국민 총훈련, 제3=생산력 확충 여기서 사상통일이 첫번째 실천요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제1 : 사상통일

1. 일본정신 앙양(昂揚)

## 수사노오가 한국의 시조이므로 일본민족과 한국민족은 동일민족이라는 주장이고, 이러한 논리는 일제의 동화정책에 철저히 이용되었다.

즉 일제는 이렇게 만들어낸 역사적 동화이념을 한국에  
대한 천황제 주입에 이용했던 것이다.

### · 중 점

(1) 국체관념의 명징  
(明徵) (2) 경신(敬神) 숭  
조 (3) 거국일치 (4) 멸사  
봉공의 대정신 발양 (5)  
황국신민의 신념 철저화

### · 실천사항

(1) 아침의 궁성 요배  
(2) 신사참배 (3) 정오의  
묵도 (4) 국기계양 (5)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낭송

## 2. 내선(內鮮)일체 완성

### · 중 점

(1) 일사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 봉체(奉體)  
(2) 내선일체이념 철저화 (3) 내선사실(內鮮史實) 재  
인식 (4) 신애협력 실천

### · 실천사항

(1) 국어 보급 (2) 내선풍습 융합 (3) 단결 강화  
(밀줄은 필자)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사상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  
시한 점은 한국인이 '나는 일본인'이라는 자각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  
가지 방법이 고안되었다.

신사참배나 황국신민의 서사(誓詞) 낭송, 일본어  
의 강요 등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으며 '황국사관 철  
저화'라는 '역사관의 강요'가 조선총독부 주도로 실  
시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위에서 인용한 '사상  
통일' 항목의 2-(3)에 '내선사실(內鮮史實) 재인  
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후로부터 '내선일체' 완수를 위하여 '한일관  
계사'의 왜곡된 해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일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16년 조선총독부  
에서 발행한 『조선반도사 편성의 요지 및 순서』에는  
다음과 같이 일제의 역사 편찬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다.

조선인은 기타 식민지의 야만 미개의 민족과 달리 독서  
작문에 있어서 문명인에게 뒤질 데가 없다. 고래의 역사  
서도 많고 또 새롭게 저작되는 책도 적지 않다. ... 어떻게  
하면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조선반도사의 취지로 삼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  
다.

첫째, 일선인(日鮮人 :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 ... 본 역사 편찬의 목적은 내선인  
(內鮮人 :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른 신구 군서(群書) 잡  
사(雜史)에 현혹되는 것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일선관계  
의 진상을 이해시켜 조선통치의 동화 방침을 원만하고 신

속히 수행 성취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sup>9)</sup>

이상에서 분명해지듯이 일제는 '어떻게 하여 조선인 동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라고 하여 동화정책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면서, '조선통치의 동화 방침을 원만하고 신속히 수행 성취하도록' 역사편찬을 동화정책에 이용했다. 그 목적의 하나는 '일선인이 동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한다. 즉 한일 양 민족이 원래 동족이라면, 한일병합이 '복고(復古)'로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 편찬을 동화정책에 이용하려고 한 이유로 한국인이 '독서작문에 있어서 문명인에게 뒤질 데가' 없다고 하여, 한국인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즉 한국인처럼 높은 문화수준을 갖춘 민족에게는 무엇보다 '문화적 동화정책'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제의 견해였다. 그래서 일제의 민족정책은 근본적으로 '문화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에 역사적 동화이념이 철저히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만주국에 대한 역사적 동화이념의 도출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명목상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입장을 지켰기 때문에 만주국에 대한 동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정부에서 내린 그러한 지시가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차원에서 먼저 역사인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했고, 만주국 동화정책의 기초사상인 역사적 동화이념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똑같았다.

사실상의 일만(日滿 : 일본과 만주) 병합을 수행

하여 만주국을 동화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위한 정당화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일만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재평가가 당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역사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역사적 동화이념 도출과정과 마찬가지로 다음 세가지를 증명하는데 있었다.

① 일본이 역사적으로 상국의 입장에 서서 만주에 거주했던 민족들에서 조공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

② 일만 양민족간에 역사적으로 피의 혼합이 있었다는 것.

③ 일만 양민족의 조상이 동일하다는 것.

이하에서는 ①과 ③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②는 ③을 증명하면 사실상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 발해(渤海)의 조공(朝貢)

만주사변이 일어난 무렵부터 고대 일만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연구목적의 하나는 고대 만주국이었던 발해가 일본에 조공했다는 '사실(史實)'을 증명하고, 고대 이래 일본이 만주의 상국(上國)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경성제대 교수였던 도리아마 키이치(鳥山喜一)는 『만선(滿鮮) 문화사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구려는 반드시 일본에 대하여 충실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우리 조공국 속에 들어 있었고, 당(唐)의 병사들이 침입했을 때에는 원병을 요청한 사실도 우리 기록에 명기되어 있다.<sup>9)</sup>

이렇게 쇼우무(聖武) 천황 시대에 고구려의 전례를 밝는다고 하여 내조(來朝)한 발해는 다이고(醍醐) 천황의 엔초(延長) 연간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를 때까지 전후 14회

견사조공을 했고, 우리 일본에서도 가끔 송사 견발해 사등의 차견이 있었다.<sup>10)</sup>

… 속국에는 대번국(大蕃國)과 소번국이 있는데, 발해는 그 대번국으로 취급 받았다.<sup>11)</sup>

즉 고구려와, 고구려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나라가 성립된 발해는, 양국 모두 일본의 조공국이었다고 한 견해이다. 누마타 요리수케(沼田頼輔)도 『일만의 고대국교』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고구려왕의 구거(舊居)를 회복하여, 고구려왕이 통솔한 부여의 유민을 관리하게 된 발해왕이, 고려왕의 전례를 따라 사신을 보내고 내병한다고 하기에, 환언하면 발해왕은 고구려왕처럼 일본을 중주국으로 받들고 일본에 복속하여 조공의 예를 지낸다고 한다.<sup>12)</sup>

그리고 누마타는 “그 국왕도 또 그 국민도 아직 맥맥히 발해 국민의 피가 흐르고 있다”<sup>13)</sup>고 하여, 만주국의 국민이 일본에 조공을 한 발해의 후에라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날의 일만국교로 1,200년 전의 국교가 회복되었다”<sup>14)</sup>는 관점으로 만주국의 건국과 그후의 일만관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리고 누마타는 이 역사서를 펴낸 목적이 ‘양국 국민을 교화’하는 데 있다고 명기했다.

이 책의 목적은 일반 양국간에 있어서의 친밀한 고대국교를 알려서 이것을 양국 국민의 교화에 응용하려고 하

##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는 명목상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입장을 지켰기 때문에 만주국에 대한 동화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정부에서 내린 그러한 지시가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차원에서 먼저 역사인식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게 했고, 만주국 동화정책의 기초사상인 역사적 동화이념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똑같았다.

는 데 있다.<sup>15)</sup>

즉, 누마타의 말처럼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일본의 많은 학자들에 있어서 고대 일만관계를 기술하는 목적은 정확한 역사기술이라기보다는 만주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조공국이었다는 것을 밝혀서, 만주를 속국화하고 만주 국민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이념 도출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 황도주의와 일만동족설

여기서는 일만동족설을 검토하는데, 그러한 논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근거가 ‘황도주의(皇道主義)’ 속에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한다.

#### ① 황도와 왕도의 근본적 차이

만주국의 ‘왕도주의’<sup>16)</sup>를 ‘황도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하여는 황도와 왕도의 근본적인 차이를 분명히 하여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일치시킨다는 것도 만주국의 왕도주의를 일본의 황도주의 속에 일치시키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려면 황도와 왕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황도와 왕도의 근본원리에 있어 기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황도는 진정한 '혈연적 부자관계'로 성립되어 있는데 비해, 왕도는 진정한 부자관계가 아니고 명분뿐인 부자관계이며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양육의 부자관계'로 성립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17)</sup>

혈통통제를 원리로 하는 황도국체(皇道國體=皇道制)는 가령 그 형식에 있어서 군주국체(君主國體=君主制)이지만, 무력과 권력을 통제 원리로 하는 패도국체(霸道國體=霸道制)와 혼동하는 것은 잘못이고, 또 기타의 여러가지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왕도국체라고 하더라도 그 원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명분뿐인 부자관계로 인덕을 근거로 하여 인민의 부모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sup>18)</sup>

즉 황도에 있어서 국가민족의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관계는 혈통적으로 연결된 부자관계인 데 비해, 왕도에 있어서는 최고지도자와 인민간에 혈통적인 관계는 없다. 이 점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 '혈통적인 관계' 혹은 '혈통통제'라는 개념이 황도주의의 가장 특징적이고 중요한 원리이다. 그래서 일제는 '혈통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민족을 '동화' 대상으로 택하거나, 반대로 '동화' 대상으로 택했던 민족에 대해서는 일본민족과의 '혈통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억지로라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황도는 '전 인류를 아손(兒孫)으로' 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 황도대승의 외교를 열국들에게 실시하려고 하면, 먼저 황국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굳은 신념에 서서 육합

(六合)<sup>19)</sup>을 합하여 팔괘(八紘)을 우(宇)<sup>20)</sup>로 하고, 지상의 전인류를 아손으로 하려는 부모같은 마음을 품고, 그 무사(無私)의 마음과 자애심 그리고 위신에 의하여 만방을 협화시켜, 황도 편조(遍照)의 이념 아래 평천하의 천업을 회홍(恢弘)하는 청원을 포회(包懷)해야 하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고, 어떠한 염려도 필요가 없다.<sup>21)</sup>

이것은 결국 '지상의 전 인류를 아손으로 하려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황도 편조의 이념 아래 평천하의 천업'을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침략주의적 발상이다. 그리고 황도를 관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한 타민족과의 '혈연적 관계'를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일본과 만주의 혈통적 동일성 즉 동족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 ② 일만동족설

치바 메이키치(千葉命吉)는 『만주 왕도사상 비판』에서 일본·한국·만주·몽고가 모두 통구스(通古斯)족으로서 같은 형제인 동일민족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조선·만주·몽고는 형제의 나라이고 이는 통구스족(通古斯族)이라고 말한다. 만주에 살고 있던 종족은 원래 숙신(肅慎)이라는 종족도 있었고, 예맥(濊貊)이라는 종족도 있었으며, 동호(東胡)라는 종족도 있었다. 그리고 조선이 동쪽에 있었고 그 동쪽에 일본이 있었다. 합해서 이들을 통구스족이라 하였는데 중국 본토의 황제가 거느리고 동쪽으로 내려 왔다고 하는 한족(漢族)과는 일찍부터 분리되어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2)</sup>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해의 연합 제국을 보면 일본·조선·숙신·부여 등 네 종족은 하나의 '연합제'를 만들고 일본해(=동해)를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군장(君長)과 같은 사람도 공통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인다. 수사노오와 같은 인물도 신라와 가야의 군장이었을 뿐 아



나라 맥(貓)이나 옥저(沃沮)에도 군림한 것이 아니었을까. 즉 그는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아래서 통치받았던 통구스족 전체의 군장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 즉 야마토(大和) 민족은 만주나 조선의 두목이었고 또 그 맹주이기도 했다.<sup>29)</sup>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에 사용된 수사노오의 한국 강림신화가 만주에도 확대된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사노오의 한국 강림신화는 한국에서의 동화정책 강화를 위하여 특히 1930년대 들어 자주 주장된 내용이었다. 즉 만주에 대한 정책도 결국은 동화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에 대한 동화정책에 사용된 수사노오의 한국 강림신화가 만주에도 확대된 형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사노오의 한국 강림신화는 한국에서의 동화정책 강화를 위하여 특히 1930년대 들어 자주 주장된 내용이었다. 즉 만주에 대한 정책도 결국은 동화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선린협회가 발행한 『몽고는 왜 구제해야 하는가』라는 서적 속에서 몽고·만주·일본을 동족이라고 주장하고 '피에 의한 결속'에 의하여 동족을 구제하는 일은 '동족 공존공영의 정신'에 입각하는 공명정대한 행동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본이 만주 및 몽고인과 동일민족인 이상 일본이 지난 번에 만주국의 독립을 원조 지도한 정신에 입각하여, 몽고의 개발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피에 의한 결속은 항상 조약에 의한 결속보다도 강하고 민족적 결속은 이익을 본위로 하는 결속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일본이 얼마 전에 만주국을 원조한 일을 부자연스런 인위적인 행동인 것처럼 서양인 및 중국인은 비판하고 있으나, 실은 동종족 공존 공영의 정신에 입각한 공명정대한 행동이었다. 마찬가지로 사멸의 각인마저

찍힌 몽고민족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출하고 근대화화를 터득하게 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일은 동일 민족에 주어진 대사명이 아닌가.<sup>29)</sup>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일제가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공명정대한 대사명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국주의적인 사상이 망상을 만들어 낸 것일까. 아시아에 대한 군부의 진출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당화하였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일선 용화론자이었던 최동(崔棟)은 만몽 땅이 일본과 한국민족의 발상지 즉 '다카마노하라(高天原)' 이고 거기서 나온 민족이 만주·한반도·일본 그리고 시베리아·터키·북극 등으로 퍼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일 양 민족은 신성한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제국에 있어서 만몽문제는 일선 민족이 다소 그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도 침착하게 고려해야 할 중대 문제이다. 그 정신적 의의로서는 일선 양 민족은 공동으로 그 공통된 신성한 다카마노하라의 소재지를 회복하

고 … 나는 다카마노하라는 일본족의 신성한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조선족도 그 다카마노하라에서 발상하였고, 그 소재를 부여족의 전신인 소위 배달족(倍達族)의 고지(故地) 즉 백두산령의 북쪽에 전개하는 지대라고 상정하는 이유를 유한다 … 또 간접적으로는 동시에 일선 양 민족이 중심이 되어 활약하고 영원히 잊혀져가는 우리 타타르계 몽고종족의 거룩한 예루살렘을 회수하여, 멀리 떠나서 더욱 고향을 그리워하는 터키·타타르인과 기타 종족을 안도시킬 수 있는 한편, 또 물질적으로는 그 땅을 우리 타타르계 종족의 발전 중심지로 하여 신문화를 건설함과 동시에 일선 양 민족을 포함한 여러 인민의 적극적이고 풍족한 생활의 발전을 기도하는 바이다.<sup>26)</sup>

최동은 한일 양 민족을 '타타르계'라 하고, 만몽의 땅을 회복하는 것은 민족적인 요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일만이 동족이라는 주장은 만주국이 일본에 의하여 완전히 병합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무로 케이지로오(小室敬二郎)는 만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랄 알타이계와 퉁구스계로, 결국 일본인과 동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은 일본인과 동족이 아니라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가 분류한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주국 5족의 수적 구성.

1. 우랄 알타이계
  - 일본인 300,000명
  - 조선인 2,000,000명
  - 퉁구스인·만주인 12,000,000명(일설에는 25,000,000명)
  - 몽고인 500,000명(만주국 거주자)
  - 터키인·기타 동족 200,000명
2. 퉁구스계 직례(直隸)

산동인(山東人) 6,500,000명

합 계 21,500,000명

3. 혼혈종 3,500,000명

4. 한인(漢人) 3,000,000명

총합계 28,000,000명<sup>26)</sup>

고무로는 만주의 2,800만 민중 중, 혼혈종까지 포함하면 2,500만명이 일본인과 동일계라고 주장하며 만주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인 총독을 두고”<sup>27)</sup> 제후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문화를 가지고 왕도를 세계에 선언”해야 하고 또 “교육 및 여타의 분야에서 일본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바로 한국식 동화정책을 장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sup>28)</sup>

1932年(昭和7)의 제국의회 중의원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봐도 당시의 일본의 정치가들이 일본과 만주를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에서는 관민(官民) 모두 일본과 만주를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만주에 관해서는 과거의 역사 및 접촉관계 등에서 보아, 정치적 고려를 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요시자와 켄키치(芳澤謙吉) 외상, 1932.1. 22.)

이 만몽의 땅이 종래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국의 중앙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다. … 우리는 이 이웃 나라 그리고 동종 동문인 이 신국가 신국민에 대하여 비상한 동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sup>30)</sup>

(야마미치 조요이치(山道襄一) 의원, 1932.7.23.)

즉 일본과 만주는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깊고 거

에 더하여 '동종 동문'이라는 인식은 당시의 정치가들의 상식이기도 했다. 결국 이것은 당시 일만동족설이 침투하고 있었던 증거이고 그것은 만주에 대한 동화정책의 기초인식이 된 이념이었다.

결론적으로 만주국에 대한 역사적 동화이념이 한국의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개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역사적 동화이념의 정치적 사회화

### 『만주국사 교본』 편찬

만주에서는 식민지의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동화정책이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가 곧 끝이 났을 뿐이다. 일제가 한국에서 국사 교과서에 일선동조설을 강조했듯이 만주에서도 일만동족론을 강조하는 첫 단계로 만주국사 교과서가 발행되었다. 즉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교육을 통한 정치적 사회화로 볼 수 있다.

1934년 2월에 만주국 봉천성 교육청이 초등학교용으로 『만주국사 교본』을 편찬하여 만주국 문교부의 검정을 받아 이를 배포했다. 한국에서의 국사 교과서가 일제시대 초기에는 일선동조론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첫번째 교과서에서도 아직 '일만동족설'이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국사 교과서가 일제말기에 가

고무로는 만주의 2,800만 민중 중, 혼혈종까지 포함하면 2,500만명이 일본인과 동일계라고 주장하여 만주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인 총독을 두고” 제후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일본문화를 가지고 왕도를 세계에 선언”해야 하고 또 “교육 및 여타 분야에서 일본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바로 한국식 동화정책을 장려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 일선동조론을 강조할 목적으로 수사노오의 한국 강림을 실은 사실을 보면<sup>31)</sup>, 만주국에서의 만주국사 교과서에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일만동족론을 강조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만주국에 있어서의 첫 번째 교과서는 고대 역사의 기술보다 만주국이 건설된 경위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일만동족설에 연결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숙신(肅愼)은 만주에 살고 있었던 최고(最古)의 민족이다. 후세의 말갈(靺鞨)·발해·여진·금·청 등은 모두 이 숙신과 동족이다. (注) 숙신이란 이름은 '미치하세' 또는 '미치무하세' 라고 읽어 우리나라(=일본) 역사에도 등장한다.<sup>32)</sup>

발해의 왕들은...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공손히 복종하여 평화를 즐겼다. ... 발해는 건국에서 멸망까지 2백여년간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한 것이었다. (注) ... 이 제 발해의 옛땅인 만주는 독립하고 길희 철도 전선(全線)과 조선북부의 항구 수축(修築)에 의해 일본해의 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어 가고 있다. 건국부터 멸망까지 200여년간 일본에 대하여 친밀하고 공손히 복종한 발해 왕들은 지하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sup>33)</sup>

위의 『만주국사 교본』 내용의 예를 보면, 최고(最古)의 만주민족이 일본민족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고, 발해가 일본에 대하여 공손히 복종했다는 발해의 조공설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것이 첫번째 교과서이므로 일본의 패전이 조금 더 늦어졌더라면 한국의 교과서 처럼 보다 동조설이나 동족설이 강조된 역사교과서가 출판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 일본어 교육의 강화

동화정책의 수단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본어 교육'이다. 이 일본어 교육도 만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41년 3월 관동주에 있는 재만(在滿) 교무부는 관동주와 만주에 있어서의 『국민학교안 설명요령』(재만 일본교육회보 194호)을 발행했다. 이것은 관동주와 만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자녀를 위한 교육안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지역에 대한 동화정책을 궤도에 올리려는 일제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다.

관동주와 만주에 있어서도 일본어를 국가의 표준어로 한다는 방침은 한국이나 대만에 대한 것과 같다. 『국민학교안 설명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쇼와(昭和) 13년(1938) 민생부가 제정한 '학교령 및 학교규정'에는 학제 입안상의 요점으로 '일본어는 일만 일덕일심(一德一心)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어의 하나로 중요시한다'라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쇼와 15년(1940) 국본전정증서(國本奠定證書)는 일만 양국 언어로 환발(換發)되었고 우리 국어는 단순히 일본 국내 만의 언어가 아니고 완전히 만주국의 국어가 되었다. 이 국어가 보급되어 철저히 될 때 비로소 일본적인 느낌, 이해방

법,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일만 일덕일심의 건국정신이 철저히 침투되고 또 조국(肇國)의 대정신, 대이상이 만주국에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sup>30)</sup>

이를 보면 일본어가 '만주국의 국어'로서 정해지고, 바로 한국이나 대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화정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본어의 보급이 철저히 될 때 '건국의 정신'이 철저히 침투한다는 표현은 만주국에서 일본어 교육이 점점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도 한국에 일본어 교육을 시행했을 때와 같은 수법이다. 즉 만주에 있어서도 일본어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결국에는 다른 언어를 폐지시키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 다 하겠다.

### 만주국에 대한 천황제의 강제주입

만주국에 대한 역사적 동화이념은 사실 왜곡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다음 단계는 천황제를 주입시키는 단계이다.

만주국에 천황제를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건국이념으로 일단 확정된 왕도주의를 황도주의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역사적 이념 도출 작업과 함께 왕도주의에 대한 비판과 황도주의의 주입이 진행되었다. 이 것은 한국에서 유교주의를 비판하면서 동화정책을 쓴 기법과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 왕도주의 비판

유교의 여러 경전에서 도출된 왕도주의 원리는

'천자(天子)'에 대한 복종보다도 '천제(天帝)'에 대한 복종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벌혁명이나 역성(易姓) 혁명 등, 왕이 덕이 없는 경우에 허락되는 '혁명' 개념이다.

당초 일제가 만주국에서 '왕도주의'를 도입한 목적은 유교적 원리를

내세워 관동군에 의한 만주사변을 '역성혁명'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각 민족의 반발심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sup>35)</sup> 즉 만주에 대한 '민족' 정책의 첫단계로 왕도주의가 도입된 것인데, 이것은 일시적인 모면을 위한 전술적인 성격이 짙어서 처음부터 그 사상적 변질은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일제의 목적은 대만이나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주에 대한 천황제의 변칙적인 시행이었고 왕도주의의 도입은 그 목적을 위한 과도기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일제는 만주의 왕도주의를 그대로 놔둘 리가 없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왕도주의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된 내용은 왕도주의가 갖고 있는 '혁명'의 허용이었다. 다자키 키미요시(田崎仁義)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개벽이래 순수한 황도의 나라이지 결코 왕도의 나라가 아니다. 왕도 이념의 핵심적 요소에서 일어나는 선양(禪讓) 방법, 역성혁명이라는 작용은 절대로 우리 황도국체에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sup>36)</sup>

**만주에 대한 민족정책의 첫단계로 왕도주의가 도입된 것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심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그 사상적 변질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즉 일제의 목적은 천황제의 변칙적인 시행이었고 왕도주의의 도입은 그 목적을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자키는 황도와 왕도가 혼동되어서 그 결과 일본의 국체가 위협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치바 메이키치는 왕도주의는 공산주의와 연결되기 쉽다며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도 직업을 주고 부가 많아도 이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면 천하태평할 것이다. 오늘날 이것을 볼 때, 마르크시즘도 결국 이러한 이상향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 사고방식에는 결국 ... '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게 한다'는 공산적이고 민주적인 사상이 숨어 있다. 제국의 힘은 신뢰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만민 스스로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다. ... 그래서 중국은 군주천제의 나라였으나 벌써부터 3,000년 전 민주적인 사상이 회태되어 있었고 그것이 잘못하여 갑자기 공산혁명으로 인도되어 갔다.<sup>37)</sup>

즉 왕도주의가 갖고 있는 "천자가 부덕하여 천제의 봉행자(奉行者)다운 자격이 없을 때는 만민은 직접 천지를 부모로 삼고 이에 복사(服事)하여 새로이 천명을 받은 자를 받들고 부덕한 천자를 그 위치에

서 전퇴시켜 방벌혁명을 실시한다”<sup>38)</sup>는 혁명사상이다. 그리고 왕도주의의 민본사상과 혁명사상은 서로 통하는 논리이고 더욱이 그것은 공산주의에도 통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당시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공산당이 생긴 무렵이었다.

그리고 왕도주의는 정권획득을 원하는 자에게 이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논의도 많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지금 만주에서 낙토 건설의 유일수단으로 헌법의 근본으로 삼으려는 왕도는 덕에 의하여 정치를 하고 문에 의하여 통치를 꾀하는 길이라고 한다. 그것은 일단 좋아 보이나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선양이든 방벌이든, 적어도 진정한 혁명을 일으켜 진정으로 인민을 안도시킬 낙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좋아하는 자가 요순탕무(堯舜湯武)에게서 구실을 찾아 이용하여 마음대로 반역을 도모할 뿐이다.<sup>39)</sup>

이와 같이 왕도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 민본주의적 사상이 정권부정에 연결된다는 의구심에서 생긴 것이었고 일본의 국제화 모순되는 이념이라는 점이 그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하여 왕도주의를 내걸고 출범한 만주국은 처음부터 건국이념 자체가 문제시된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왕도주의의 변질과 부정, 그리고 무조건적인 황도주의로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 황도주의로의 전환

이런 일체의 책략에 의하여 1935년의 부의(溥儀)의 첫번째 방일(訪日)을 계기로 ‘일만 일덕일심(一德一心)’을 강조한 「회란훈민조서(回·訓民詔書)」가 발표되었다.<sup>40)</sup>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일본 천황폐하와 나는 정신일체이다. … 그 뜻을 터득하여 우방과 일덕일심의 정신을 가지고 양국의 영구한 기초를 전정(奠定)하고 동방 도덕의 진의를 발양하여야 한다…<sup>41)</sup>

이 조서의 발표는 만주국 건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내걸었던 왕도주의로부터 실제적인 목적이었던 황도주의로 이행하려는 첫번째 단계였다고 볼 수 있다. 일만일덕일심이라든가 ‘일만일여(日滿一如)’라고 일컬어진 만주에 대한 동화정책은 이렇게 하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왕도주의는, 그것을 내걸었던 관동군 내부로부터 비판받기 시작했다. 1936년에 관동군사령부가 펴낸 『만주국의 근본이념과 협화회의 본질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만주건국은 … 황도에 입각한 것이다.<sup>42)</sup>

전술한 바와 같이 만주건국은 도의(道義) 세계 완성의 첫 단계이고, 그 건국의 근본정신은 일본정신에 일치하여 천황의 마음에 귀착하는 것이었다.<sup>43)</sup>

황도정치는 철인정치이다. 이것은 선양 방벌을 긍정하는 중국 고래의 소위 왕도사상에 입각하는 정치와는 그 취지를 달리하여 대일본 천황의 마음을 정치상에서 구현·완성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sup>44)</sup>

만주국 황제는 그 회란훈민조서에 명시한 것처럼 일덕일심 대일본 천황의 마음을 그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철인이며, 천황의 대리인 군사령관의 후견에 의하여 만주국에 있어서의 왕도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sup>45)</sup>

즉 여기서 부의의 「회란훈민조서」를 근거로 만주국의 왕도주의 속에서 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왕도=황도’라고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있다. 만주건국을 역성혁명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내걸었던 왕도주의는 이 시점에서 쓸모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만주국의 이념으로 삼을 목적이었던 황도주의를 이론적으로도 보다 정교하게 정리하면서 내세우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의의 「회관훈민조서」 발표는 그것을 위한 순서였다.

이어서 만주국 정부는 1940년 7월 「국본전정조서(國本奠定詔書)」를 발표하고 ‘건국신묘’를 세워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받들고 국본(國本)을 ‘유신(惟神)의 도(道)’라고 정하며 국강(國綱)을 ‘충효(忠孝)’로 정했다.<sup>46)</sup> 이 국본전정에 있어서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 부부장이었던 미야케 카즈오(三毛一夫)는 이렇게 적었다.

… 우리 만주국의 건국정신은 멀리 일본 조국(肇國)의 대정신에 연원하고 있으므로 … 민족협화, 도의세계 건설은 실로 신무(神武) 천황의 성칙(聖勅)에 있는 팔굉일우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기에 그 뜻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일계(日系) 국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민족도 함께 건국과 동시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신의를 받들고 그 성업을 봉사(奉祀)하고 있는 것이다.<sup>47)</sup>

이런 주장을 보면, 만주국 건국의 정신이 일본 건국의 정신과 같고 건국과 동시에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의 신의를 받들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왕도주의를 의도적으로 부정하여 만주국이 이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940년의 시점에서 만주국은 사실상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일계(日系)국민”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일만 병합화가 진행된 것

이다.

## 결 어

일제는 피지배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 해석하여 역사적 동화이념을 만드는 작업을 정부의 지시(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간에)로 진행시킨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피지배민족간의 역사적인 혈연관계가 왜곡·주장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지배민족에 대해 동화정책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천황제 시행을 강제로 실시한다. 한국에서 천황제가 원활하게 주입되기 위하여 이런 역사적 동화이념을 이용했던 것처럼 일제가 만주국에 대하여도 기본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역사적 동화이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이론작업에 몰두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기초는 문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국은 그 건국에서 멸망까지의 역사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 일제가 쓴 모든 동화정책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으나,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다른 모든 지배민족에 대하여 천황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천황제의 기초 이념인 황도주의 속에서 발견된다. 황도주의의 기본적 전제는 천황과 인민과의 혈연관계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배민족과 천황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거기에 일제의 동화정책의 경직성과 그 한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국가와 다른 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에 대하여는 다른 기회에 언급하고자 한다.

- 1) 『吉田松陰全集』第1巻, p.596, 1936
- 2) 田保橋深『近代日韓關係の研究(上)』, p.303~p.304
- 3) 小嶋和夫『開國期における海外植民論』『帝國日本とアジア』, p.36, 吉川弘文館, 1994
- 4) 旗田巍『日本에 있어서의 韓國史 研究의 傳統』『한국사시민강좌』, p.85 ~p.88, 일조각, 1987
- 5) 수사노오·단군(檀君) 동일설-아베타부노스케(阿波辰之助)의『신찬 일한 태고사(新撰日韓太古史)』는 수사노오(須佐之男命)와 단군이 동일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 견해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던 당시의 한국 남부와 일본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 원일본인이다.
  - ② 그후 한반도에 남한한 맥족(靺族=곰을 신봉)은 그 지도자를 모두 단군이라 했다. 맥족은 단목(檀木)을 신목(神木)으로 숭배했기 때문이다. 맥족은 이어서 연결되어 있었던 구주에 건너가 일본에서 쿠마스(熊襲)나 아이누가 되었다.
  - ③ 한반도에 남은 맥족은 남한한 예족(濊族=호랑이를 신봉)과 잡거했다. 그리고 농경민족인 한족(汗族)이 남하하여 맥족과 예족에게 농경업을 가르쳤더니 맥족은 농경민족이 되었으나 예족은 농경이 싫어서 더 남하하여 현재의 강능에서 산해업으로 생활했다. 한족의 왕인 왕한(王汗)은 평안도에 있었던 맥족의 여자를 처로 삼고 남자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단군신화의 단군이고 그는 농업단군이었다. 그는 신라국(神羅國=新羅國)을 세웠다.
  - ④ 농업단군은 일본국에도 농업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맥족을 거느리고 오키(隱岐)를 경유하여 시마네(島根)반도의 가가우라(加賀浦)에 상륙하고 수사(須佐)에 잠시 살았다. 그래서 농업단군을 수사노오(須佐之男命=素戔嗚尊)라고 부르게 되었다.
  - ⑤ 일본에 농업을 가르친 공로로 단군은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와 형제관계를 맺었다.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전해진 수사노오의 난폭한 행동은, 그후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가 냉대할 때 그 원인이었다.
  - ⑥ 그래서 단군은 원래의 거주지였던 춘천의 소시모리(曾尸茂里=牛頭里)에 들어갔는데, 그후 다시 맥족을 거느리고 시마네에 상륙하고 그 아들 이타케르(五十狹)에 명령하여 일본가지에 식림을 했다. 단군과 맥족은 귀화하여 이즈모(出雲)족이 되었다. 단군은 이즈모에서 죽고 쿠마나리(熊成)봉에 매장되었다.
    - 6) 朝鮮總督府編『半島ノ國民總力運動』, P.10, 1940
    - 7) 위의 책, p.10
    - 8) 朝鮮總督府編『朝鮮半島編成ノ要旨及順序』, P.3~P.5, 朝鮮總督府, 1916
    - 9) 烏山喜一『滿鮮文化史觀』, p.47~p.48, 刀江書院, 1935
    - 10) 위의 책, p.50
    - 11) 위의 책, p.58
    - 12) 沼田麟輔『日滿の古代國交』, p.54, 明治書院, 1933
    - 13) 위의 책, p.3
    - 14) 위의 책, p.3
    - 15) 위의 책, p.4
    - 16) 만주국은 건국초인 속에서 '왕도주'의 채택을 선언했다. 이에 입각하여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부의(溥儀)가 1933년부터 신경문묘에서 삼례구고례(三詠九期禮)를 따라 석전(釋奠)을 거행했다. 즉 만주국은 당초 유교적 '예교'가로서 출범한 것이다. 그리고 '왕도주'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천제(天帝)의 자이자 그 봉행자인 천자(天子)는 천명에 의하여 법을 정하고 정치를 하며, 인민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천수적 군권을 발동하여 이것을 장벌하여 사법형벌을 실시한다. 입법권, 행정권 및 군사권은 천자의 이 자격에 입각한다.
      - ② 만민의 부모로서 또 총대부자로서의 자격 및 천제의 아들로서의 지위에서 하늘에 제시한다. 제시권, 조세권은 천자의 이 자격지위로부터 발생한다.
      - ③ 천자가 만민의 부모다운 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천제는 천자를 그 주로 하여, 봉행자로서 인간계에 있어서 제왕의 지위를 유지시킨다.
      - ④ 천자가 폭악악정을 하는 경우에는 천제는 천자로부터 그 봉행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수단을 취한다.
      - ⑤ 천자가 유덕한 경우에는 만민은 천자를 그 부모로서 존순한다. 그러나 천자가 부덕한 경우에는 만민은 천지(天地)를 부모로 하여 새로이 천명을 받은 자

- 를 봉하여 부덕한 천자를 그 지위로부터 전폐시켜 발벌혁명을 실행한다. (田崎仁義, 『皇道日本と王道滿州』, p.115~p.117, 斯文書院, 1933)
- 17) 田崎仁義, 앞의 책, p.54
  - 18) 위의 책, p.76
  - 19) 육합(六合) =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의 여섯 개의 방향, 즉 전세계를 뜻한다.
  - 20) 팔괘일우(八卦一字) = 팔괘이란 천하, 전 세계를 뜻하는 말이고 우는 집이다. 그래서 팔괘일우란 전 세계를 한 집으로 화합시킨다는 뜻이다.
  - 21) 위의 책, p.78
  - 22) 千葉命吉, 앞의 책, p.215
  - 23) 위의 책, p.217
  - 24) 善隣協會, 『蒙古は何故敗れなればならぬか』, p.45~p.46, 益文堂, 1934
  - 25) 嵯峨, 『朝鮮問題を通じて見たる滿洲問題-附其提案』, P.3, ソウル, 1932
  - 26) 小室敬二郎, 『民族問題より見たる滿洲國の將來』, P.37, 自衛社, 1932
  - 27) 위의 책, p.42
  - 28) 위의 책, p.39
  - 29) 『帝國議會衆議院議事速記録』, p.291, 太田, 1991
  - 30) 위의 책, p.300
  - 31) 1922년 발행된 한국의 『보통학교 국사』 상권을 보면 수사노오에 관한 기술에는 한국과의 관련은 쓰여지지 않았고 한일 양국의 교류기사는 삼한과의 관계만이 기술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수사노오는 신들에게 추방당해서 이즈모(出雲)에 내리셨다."
 

1922년의 시점에서는 수사노오가 신에게 강림했다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한국의 기원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이라고 되어 있다. 결국 1920년대까지의 국사교과서는 한일의 기원을 따로따로 기재하면서도 고대로부터의 민족적 왕래는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그친 것이었다.

그러나 1932년 발행된 『보통학교 국사』 권일(卷一)에는 1920년대까지의 교과서에는 기술되지 않았던 '수사노오의 한국강림'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수사노오는 신들에게 추방당해서 조선지방에 내리셨으나 얼마후에 이즈모에 가셨다."

그리고 1944년 발행된 보통학교 6학년의 『초등국사』를 보면, '수사노오의 한국강림'은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기술되었다. "신대(神代)인 옛날에 수사노오는 다카마노하라(高天原)로부터 조선지방에 내리셔서 황실의 은혜를 배우는 기반을 닦았다."

이 부분의 강의방법에 관해서는 교사용 지도 해설서속에 지시사항이 나와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임나(任那)의 정치가 우리나라(=일본)의 '해의 정치'의 시작이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의의를 유하는가를 조선의 개벽'과의 관련에 있어서 이해시키는 것을 통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유래되는 사실(事實)'의 취급에 대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제는 '일선동조설'을 강조하는 것도 단계성을 두면서 교과서 편찬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簡井清芳 譯, 『滿州國史教本』, P.2, 滿州奉天教育廳, 1934
  - 33) 위의 책, p.27, p.29
  - 34) 『關東州國民學校案在滿國民學校案-說明要領』, P.9, 在滿日本教育會, 1941
  - 35) 駒形武, 앞의 책, p.238~p.239
  - 36) 田崎仁義, 앞의 책, p.94
  - 37) 千葉命吉, 『滿州王道思想批判』, P.132~P.133, 大日本殖創學會, 1933
  - 38) 『皇道日本と王道滿州』, P.117
  - 39) 『滿州王道思想批判』, P.146
  - 40) 駒形武, 앞의 책, p.270
  - 41) 坂本辰之助, 『歴史より見たる日本と滿州』, p.292, 日比谷出版社, 1942
  - 42) 關東軍司令部, 『滿州國の根本理念と協和會の本質に就て』, P.1~P.2, 1936
  - 43) 위의 책, p.5
  - 44) 위의 책, p.11
  - 45) 위의 책, p.12
  - 46) 民生部厚生司教化科, 『國本奠定詔書講話集』, p.1, 滿州圖書株式會社, 1941
  - 47) 위의 책, p.22



## 정치인 리덩후이

리덩후이 대만 총통은 1988년 장징궈 총통이 사망하자 부총통에서 총통으로 올라섰다. 총통이 된 후 리덩후이는 총통 직선제를 받아들여 민선 총통으로 다시 당선되었다.

최초의 대만인 총통으로 당선된 리덩후이는 민주주의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다.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며 정치분야에서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당의 종신의원들을 퇴진시키고, 시장의 직선 선출을 실시하는 등 민주화에 앞장섰다. 그리고 권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대륙출신을 제거하고 전체인구의 85%를 차지

하고 있는 대만출신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중국과의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을 반란단체가 장악한 지역으로 명시한 헌법상의 전시 비상조치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민간 교류기관 설치를 통해 상호 교류를 도모하였다.

반면 리덩후이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기도 하다. 또한 과거의 친일적인 행각과 '중국칠괴론(中國七塊論)'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다는 점과 금권정치와 치안불안의 장본인이라는 점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당 내에서는 샤오완장 행정원장과 마영구 타이페이 시장 등에 의해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샤오완장은 리덩후이의 양국론 발언 후 대만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중국과 통일되기를 바란다면서 리덩후이의 발언을 수정하는 등 다른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 李登輝의 '國家宣言'

지난 7월 9일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나라'라는 양국론 발언은 양안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중국은 즉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중재에 나섰다. 한편 대만은 더 나아가 각국 주재 대사관에 양국론이 대만의 공식 입장임을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서는 양안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온 리덩후이 대만 총통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과 발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김용찬  
(고대 대학원)

## 리덩후이의 대중국정책

리덩후이는 1998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고, 평화사절로 중국 본토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리덩후이는 중국 방문시 대만의 총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여 대만을 하나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했다.

리덩후이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것처럼 정상회담과 중국방문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사실상 중국정부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리덩후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민주화와 대만의 독립국가 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1995년 6월에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문을 통해 대만의 국제적 지위 획득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95년과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대만을 1차 목표물로 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리덩후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민주화와 대만의 독립국가 인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1995년 6월에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방문을 통해 대만의 국제적 지위 획득을 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1995년과 1996년 세 차례에 걸쳐 대만을 1차 목표물로 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1998년 말 리덩후이는 중국 본토에서 추방된 반체제 인사 웨이 징성과 만나 중국이 민주화를 이루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1997년 중국이 분리독립운동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대표부를 타이페이에 설치하도록 승인하고, 달라이라마의 대만방문을 추진해 직접 리덩후이가 면담하는 등 중국정부를 자극하면서 중국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다.

---

## 양안관계에 대한 리덩후이의 인식 변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장개석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후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었으며 서방 국가들도 1970년대부터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규정했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은 국제적 지위 상승과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국’을 본격적으로 주창해 왔다.

### 양국론 제기 이전의 양안관계에 대한 인식

리덩후이는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1989년 총통 취임에서는 대등한 위치에서 양안간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1990년에는 대만독립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1년에는 양안간의 관계는 두 개의 대등한 정치실체임을 밝혔다. 총통에 재취임하기 전까지 리덩후이는 대만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총통 재취임 이후 양상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1996년 총통 취임사에서 대만은 엄연한 주권독립국가임을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고 대만의 독립적 위치를 강조했다. 1997년 2월에는 중국 당국이 통일의 기본방침으로 전제한 일국양제 모델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1997년 11월 리덩후이는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대만은 독립된 주권국이며, 대만이 일개 성이라는 중국당국의 인식에 대해 대만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만은 통일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중국에 자유, 민주사회가 도래하면 통일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칠괴론 제기

리덩후이는 1999년 5월 중국을 7개의 지역으로 분할하자는 ‘중국칠괴론’을 제기했다. 리덩후이는 중국의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대륙이 대중화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나 문화와 발전 정도가 상이한 여러 지역을 충분한 자주권을 갖는 7개 지역으로 분할

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즉 중국을 화북·화남·동북·내몽고·신강·티벳·대만 등으로 분할하자는 것이다. 중국철폐론이 제기 되자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점진적인 중국 통일 노선을 견지해 온 대만의 집권당인 국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리덩후이의 중국철폐론은 사실 새로운 문제제기는 아니다. 이미 일본에서 중국의 대중화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중국분할론을 제기해 왔다. 중국십이괴론을 주창한 나카시마 미네오 교수는 중국의 광동과 복건성이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독립국가를 형성할 것이며, 중국이 여러 개의 주권국가로 분열되면 아시아판 유럽 연맹을 결성해 아시아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중국분할론이 일본의 국익을 철저히 반영한 것임에도 리덩후이가 차용한 것은 대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파기시키고 중국의 분할에 의해 대만의 독립주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 양국론의 제기

중국을 분할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를 제기한 리덩후이는 대만의 지위를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격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했고 7월 9일 발언으로 표면화시켰다. 리덩후이는 양안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전에도 대만이 사실상의 독립국가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중국과 대만을 정치적인 실체(political entity)라고만 규정했다. 한편 이번 발언에서는 분명하게 국가(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만이 분명한 독립국가임을 천명했다. 또한 독립을 선언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사실상 대만은 주권독립국가의 실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리덩후이 총통은 7월 20일에도 중국과 대만 관계는 '국가 대 국가'라는 양국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을 분할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과제를 제기한 리덩후이는 대만의 지위를 중국과 대등한 국가로 격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했고 7월 9일 발언으로 이를 표면화시켰다. 리덩후이는 양안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전에도 대만이 사실상의 독립국가임을 언급했다. 그러나 기존에는 중국과 대만을 정치적인 실체(political entity)라고만 규정했다. 한편 이번 발언에서는 분명하게 국가(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만이 분명한 독립국가임을 천명했다.

---

리덩후이의 양국론 제기는 기존 양안관계에 대한 주장과는 달리 대만이 중국과의 장기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등 이전과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대만이 현실적으로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번 양국론에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만을 독립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 양국론 제기의 배경과 전망

리덩후이의 양국론 발언은 대만이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강성해지는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을 막기 위한 대응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리덩후이의 양국론이 단순히 국제적인 요인과 양안간의 관계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만 정치상황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리덩후이의 두 개의 중국 발언은 차기 총통후보이자 현 부총통인 리엔찬의 아이디어였다. 즉 양국론은 내년 총통 선거를 대비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들의 민진당 선호를 국민당 지지로 돌리기 위한 전략적인 계산에 의해 주창된 것이다. 96년 중국과의 갈등이 리덩후이를 총통으로 재선시켰던 것처럼 양국론의 제기로 촉발된 중국과의 긴장이 국민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양국론 발언 이후 리덩후이의 지지도는 최저(54%)로 떨어졌으며, 같은 국민당이면서도 친중국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총통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쑹추위의 경우 지지도가 상승했다. 국외에서도 리덩후이의 양국론에 대한 입장은 비판적이다. 미국의 경우 대만문제는 양안간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히고 양국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팎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지만 리덩후이의 입장은 강경하다. 외교부 발언에서 리덩후이는 양국론은 향후 대만의 공식화법이라고 다시 언급하며 개인 차원이 아닌 국가단위의 견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만이 양국론으로 국론을 통일한다면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 변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 만델라와 아프리카민족회의

1999년 6월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미래에는 낙관적인 전망만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전환점에서 있는 타보 음베키(Thabo Mbeki)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보다 공평하고 번영하는 경제, 안정된 사회, 흑백인종간의 화합 등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베키 대통령은 전임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와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게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다. 1994년 4월 총선거를 통해 성립된 다인종 민주주의와 인종차별정책을 철폐시키며 흑백공존을 이루는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그것이며, 또한 50년 넘게 대중적 기반을 지니고 건재해 온 ANC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다.

1652년 네덜란드 상인들의 진출로 시작된 남아공의 식민 지배 역사는 1824년 영국의 지배, 1910년 영연방 내 남아프리카연방의 선포로 이어졌다. 1961년에는 영국에서 독립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되었으나,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백인의 식민통치가 지속되는 국가였다. 악명높은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차별정책은 1948년 시작되었지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흑인에 대한 차별정책의 연장이자 새로운 옷을 입힌 꼴이었다.

그러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은 ANC의 지속적인 투쟁과 대중적 저항, 미국의 경제제재, 그리고 1989년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90년 만델라가 석방되고 1991년에는 아파르트헤이트 폐기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1993년에는 만델라와 클레르크가 노벨평화상을 공동

만델라와 아프리카민족회의

## 넬슨 만델라의 화해의 삶

1999년 6월 16일 세계인의 축복 속에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퇴임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만델라의 삶은 투쟁과 화해의 역정이었다. 특히, 기나긴 흑백 인종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려는 그의 지난한 노력은 민족갈등을 극복하는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만델라의 삶과 정신을 되짚으며 민족문제의 해결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조화성  
(고대 대학원)

---

으로 수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흑백평등권을 인정하는 새헌법이 비준되어 1994년 4월에는 역사적인 민주적 총선거를 통해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평화적인 권력이양을 통해 민주적인 남아공 제2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와 흑백공존 그리고 다인종민주주의의 실현은 무엇보다 지도자인 만델라와 강력한 정치조직인 ANC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 만델라의 삶과 업적

넬슨 만델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만델라는 자신의 무능한 연고 인물을 내각에 지속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판단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으며, 1994년 총선 과정에서 반인권 범죄에 연루된 인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과거 진상규명에서 보여준 그의 화해정책은 타협노선으로 내부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에 대한 비난을 뒤로 한 채 1999년 세계적인 격찬 속에서 퇴임하였다. “분열된 국가를 화합으로 이끌었으며, 민선 정부의 첫 번째 정권이양이라는 역사적 작업을 완벽히 수행했다. 또한 집권 5년간 흑백인종간 갈등치유에 전념하면서 ANC의 주구성원인 호사족과 줄루족이 근간을 이룬 잉카타자유당(IFP)간의 뿌리깊은 알력을 해소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남아공 국민이 정치적으로 성숙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남아공의 여론조사에서도 평생 대통령직의 유지를 원할 만큼 만델라는 국민적 존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델라의 업적은 무엇보다 평생집권을 마다하고 5년의 임기를 끝으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에 민주주의의 뿌리와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만델라의 위대함은 그의 집권 이후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정신에서도 비롯된다. ‘진실규명과 화해위원회’를 통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진 후 뉘우치는 범죄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시행하였다. 더구나 이 위원회는 집권당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범죄행위까지도 조사하였다. 이런 화해의 정책이 흑백공존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만델라의 통치유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외교이다. 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자주 외교와 팔레스타인·이스라엘·쿠바·미국을 동시에 우방으로 삼는 비동맹 노선을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다. 로커비 테러사건을 해결하고 유럽과 남아공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외국인 투자를 중시하는 그의 외교는 실질적이며 중요한 외교성과를 낳았다.

한편, 1994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만델라의 삶은 반인간적인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투사적 삶이었다. 포트 헤어(Fort Hare)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만델라는 졸업과 함께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몸담으면서 평화적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 1952년 ANC 부의장에 선출되자마자 정치범으로 체포되어 가택연금과 정치활동 금지령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인물로 부각되었

**만델라의 업적은 무엇보다 5년의 임기를 끝으로 후계자에게 권력을 이양했다는 것이다. 만델라의 위대함은 집권 이후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정신에서도 비롯된다. '진실규명과 화해위원회'를 통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진 후 사면조치를 시행하였다. 더구나 이 위원회는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범죄행위까지도 조사하였다. 이런 화해의 정책이 흑백공존의 기반이 된 것이다.**

다. 만델라는 1960년 백인정권에 항의하던 흑인 69명이 학살된 샤프빌(Sharpsville) 사건을 계기로 무장투쟁의 길로 전환하였다. 지하 무장조직체 '민족의 창'을 조직, 초대 사령관에 취임했고, 알제리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만델라는 1962년 체포돼 국가전복행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투옥생활을 하였다. 그는 수감 기간에도 3천 개에 달하는 남아공 인권단체를 지도했다. 마침내 그는 1990년 2월 11일 케이프타운 인근의 빅터 버스터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이후 남아공에서는 1991년 12월 정부와 ANC, 기타 모든 정당을 망라한 민주남아프리카공화국회의(CODESA)가 시작되어 민주정치



---

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1994년 5월 만델라는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그의 투사적 삶을 마감하고 남아공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1999년 만델라의 말처럼 대통령직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 다시금 평범한 농부이자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그의 희망은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한 그의 위상에 비추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될지 모른다.

### 만델라의 인종차별철폐 운동과 화해의 정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민족갈등의 주요 내용은 인종차별이었다. 즉 소수 백인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차별정책을 통해 다수 흑인을 지배했다. 따라서 만델라와 ANC의 주된 목표는 인종차별정책의 철폐였으며, 이의 해결 내용은 흑백인종간의 평화공존과 권력의 분점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간 혼인금지법·부도덕법·주민등록법·집단지역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종차별정책으로 1948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통치정책이었다. 이러한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은 1912년 아프리카민족회의의 모태인 남아프리카토착민족회의 창설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1947년 ANC의 본격적인 활동과 투쟁은 1960년 샤프빌 사건을 계기로 민족의 창이라는 무장 조직을 결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평화적인 대중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만델라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운동에 머물러 있던 기존 노선을 비판하고 강력하고 전투적인 투쟁목표를 내세웠으나 간디의 영향으로 비폭력적 투쟁방식을 고수하였다. ANC의 투쟁은 점차적으로 도시와 공장, 학교에서의 대중적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이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종족갈등이 무장투쟁과 내전상황으로의 비화되는 것과는 다른 평화적인 대중투쟁이었다.

그리고 ANC의 활동은 그 내용에 있어 반인종차별(non-racialism)에 대한 명분을 유지함으로써 백인과 토착민의 지지와

연합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범아프리카회의(PAC) 등과 같이 백인과 토착민,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외래의 것으로 반대하는 세력과는 구별되었다. 따라서 ANC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세력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각종 운동단체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만델라와 ANC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와 공존의 전략은 1994년의 총선과 이후 집권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1993년 합의된 새 헌법과 1994년 총선 이후 구성된 내각은 흑백공존의 정치, 다인종 민주주의의 내용을 보인다.

새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통령은 제1당에서 1명, 2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제2당에서 1명 등 2명을 들 수 있으며, 20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내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총선에서 만델라는 대통령, 음베키와 클레르크는 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27명의 내각이 구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과거 백인 정권의 각료들과 잉카타자유당 등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은 일당의 독주를 막고 흑백간의 상호공존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신의 반영이자 기존 백인 정권의 평화로운 퇴장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노력이었다.

만델라의 민족갈등 해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화해의 추구였다. 이는 실제적 과정으로 '진실규명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잘 나타난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과거를 반성하는 범죄자에 대해 사면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만델라의 화해추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내용으로 집약된다. 화해는 용서를 필요로 하나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만델라는 인종차별정책을 넘어설

만델라의 화해추구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말로 집약된다. 즉 화해는 용서를 필요로 하나 진정한 화해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은 보복이 아니라 힘들게 싸우며 생취하려 했던 인권존중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관용과 화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수 있는 힘은 바로 화해추구였다고 보면서, 화해란 아파르트헤이트와 그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모든 조치의 타파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화해의 실현을 위해 과거청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과거를 기억하고 적절히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은 보복이 아니라 힘들게 싸우며 쟁취하려 했던 인권존중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관용과 화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민족갈등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인종차별을 든다면, 남아공의 역사는 민족갈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실험과 교훈을 던져 주었다. 만델라의 인종차별의 철폐와 극복의 내용은 진정한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란 인종차별의 모든 조치의 타파,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을 의미하고 있었다.

아울러 만델라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인종차별의 투쟁은 강력한 대중운동으로 전개되었지만 비폭력적인 투쟁방식으로 전개되었으며, 만델라와 ANC는 상호공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의 철폐, 흑백상호공존, 그리고 평화적인 권력의 이양과정은 남아공이 지니는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요인이 크게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국가의 민족갈등과 달리 갈등의 내용이 중첩되지 않았다. 즉 다인종 사회지만, 다른 국가처럼 인종·종교·부족간의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인종차별의 철폐를 중심내용으로 갈등의 축이 단일하게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50년 넘게 흑인 운동 단체의 주도성을 유지해 왔던 ANC와 백인 극우단체를 극소수로 전락시키는 백인 국민당이라는 강력한 정치조직의 존재는 상호 타협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이를 현실적 힘으로 변화시켜 왔던 만델라의 존재, 그의 화해와 인권의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 티벳 망명정부의 수립

티벳 망명정부는 1959년 달라이라마가 10만 명의 티벳인과 함께 인도 북부 다람살라로 이주, 정부수립을 선포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중국은 1950년 2만여 명의 군대로 티벳을 점령했다. 1956년까지는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티벳의 달라이라마와 중국측 대표가 회담을 진행했으나 이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1959년 2월 정초 대기도회를 위해 티벳 전국의 순례자가 라사로 집결했고, 3월 들어 티벳인들의 본격적인 봉기가 시작되자 중국군은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했다. 1959년 3월 17일 달라이라마는 추종자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당시 인도 수상의 전폭적인 지지로 달라이라마 일행은 망명을 허가받고 인도 북부에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 티벳 망명정부의 현황

북인도 히마찰 프라데쉬 주 다람살라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의 직접적 관할에 있는 티벳인은 인도·네팔·부탄에 밀집해 살고 있으며 여타 지역까지 합치면 망명 인구는 13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무국적자로 분류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인 티벳 국민 대표 의회, 사법부인 티벳 최고 사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망명정부의 수장은 달라이라마가 맡고 있다. 망명정부는 행정부 내에 종교·내무·교육·보건·국방·정보와 국제관계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그리고 망명정부는 티벳망명자들을 22개 농업센터에 이주시켰으며, 2만3천여 명이 다니는 83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에 117개의 사원을 설립했다. 또한 티벳 망명정부는 뉴욕·런던·모스크바 등 세계 11개 주요 도시에 대표 사무소를 설

# 티벳 망명정부

중국은 1950년 2만여 명의 군대로 티벳을 점령했다. 1956년까지는 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티벳의 달라이라마와 중국측 대표가 회담을 진행했으나 이후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1959년 2월 정초 대기도회를 위해 티벳 전국의 순례자가 라사로 집결했고, 3월 들어 티벳인들의 본격적인 봉기가 시작되자 중국군은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했다. 1959년 3월 17일 달라이라마는 추종자들과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인도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당시 인도 수상의 전폭적인 지지로 달라이라마 일행은 망명을 허가받고 인도 북부에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김용찬  
(고대 대학원)

---

치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대만의 타이페이에 대표부가 설치된 것이다. 타이페이 대표부는 1997년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대만정부의 승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한때 양안관계를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망명정부는 7개의 언어로 공식간행물을 제작하고, 12종의 분리독립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비정부 단체로는 티벳청년당(TYC)과 티벳여성협회, 티벳독립운동, 인권과 민주를 위한 티벳중앙본부 등이 있다.

망명정부에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 1997년 미국 하원 국제관계 위원장 길먼 일행은 인도에 있는 망명정부를 직접 방문해 티벳인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를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은 망명정부와 게릴라 투쟁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중간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미국의 지원은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으며, 대만은 양안간의 긴장을 의식해서 티벳 망명정부에 대한 지원을 줄였다. 지원 축소에 따라 망명정부의 지휘 아래 진행되어 온 티벳 접경지역에 근거지를 둔 게릴라 무장투쟁은 급속하게 쇠퇴했다. 한편 티벳에서의 분리독립 운동이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아 최근 몇년 동안 많은 티벳인이 망명정부를 찾아 인도로 망명하고 있다.

### **티벳 망명정부의 최근 활동**

최근 망명정부는 직접 분리독립 운동을 벌여나가면서도 외곽 단체를 통해 티벳의 민족문제를 국제 여론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티벳청년당은 1999년 4월 인도 뉴델리에서 티벳의 독립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고, 분신의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했다. 또 티벳청년당 소속 회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달라이라마의 평화협상 제의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의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티벳의 분리독립을 지지하는 단체의 주도하에 Tibetan Aid Project가 진행되고 있으며 티벳 망명인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 국제법에서의 난민문제

금세기는 자주 난민의 세기로 불린다. 전쟁과 그 밖의 군사적 및 정치적 분쟁은 이로 인해 새로운 고향을 찾아나서게 된 수백만의 난민(refugee)을 포함하여 많은 실향민(displaced person)을 발생시켰다. 종종 체제 및 국경의 변화를 수반하는 많은 신생국가의 출현,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 및 영토의 재편성은 끝없는 인간의 고통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정과 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여 왔으며 이는 국제연합헌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위한 권리의 평등과 사회적 진전을 목적으로 한 조약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인식적 발전과 제도적 보장은 난민문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점차 영토적 경계가 무너지는 지구촌에 있어 난민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국내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유럽의 특정 집단에 대한 제한적 성격의 긴급구조 및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난민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늘날 포괄적인 원조 및 보호제도로 발전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포괄적 인권문제로서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적 전환과 아울러 국제연합의 난민을 위한 활동의 기반 및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의 역할과 관련 법규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진원

(고대 대학원)

### 난민의 개념과 현황

난민(refugee)은 광의로 국적국에 대한 충성관계를 포기하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그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치적·종교적·인종적 그리고 기타 이유에 의해 본국의 박해로부터 도피하여 외국에 보호를 구하는 것이 망명이며, 그러한 망명을 구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난민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두가지 근본적으로 상이한 유형의 사태에서 비롯되는데, 하나는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 인재로 언급되는 국제 무력충돌·내전·혁명 또는 지속적인 일반적 사회·정치의 불안정이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정의는 구구하며 국제법상 확립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현재 국제법에서 받아들여지는 난민의 정의는 정치범을 포괄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을 이에 포함한다. 즉 (a) 박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없을지라도 본국의 정치체제를 싫어하여 귀국하지 않거나 또는 외국에 거주를 구하는 자 (b) 전쟁이나 동란 또는 재해

를 피하여 외국에 피난을 구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 정치망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넓은 범위의 사람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자는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난민으로부터 제외된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제1조는 (a)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자 (b) 망명자로서 피난국에 입국하기 전, 그 국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UN의 목적 및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를 난민의 정의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UNHCR이 제공하는 통계를 보면, UNHCR이 보호하는 난민 수가 1991년 총 1천 7백만 명에서 1995년에 총 2천 7백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년 동안 난민 수가 약간 감소하여 1997년 1월 현재 난민 수가 2천 2백만 명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인구 255명 당 한 명이 UNHCR의 보호 대상이다. 미해결 난민숫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8년 7월 현재 아시아는 472만 여 명, 아프리카 347만여 명, 유럽 294만여 명, 북미 66만여 명, 남미 8만여 명, 그리고 오세아니아는 7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 난민문제에 대한 초기 국제사회의 노력

난민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1년부터다. 러시아의 난민 대열에 직면하여 일부 유럽국가들은 난민 중 상당수가 신분증명의 흠결로 가장 초보적인 민사행위인 결혼 및 계약조차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 입법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사회에 다친 재난을 겪은 후

에야 국가들은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임을 자각하여 국제사회를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는 첫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국제연맹의 틀 안에서 최초의 난민담당 고등판무관이었던 F.Nansen은 러시아인·아르메니아인·앗시르-칼데아인 및 터키 난민과 그 뒤 독일 및 오스트리아로부터의 난민을 위한 많은 국제협정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특정한 난민 그룹만을 한정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이들 개별협정에서는 '난민

(refugee)'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난민의 공통된 기준으로 그들의 '출신국가로부터의 보호의 결여'만을 시사했을 뿐이었다.

1938년 독일로부터의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치된 '난민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Refugees)'에서 최초로 난민 이주의 원인을 언급하였는데, 위원회에서는 난민지위획득을 위해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앙 또는 인종상의 이유로 이주"한 사실을 요구하였다. 이는 1946년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작성된 '국제난민기구(IRO) 헌장'에서 보다 확대된 견해로 구체화한다. 헌장에서는 "박해(persecution) 또는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이 되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를 '박해로 인한 두려움'과 결부시켰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는 모든 난민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혹은 자신이 과거에는 박해를 받지 않았으나 장래에 있어 박해의 두려움을 야기하는

일신상의 요인에 근거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와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난민 현황의 집단적인

측면이 난민 지위를 부여함에 있어 결정적이었던 단계를 벗어나

이후에는 개개인의 상황과 결

부된 인권 차원으로 확대된 것

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직접

적이고 기본적인 결과는 개별

적인 자격심사 절차의 필요와

더불어 자신의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던 난민이 뒤에 자신에게 절대

적으로 중요한 결정—그를 신의 성실한

난민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망명권(asylum)

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피난국의 결정—의

자의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보장책의 강구였다.

개념상의 이러한 발전은 1950년 「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국 규정(Statute of the Offic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과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에서 재확인되게 된다.

난민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21년부터다. 러시아의  
난민 대열에 직면하여 일부 유럽국가들은 난  
민 중 상당수가 신분증명의 흠결로 가장  
초보적인 민사행위인 결혼 및 계약조차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 입법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의 발생은 국가의 역사까지 거슬러올라가야 하지만 난민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야 발전되었다. 2차대전 직후에는 주로 UN의 잠정적 전문기관인 국제난민기관(IRO)이 1948년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으로 설치되어 1951년 임무 종료시까지 난민의 정주 또는 모국 귀환 활동을 하였다. 이후 난민의 국제적 보호의 임무는 1950년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규정」에 의하여 UNHCR에 인계됨과 더불어, 국제법에 있어 그 골격 조약이 된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1951년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1967년 의정서」)를 이끌어냈다. 이는 대전란으로 인한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인식적 전환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전전의 난민보호는 '특정의 난민집단'에 대한 것이었는데 반해 전후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개인으로서의 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난민에 관한 일반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1951년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필요성에 조용한 것이었다. 난민 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약은 1951년 7월 28일 국제연합 전권대사회에서 채택되었고, 1954년 4월 21일에 발효하였다. 1951

년 협약에 규정된 일반적 정의에 따라, 난민은 다음과 같은 자로 규정되었다.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또한 ...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 ... ”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난민상황이 출현하였고 「1951년 협약」 규정을 그러한 새로운 난민에게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점차 느꼈다. 그 결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준비되었다. 국제연합 총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 의정서는 1967년 1월 31일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1967년 10월 4일에 발효하였다.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는 1951년 협약의 실질적 규정을, 즉 「1951년 협약」에서 규정된 “1951년 이후 발생한 난민이나 난민사건”이란 기한의 제약 없이 협약에서 정의되는 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이와 같이 협약에 대한 보완으로 구성되었지만 독립된 문서로서 기능하며, 그 가입은 협약 당사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1967년 의정서」에 의해 보충된 「1951년 협약」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두 법문서는 '난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며 난민의 지위에 부수되는 기본적 권리를 나열한다. 또한 이전의 규정을 성문화하면서 보다 상세하게 난민의 지위를 규율한다. 그런 까닭에 체약국에게 있어서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나 집단에

1951년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난민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난민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새로운 국제법문서의 필요성에 조용한 것이었다. 난민 상황에 관련된 임시협정을 채택하는 대신,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의 일반적인 정의를 포함하는 법문서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 통일적인 법적 지위가 마련되어 있다. 협약은 또한 난민보호에 책임을 진 국제기관과 기들의 지위를 정의하는 협약간의 공식적인 연결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국들은 이와 같이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에게 부여된 보호기능을 인정하며 명시적으로 이 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줄 의무를 진다. 간략히 요약하면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다음의 세가지 형태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i) 난민인(또한 난민이 아닌 자) 및 난민신분으로 있었다가 그 지위를 상실한 자의 기본 정의에 관한 조항.

(ii) 난민의 법적 지위 및 피난국에서의 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iii) 행정상 및 외교상 견지에서 이들 법문서의 이행에 관한 기타 조항. 「1951년 협약」 제35조 및 「1967년 의정서」 제2조는 계약국에게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 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문서 조항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사무소에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UHCR)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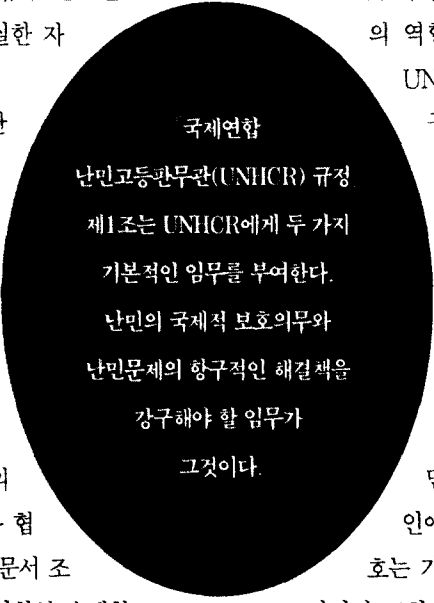
동 규정 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의 권한하에서 활동하는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의 후원을 받아 본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송환이나 새로운 국가사회에 쉽게 동화할 수

있도록 정부들 및 관계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민간기구를 원조하여 줌으로써 난민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규정은 UNHCR에게 두가지 기본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의무와 난민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임무가 그것이다.

국제적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규정 2조는 고등판무관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난민 집단 및 그 부류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좁은 의미로 규정한 것은 UNHCR에 앞서 있었던 두 개의 기구 즉 ‘국제연합 구제 및 기항행정 기구(UNRRA)’와 ‘국제난민기구(IRO)’에 부여되었던 광범위한 책임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정부들의 그 당시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일한 개념이 8조의 보호의 기능의 정의에 반영되어 있다. 역설적이게도 난민이란 용어의 정의가 지금은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반면, 난민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먼저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전체로서의 난민이나 난민집단, 특정 부류의 난민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호의 기능은 고등판무관에 대해 강제적이다. 그러나 국제적 보호가 주권국가에게 있어 고등판무관의 결정을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진정한 초국가적 권한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고등판무관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그러나 주권의 양위에 있어 국가는 항상 소극적이다.

항구적인 해결책에 관해서는 1조에 두 가지가 연



급되어 있는 바, (a) 자발적 송환(voluntary repatriation)과 (b) 새로운 국제사회에 동화(assimilation within a new national community)이다. 규정은 난민의 송환과 관련하여 이것이 자발적인 것임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해줄 이 중의 임무를 규정한다. 강제송환은 협약 및 국제관습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추방에 상당하는 것이며, 송환을 위한 원조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자발적인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유일한 다른 해결책은 동화이다.

동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로운 국적의 취득인데, 난민은 이를 일정한 조건에서 또한 국가마다 상이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라야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동화는 최초의 수용국에서 이뤄지던지 아니면 재정착국으로 알려진 국가에서이든지 간에 그 성과는 많은 요인에 의해 제약받는 한계가 있다.

규정 10조는 고등판무관에게 그가 공적 및 사적 경로로 접수한 기금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부를 상대로 호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다시 말해서 총회의 사전승인 없이는 그 분야에 있어 아무런 새로운 또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UNHCR의 난민에 대한 지원에 있어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HCR의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고등판무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며, 1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UN 사무총장과의 협의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듯 싶다. 실제로 UNHCR의 활동은 국제연합 전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최고위 수준에서의 UN 전문가와 국가간의 조정의 역할을 맡아야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난민들을 위한 국제연합 활동의 초창기에 있어 특징이었던 통일적인 책임의 확립이 제시될 수 있다. 총회는 행동의 일치는 없을지라도 적

어도 의견 및 의도의 통일을 수반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가능케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의 경향은 UN 총회를 중심으로 이 과정이 점차 공고해져 가고 있음에 고무적이다.

### 난민에 관한 지역적 법문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 외에도, 난민에 관한 많은 지역적 협정과 협약 및 기타 문서가 있다. 이들은 피난처의 제공과 여행증명서 및 여행편의 등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어떤 문서는 난민이란 용어 또는 비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자까지로 그 의미를 확대 정의하면서 이 문제에 대처하려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사회의 틀 내에서 체결된 다양한 협정이 있다. 「난민에 대한 사증폐지에 관한 유럽협정 및 권고(the European Agreement and Recommendation on the Abolition of Visas for Refugees)」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유럽협정 및 관련 부속서(the European Agreement and related Annexes on Social Security Schemes)」 및 상용하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HCR의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고등판무관의 '인도주의적 조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며, 17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UN 사무총장과의 협의와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듯 싶다.

는 규칙들, 「사회 및 의료 원조에 관한 유럽협약(the European Convention on Social and Medical Assistance)」 등이 있다. 유사한 언급은 1968년 테헤란에서 채택된 결의 및 「미주인권협약」에서도 발견되는데, 이런 모든 협정은 「1951년 협약」 등에 의해 확립된 난민의 기본적 지위에 관한 매우 유용한 보완이 된다.

남미에서는 「외교적 비호 및 영토적 비호 문제가 국제형사법에 관한 조약」(1889 · 몬테비데오)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정」(1911 · 카라카스) 「비호에 관한 협약」(1928 · 아바나) 「정치적 비호에 관한 협약」(1933 · 몬테비데오) 「외교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 · 카라카스)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1954 · 카라카스)을 포함한 많은 지역적 법문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969년 아프리카 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가 채택한 협약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을 규율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망명권을 부여하는 행위의 인도주의적 성격, 특히 난민들의 본래 국가에 대항하는 그들의 전복행위의 금지 및 적절한 협정을 통하여 자발적 송환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특별한 강조를 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2개 부분으로 구성된 난민 용어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부분은 1967년 의정서의 정의와 동일하다 (즉, 시간적 제한 또는 지리적 제한이 생략된 형태의 1951년 협약상의 정의). 두 번째 부분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난민 용어를 적용한다. 그것은 「외부침략

과 점령, 외국의 지배 또는 출신국 혹은 국적국의 일부 또는 전부의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사건으로 인하여, 출신국 또는 국적국 밖에 다른 장소에서 피난처를 구하기 위하여 상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자"이다.

## 난민법의 주요 내용

### (1) 망명권(asylum)

최근 망명권에 대해 말할 때 이를 개인에게 속한 권리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전혀 다른 개념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는 망명권을 본질적으로 국가에 관련된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적 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4조에서는 개인이 박해로부터 망명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영토상의 망명권에 관한 선언(the 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은 더욱 분명하다. 동 선언 1조에는 "그 주권의 행사로 국가에 의해 부여된 망명권은 모든 다른 국가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는 망명권의 부여가 비록 국가의 주권행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국가간의 분쟁이나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1951년 협약」은 이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다. '망명권'이란 단어가 난민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지위(the minimum status)를 정의하는 기본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UNHCR 규정 외에도, 난민에 관한 많은  
지역적 협정과 협약 및 기타 문서가 있다.  
이런 모든 협정은 1951년 협약 등에 의해  
확립된 난민의 기본적 지위에 관한 매우  
유용한 보완이 된다.

문서 안에 규정되지 않았다. 단지 33조에서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에 대한 가입이나 정치적 신조로 인하여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영토상으로의 난민의 추방이나 송환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이 비송환 원칙은 이미 계약국의 영토 내에 들어온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적용폭을 제한하고 있다.

## (2) 난민의 지위

난민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지위를 정의한 「1951년 협약」은 계약국의 특별한 여건과 관련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한 주요한 권리들을 일반 규정과 법적 지위, 유급고용, 복지 및 행정조치의 여러 제 목하에 열거하고 있다.

### · 인적 지위

#### (personal status)

1933년 「Nansen 협약」에 의거, 채택된 규칙에 따라 「1951년 협약」은 “난민의 인적 지위가 그의 주소지 국가의 법에 의해 규율되어 만일 주소가 없는 경우라면 그의 거주지 국가의 법에 규율받는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사실상의 또는 이전의 국적 국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 확립된 규칙은 그들이 이전 국적국가에서 이미 획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고용에의 접근

난민에게 배려된 주요한 권리 가운데 고용에의 자유로운 접근권이 있는 바 이는 실제에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한다. 임금소득 고용에 있어 「1951년 협약」 17조는 계약국이 자신의 영토에 체

류하는 난민에게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일반적 원칙에 덧붙여 한 국가에 3년간 거주하였거나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난민에게 유리한 특별규정도 있다. 이러한 규정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 이주의 자유(freedom of movement)

「1951년 협약」 26조는 난민이 거주지를 선택하고 관련국가의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거주지의 자유로운 선택의 원칙이 매우 널리 인정되고는 있지만 그 적용은 때때로 고용에의 접근에 대한 규율에 의해 제한받고 있다.

### · 귀화

#### (naturalization)

귀화란 난민의 송환이 불가능해질 때 난민에게 부여되는 국제적 보호의 최종 목표이다. 「1951년 협약」은 계약국들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촉진시키고 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가능한 귀화를 용이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난민이 접수국의 국적을 획득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도, 귀화는 일반적으로 권리(a right)라기보다 은혜(a favor)로 인식됨으로써 국가는 국적의 취득에 관한 국내 법규를 이용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또한 국적취득을 위한 사전거주기간 역시 국가마다 상이하며 평균기간은 대략 4~5년이나 더 길 수도 있다. 요컨대 국적의 취득을 규율하는 원칙을 난민의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는 데 있어 일

난민에게 부여되는 최소한의 지위를 정의한 1951년 협약은 계약국의 특별한 여건과 관련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부여하기로 약속한 주요한 권리들을 일반 규정과 법적 지위, 유급고용, 복지 및 행정조치의 여러 제 목하에 열거하고 있다.

진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는 규제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 결론

갖가지 국제적 조약에 의하면 난민은 안전한 비호에 대한 기본권을 부여받고 있다. 박해 또는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난민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문명 사회에서 폭넓게 존중되는 오래된 관례이자 국제적 의무이다.

난민이 더이상 '무생물'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통설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다. 또 「1951년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과 현재 UNHCR과 같이 난민의 보호를 추구하는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전체적 구조는 뚜렷한 법적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발전은 '전능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난민은 단순한 객체의 지위에서 점차로 법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가만이 유일한 국제법의 주체라는 완고한 기존의 학설이 더이상 설득력이 없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1951년 협약」을 비롯한 많은 국제협정은 난민에게 부여되는 몇몇 권리를 규정했다고 해서 이것이 난민이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모습에서 모든 난민들이 명실상부한 국제법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 단계까지는 아직 요원한 과정이 남아 있다.

이러한 국제법상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만들고 있는 구체적인 장애요인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권한 있는 법원이 국가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초국가적인 사법기관이 없다. 둘째, 기존의 난민법은 적절한 집행기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비호문제에 있어 비호권은 국가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하는 권리가 아

니고, 국가가 비호하고 존중할 의무와 개인이 향유할 권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넷째,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적절한 조응이 부재하다.

보편적 국제규범이란 이것이 적용되어야만 유용한 것이며

그 적용이란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성을 갖는다.

난민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법의 지배로 생각할 때,

중요한 점은 법 그 자체의 내용 및 의도가 아니라 그것의 실제적인 적용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나 UNHCR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의 실질적

강화와 정부로 하여금 국내 입법을 난민에게 유리하고 공평하게 제정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동시에 이들 관련 국제기관으로 하여금 이미 채택되어진 규칙이 소멸되지 않고 잘못 해석되지 않으며

단순히 무시되지 않도록 일반 난민법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과 그 실천지침을 제공하여, 이를 각 국가에게

강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난민이 더이상 '무생물'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통설일 뿐만 아니라 국제관행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명백하게 보장되고 있다. 또 「1951년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과 현재 UNHCR과 같이 난민의 보호를 추구하는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전체적 구조는 뚜렷한 법적 환경을 형성하였다.